

연구보고(고유과제)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책임연구원 : 이해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조흥식 (서울대학교 · 교수)

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귀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은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자료 고찰을 통한 아동복지시설 개념, 관련현황,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영향요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및 프로그램 파악 둘째, 자료검토를 통한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파악 셋째, 설문조사를 통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실태, 욕구 및 현황 파악 넷째, 심층면접 인터뷰를 통한 퇴소청소년 적응과정 파악 등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은 총 18,817명이며 퇴소 아동수는 6,898명임.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수는 17,517명,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수는 2,946명임.
- 퇴소아동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주거제공 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 총 13개소의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운영에 있으며 이용인원은 총 235명으로 정원인 411명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음. 시도별로는 인천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이 100만원으로 가장 적음.
- 퇴소아동 전세자금지원: 일부 시도(서울, 부산, 강원, 충남)에서는 시설 퇴소아동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005년 현재 서울의 경우 1인당 2,500만원(2인당 4,000만원), 부산 1인당 1,000만원, 강원 1인당 300만원, 충남 1인당 1,250만원임.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뭄.
- 일본의 퇴소아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리빙케어(living care), 사후케어(after care), 가정지원전문상담원(family social worker), 아동양호시설분원형 자활훈련사업, 자립원조홈, 직업지도 위탁부모제도 등.
- 미국의 퇴소아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 24시간 긴급전화서비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대학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등.
- 프랑스의 퇴소아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아동재가복지, 특별예방프로그램, 길거리 사회교육, 대부모후원제도(le parrainage) 등.
- 우리나라 퇴소청소년의 가장 어려운 점: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살 곳을 마련하는 것(36.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35.7%), 사회적응(13.5%), 직장(10.0%), 외로움(4.3%) 순이었음.
-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 퇴소와 관련하여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4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37.2%), 심리적성자립능력검사(26.0%), 주택관리기술(21.5%), 건강관리(20.7%),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17.4%), 일상생활관리훈련(15.3%),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11.6%) 순이었음.
- 주된 상담자: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담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가장 많았으며(34.0%), 다음으로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
후배(30.3%),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19.7%), 형제 혹은 자매
(16.0%), 혼자(14.8%), 기숙사, 자립생활관, 그룹홈 등의 선생님
(9.4%) 순이었음.

- 스트레스: 지난 세 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복수응답)은 경제
적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76.1%), 진로관련영역(45.7%), 심리적 영
역(42.5%), 인간관계영역(35.6%), 일관련영역(26.7%), 가사생활영역
(24.3%) 순이었음.
- 진학형 청소년, 취업형 청소년, 가족통합형 청소년의 적응과정 분석결과
찾은 이직과 학업에서의 부족함, 전공과 직업 간의 괴리감, 직업불안정성
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현상
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적응력이나 적절한 사회적 지지에 따
라 긍정적 적응을 하는 사례도 상당부분 있었음.

3. 정책제언

- 2007년 4월부터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강화, 확대
-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계적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det
Living Program)의 제도화
- 퇴소청소년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배치 의무화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로의 전이(transition) 준비를 위한 가족
형 준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확대
-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지급 및 전세자금 지원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동으로 퇴소청소년을 위한 24시
간 긴급지원전화 및 상설지원센터 설치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제한점	11
II.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13
1. 아동복지시설	15
1)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15
2) 아동복지시설 현황	17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18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개념	18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현황	19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21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개념	21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22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 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4.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32
1) 정책방향	32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33
3) 우리나라 제도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36

Ⅲ.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39
1. 일본	41
1) 정책방향	41
2)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49
3) 문제점 및 시사점	68
2. 미국	74
1) 정책방향	74
2)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89
3) 시사점	103
3. 프랑스	108
1) 프랑스의 아동복지 정책	108
2) 프랑스 아동복지의 주요 쟁점과 프로그램	115
3) 특별 프로그램	122
4) 파리시 청소년 복지정책	141
5) 시사점	144
Ⅳ.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현황	147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 및 욕구실태	149
1) 아동양육시설 관련 특성	150
2)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159
3)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170
4) 직장 영역	176
5)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184
6) 사회적 지지 영역	188
7) 신체 및 심리적 발달 영역	190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193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및 사업실태	194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의 어려움 및 문제점, 제안점	206
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15
1. 퇴소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17
1) 진학형 퇴소청소년	217
2) 취업형 퇴소청소년	222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229
2.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유형별 분석	234
1) 진학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34
2) 취업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40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50
VI. 정책제언	259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261
1)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 대책수립	261
2) 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 체제 마련	262
3) 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청소년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체제 마련	264
4)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지급 제도 확립	265
5) 자립지원시설의 개선	266
6) 직업훈련시설의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과 전문 인력의 보강	267
7) 특별한 퇴소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 구축	268
8)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충과 표준화	269

2. 서비스 영역별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270
1)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270
2)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272
3) 직장 영역	272
4)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273
5) 사회적 지지 영역	274
6) 신체 및 심리적 발달 영역	275
 참고문헌	 277
 부록	 285

표 목 차

<표 I-1> 퇴소청소년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	8
<표 I-2> 퇴소청소년 주거형태별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안	8
<표 I-3> 퇴소자립 연구대상 명단	10
<표 II-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6.12.31현재)	17
<표 II-2>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6.12.31현재)	17
<표 II-3>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 현황 (2006.12.31현재)	19
<표 II-4>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현황 (2006.12.31현재)	20
<표 II-5> 연도 및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현황	22
<표 II-6>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현황	22
<표 II-7> 지역별 아동자립시설 수 및 이용인원	23
<표 II-8> 연도별·지역별 대학 진학현황	23
<표 II-9> 시도별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등 지원현황	24
<표 II-10> 시도별 2005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단가 현황	24
<표 II-11> 시설 퇴소 아동 전세자금 지원 현황	25
<표 II-1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변수	26
<표 II-13>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변수	26
<표 II-14>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영역 변수	27
<표 II-15>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변수	28
<표 II-16>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영역 변수	30
<표 II-17>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발달 영역 변수	31
<표 III-1> 시설퇴소시 아동상담소·시설에서의 회의 검토사항	54
<표 III-2> 사회생활지원 내용	58
<표 III-3> 퇴소준비원조항목·달성과제·개별과제	59
<표 III-4> 자립원조홈의 사례	66
<표 III-5> 아동집단생활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	78

<표 III-6> 파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사립 복지시설	121
<표 III-7> 연도별과 나이별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수	139
<표 III-8> 연도별 나이별 시설폐소 아동수	140
<표 IV-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49
<표 IV-2> 아동양육시설 폐소시기	151
<표 IV-3> 아동양육시설을 폐소할 당시 나이	151
<표 IV-4> 아동양육시설을 폐소한 주된 이유	152
<표 IV-5> 아동양육시설에 있었던 기간	153
<표 IV-6> 아동양육시설 폐소후 가장 어려운 점	154
<표 IV-7> 아동양육시설 폐소를 앞두고 시설 혹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복수응답)	155
<표 IV-8> 위 프로그램 중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복수응답)	156
<표 IV-9> 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157
<표 IV-10>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158
<표 IV-11> 시설에 오기전 경험	159
<표 IV-1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160
<표 IV-13> 위탁부모, 후원자 유무	161
<표 IV-14> 현재 친부모 유무	161
<표 IV-15> 친부모가 있는 경우, 누가 계시는지	162
<표 IV-16> 친부모와 연락(만나는 것 포함) 빈도	163
<표 IV-17>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64
<표 IV-18> 아동양육시설 폐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당하는 사람(복수응답)	165
<표 IV-19> 지난 세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 3가지 (복수응답)	166
<표 IV-20> 자립생활기술	167
<표 IV-21> 자립생활기술 영역별 비교	169
<표 IV-22> 현재 학교 재학 여부	170
<표 IV-23> 재학학교의 종류	171

<표 IV-24> 학교생활 만족도	172
<표 IV-25>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172
<표 IV-26>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173
<표 IV-27>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복수응답)	174
<표 IV-28> 상급학교에 진학이후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175
<표 IV-29> 친구(선후배포함) 관계만족도	175
<표 IV-30>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76
<표 IV-31>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경험 횟수	176
<표 IV-32> 이직한 이유(복수응답)	177
<표 IV-33>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	178
<표 IV-34>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유무	179
<표 IV-35>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일한 기간	179
<표 IV-36> 현재 하는 일	180
<표 IV-37> 현재 고용형태	181
<표 IV-38> 월평균소득	181
<표 IV-39> 현재 직업만족도	182
<표 IV-40>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유(복수응답)	183
<표 IV-41>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	183
<표 IV-42>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	184
<표 IV-43> 주거형태만족도	185
<표 IV-44>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총이사횟수	186
<표 IV-45>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지원 여부	186
<표 IV-46> 주거와 관련하여 한달 평균 소요되는 금액	187
<표 IV-47> 주거지역만족도	188
<표 IV-48> 사회적 지지	189
<표 IV-49> 사회적 지지 영역별 비교	190
<표 IV-50> 지난 1년내 앓은 경험이 있는 질병(복수응답)	191
<표 IV-51>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유무	192

<표 IV-52>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유	192
<표 IV-53> 조사대상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93
<표 IV-54> 한해 법적퇴소연령도달 퇴소인원(최근3년 평균)	194
<표 IV-55> 한해 기타 사유로 인한 퇴소인원(최근3년 평균)	194
<표 IV-56>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의견	195
<표 IV-57> 시설차원의 아동양육시설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여부	195
<표 IV-58> 아동양육시설 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실시방법(복수응답)	196
<표 IV-59> 퇴소청소년 지원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197
<표 IV-60>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주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	198
<표 IV-61> 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	199
<표 IV-62> 양육시설 기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199
<표 IV-63>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지역사회자원 (복수응답)	200
<표 IV-64> 세부프로그램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필요성 인식	205

그림 목 차

[그림 Ⅲ-1]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보수집과 치료, 평가	114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는 몇 년에 걸친 준비기간을 가지고 가족의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지원 아래에서 일어난다(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18세 이후의 청소년들은 성인 초기로 전이되는 시기에 있으며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과업을 갖게 된다. 일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애정과 격려, 친밀감,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발달 과업에 따른 과업을 성취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이과정을 경험한다. 반면 시설퇴소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고, 시설 복지제공자들의 잦은 교체를 경험하며, 퇴소를 통해 시설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등 이전에 경험했던 체계들과 관계가 중단되고 보호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전환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Whittaker, 1986; 신혜령, 2001).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은 자기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응 준비나 기술습득 과정에서 충분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국립보건원, 2002).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시설보호가 종결되면 대부분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공식적인 사회지원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한 정신적·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기에 가족이 중심이 된 일차적인 사회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적, 경제적인 면에서 커다란 충격과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퇴소 청소년 중 일부는 자립의지 미약과 사회의 냉대로 사회적응에 실패, 문제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시설보호아동의 범주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가정을 떠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18세미만의 자 혹은 25세미만의 연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 18세 이상의 시설거주

청소년은 비자발적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된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급, 13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운영, 16개 시·도의 자립지원센터 운영 외에 이들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의 지원 및 서비스도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퇴소청소년은 홀로서기가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사후지도도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시설청소년이 퇴소 후 독립생활로의 전이를 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자립수준은 어떠한지,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다(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이용환, 2003). 보건복지부는 2006년 2월부터 아동복지시설 관련 퇴소(예정)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주거 및 대학진학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설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력이나 취업, 거주지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 퇴소청소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응에 이르게 되는지는 간과하여 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사회적응실태를 살펴본 소수의 선행연구들(김득린, 1996)에서조차 실증연구를 통한 분석·제언보다는 기존의 측정 가능한 통계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욕구를 가지는지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 및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시기별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적응과정별로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퇴소 후 과정별 차별화된 서비스 혹은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고찰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자료 고찰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관한 개념과 관련현황,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 영향 요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념과 관련현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및 자립) 개념, 현황, 퇴소청소년 적응(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¹⁾을 살펴보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개념, 현황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파악

다양한 정책제안 도출을 위해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을 파악한다. 대상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이며 각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방향,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1)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일상 및 가족생활영역,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직장영역,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사회적 지지영역, 신체 및 심리적 발달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욕구 및 현황 파악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생활실태 및 욕구,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퇴소청소년 성별, 연령별, 현재 거주하는 지역별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의 차별적 욕구, 문제점, 주된 서비스 이용실태, 적응수준, 적응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적응을 위한 보호요소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와 아동복지시설 전문가 설문조사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전문가 설문조사는 아동양육시설 전문가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및 사업실태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4)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파악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퇴소 후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응 영향 요소 등을 중심으로 퇴소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적응상황의 변화와 각 과정에서의 주된 어려움,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5)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의 자문,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파악을 통하여 우리나라 퇴소청소년 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아동복지시설 관련 개념, 관련현황,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문헌 연구하였다.

2) 설문조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50여명(실제 조사자 252명)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실제조사자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2006년 12월말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 수를 기준으로 한 퇴소청소년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안과 실제 조사대상은 다음 <표 I-1>과 같다. 퇴소청소년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대상자수를 유의 표집 하였으며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표집이 이루어졌다.

반면 주거지역별 청소년 표집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표 I-2>는 퇴소청소년 주거형태(2005년 말 기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안이다. 지역별, 주거형태별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대표성을 갖도록 표집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형태별 비율분포가 편포된 측면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자립지원시설 주거 청소년 비율이 많은 반면, 회사기숙사 주거 청소년 비율은 적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퇴소청소년 표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I -1> 퇴소청소년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

(단위 : 명(%))

구분	퇴소자수(%)	실제조사자(%)
서울	440(14.9)	43(17.0)
부산	527(17.9)	47(18.5)
대구	195(6.6)	19(7.4)
인천	125(4.2)	10(4.0)
광주	63(2.1)	8(3.2)
대전	122(4.1)	11(4.4)
울산	28(1.0)	5(2.0)
경기	253(8.6)	22(8.7)
강원	101(3.4)	10(4.0)
충북	144(4.9)	10(4.0)
충남	126(4.2)	10(4.0)
전북	192(6.5)	15(6.0)
전남	261(8.9)	20(8.0)
경북	143(4.9)	10(4.0)
경남	158(5.4)	12(4.8)
제주	68(2.4)	-
계	2,946(100.0)	252(100.0)

<표 I -2> 퇴소청소년 주거형태별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안

(단위 : 명(%))

구분	실제 거주 비율(%) ²⁾	실제조사자(%)
자립지원시설	(5.9)	104(43.0)
전·월세	(30.1)	62(25.6)
학교기숙사	(4.0)	15(6.2)
회사기숙사	(39.3)	11(4.5)
기타	(20.7)	50(20.7)
계	(100.0)	242(100.0)

2) 2005년 12월 현재 기준

(2) 연구절차

2007년 8월 15일부터 2007년 9월 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명단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무작위 표집한 후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퇴소청소년 담당자에게 연구의 의도와 목적, 연구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수락하는 기관에 한해 (ㄱ) 청소년 실태조사는 적당한 청소년을 추천받아 연락처를 확보한 후, 조사자 혹은 시설 담당자가 이메일과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자가 이메일,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ii) 전문가 의견조사는 해당 기관의 퇴소청소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 담당자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기입한 설문지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s Ver. 12.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변수의 특성별로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값을 구한 후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현재 사는 지역)별 분포나 평균 차이를 빈도(%) 분포의 경우 분할표 분석(crosstabs)과 Pearson's Chi 검증을 통해, 평균차이의 경우 t-test나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ANOVA 분석결과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심층면접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과 16개 시·도자립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설문조사시 신청한 청소년 10 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³⁾. 또한 이 연구는 비공식 대화면접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면접지침 접근법을 보완적⁴⁾으로 사용하였다.

3) 질적면접은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면접자는 조사의 일반적 계획을 가지지만, 특정한 단어와 순서로 질문되는 특정한 질문형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질적면접은 본질적으로 대화이며, 그 속에서 면접자는 대화의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며, 응답자가 제기한 특정한 주제를 계속 진행한다. 이상적으로는 응답자가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Patton(1990 : 280)에 의하면 질적면접에는 비공식 대화면접, 일반지침 접근법, 표준개방형 면접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성숙진외 ; 2005).

(1) 연구대상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해준 퇴소 청소년 중 면접에 응해 줄 의사를 표명한 퇴소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퇴소청소년을 취업형, 진학형, 가족통합형의 적응청소년과 부적응청소년으로 나누어 각각 3명씩 면접할 계획이었으나 접촉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응청소년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취업형 4명, 진학형 3명, 가족통합형 3명으로 총 10명을 면접하였다.

<표 I -3> 퇴소자립 연구대상 명단

유형	이름	성별	연령	입소기간	퇴소년도	기타
진학형	이○○	남	29세	1990년	2000년	회사원
	팽 ○	남	22세	1998년	2005년	일용직근로자
	이○○	남	21세	1994년	2006년	대학생
취업형	김○○	남	32세	1983년	1997년	사회복지사
	차○○	남	28세	1991년	1997년	종이재단사
	이○○	여	29세	1990년	1998년	주부
	성○○	여	22세	-	2005년	생산직근로자
가족통합형	박○○	남	27세	1989년	2002년	회사원
	김○○	여	21세	1998년	2006년	대학생
	김○○	여	20세	1993년	2007년	대학생

- 4) 비공식 대화면접은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계획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은 상호작용이다. 이는 가장 개방적인 형태의 면접이다. 연구자는 극단적으로 유연하여 어떤 방향으로든 적절한 방향에서 관련 정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면접은 연구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찰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면접지침 접근법은 구조화되어 있는 면접형태로 응답의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각 응답자로부터 모든 관련 질문에 대해 완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에게 확실하게 같은 질문을 순서로 하고자 시도한다. 또한 더 구조화 되어 있을수록 연구조사자가 면접자료를 조직하고 분석하는 일을 쉽게 하고, 연구조사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방법과 도구의 질을 판단하도록 돕는다(성숙진 외, 2005).

(2) 연구절차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로부터 추천받은 퇴소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전화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에 응해 줄 것을 동의 받았다. 면접을 수락한 10명의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하는 동안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접시 연구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소 후 생활이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의문이 생기거나, 면접지침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누락될 경우에는 질문하여 보완하였다.

(3) 자료분석

면접 시 녹음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모두 개인별로 녹취하여 일차적으로는 진학형, 취업형, 가족통합형 등 3개의 유형별로 정리하여 적응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과정 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4)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에 관한 자문을 득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접촉방안 및 연구관련 세부사항, 외국의 중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또한 문헌자료 분석 및 심층면접조사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긍정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퇴소청소년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표집대상의 접촉이나 협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퇴소청소년 유형별 인구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설문조사의 경우 주거와 관련하여 비교적 연구대상 접촉이 용이한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된 반면 뿔뿔이 흩어져 있고 회사 측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회사기숙사 거주 퇴소청소년은 적게 표집된 측면이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바람직하다고 추천되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시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자칫 적응도가 낮은 청소년이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적응과정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또한 시설과 협회의 추천을 통해 섭외된 청소년으로 비교적 퇴소후 적응이 잘 이루어져 시설 혹은 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섭외되었을 수 있다. 즉, 유흥업소 등 떳떳하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퇴소 후 스스로 시설과의 연락을 끊은 경우 사실상 연구에 포함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실태와 적응과정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직업현장을 통한 직접접촉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횡단적 연구의 특성상 적응의“과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이 제대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패널조사형태의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해당 청소년의 퇴소시기부터 수년 후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산상, 기간상의 제약으로 종단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상방법, 혹은 각 연령대별 분석, 심층면접을 통해 적응과정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회상이 현재상황을 기술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령별 비교, 회상적 기술방법을 통한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1.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4.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II.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자료 및 통계청,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계자료 파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의 개념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동법 동조 제 2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동법 제 14조⁵⁾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동법 제 16조의 규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크게 (ㄱ) 아동양육시설, (ㄴ) 아동 일시보호시설, (ㄷ) 아동 보호치료시설, (ㄹ) 아동 직업훈련시설, (ㄹ) 자립지원시설, (ㅂ) 아동 단기보호시설, (ㅅ) 아동상담소, (ㅇ) 아동전용시설, (ㅈ) 아동복지관, (ㅊ) 공동생활가정, (ㅋ) 지역아동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6조의 아동복지시설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5) 동법 제 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둘째,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셋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넷째,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다섯째,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여섯째,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일반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일곱째,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여덟째, 아동전용시설은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홉째, 아동복지관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열 번째,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열 한번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2006년 12월 현재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수는 총 282개이며 아동양육시설이 243개소, 아동직업훈련시설 3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8개소, 아동자립지원시설 13개소, 아동일시보호시설 13개소, 아동종합시설 2개소이다.

<표 II-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6.12.31현재)

구 분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 종합시설	계 (현원)
갯수	243	3	8	13	13	2	282

* 출처: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을 재구성.

<표 II-2>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6.12.31현재)

구 분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 종합시설	계
계	243	3	8	13	13	2	282
서울	33	2	1	3	5	2	46
부산	20	-	1	1	1	-	23
대구	18	1	1	2	1	-	23
인천	8	-	-	-	-	-	8
광주	9	-	-	1	1	-	11
대전	11	-	1	1	-	-	13
울산	1	-	-	-	-	-	1
경기	26	-	-	-	2	-	28
강원	9	-	-	-	1	-	10
충북	13	-	1	1	-	-	15
충남	14	-	-	1	-	-	15
전북	16	-	1	1	-	-	18
전남	21	-	1	1	-	-	23
경북	15	-	-	-	1	-	16
경남	24	-	1	1	1	-	27
제주	5	-	-	-	-	-	5

* 출처: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을 재구성.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전국의 아동 양육시설 수는 24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개소, 부산 20개소, 대구 18개소, 인천 8개소, 광주 9개소, 대전 1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26개소, 강원 9개소, 충북 13개소, 충남 14개소, 전북 16개소, 전남 21개소, 경북 15개소, 경남 24개소, 제주 5개소이다. 전국의 아동자립지원시설수는 13개소이며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이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18세⁶⁾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은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조제2항에 따르면 (ㄱ)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ㄴ) 아동직업훈련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ㄷ) 그 밖의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 9. 27>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 3. 27 대통령령 제 19969호]은 위의 법 제11조제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ㄱ) 20세미만의 자로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ㄷ) 25세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ㄹ)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

6)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미만으로 정의한다.

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도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법적퇴소연령인 18세가 되어서 혹은 그리고 퇴소연장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은 만 24세이지만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대상자의 연령을 만 29세까지 확대하기로 한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현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 현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은 총 18,817명이며 퇴소 아동수는 6,898명이다. 유형별로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수는 17,517명, 퇴소아동수는 2,946명이었으며 아동자립지원시설의 보호아동수는 235명, 퇴소아동수는 87명이었다.

<표 II-3>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 현황 (2006.12.31현재)

구분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 종합시설	계 (현원)
보호 아동수	17,517	75	436	235	391	163	18,817
퇴소 아동수	2,946	72	409	87	2,693	691	6,898

* 출처: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을 재구성.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표 II-4>와 같다. 2006년 12월 현재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은 총 2,946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0명, 부산 527명, 대구 195명, 인천 125명, 광주 63명, 대전 122명, 울산 28명, 경기 253명, 강원 101명, 충북 144명, 충남 126명, 전북 192명, 전남 261명, 경북 143명, 경남 158명, 제주 68명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 퇴소아동수는 총 87명이며 서울 27명, 부산 14명, 대구 14명, 광주 12명, 대전 5명, 충남 5명, 전북 10명이다.

<표 II-4>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현황 (2006.12.31현재)

구 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 종합시설	계 (현원)
계	2,946	72	409	87	2,693	691	6,898
서울	440	45	77	27	2,077	691	3,357
부산	527	-	58	14	63	-	662
대구	195	2	17	14	47	-	275
인천	125	-	-	-	-	-	125
광주	63	-	-	12	126	-	201
대전	122	25	182	5	-	-	334
울산	28	-	-	-	-	-	28
경기	253	-	-	-	343	-	596
강원	101	-	6	-	-	-	107
충북	144	-	-	-	27	-	171
충남	126	-	-	5	-	-	131
전북	192	-	33	10	-	-	235
전남	261	-	36	-	-	-	297
경북	143	-	-	-	4	-	147
경남	158	-	-	-	6	-	164
제주	68	-	-	-	-	-	68

* 출처: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을 재구성.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개념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 개념

적응은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그리고 발달적으로 적절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적응과정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Lazarus, 1976),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시설에서 떠나 모든 공식적인 보호 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많은 위기와 부적응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신혜령, 1997; 변미희, 2001에서 재인용).

즉,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은 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이 퇴소후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에 따라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응은 유형·무형의 영역을 모두 강조하며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퇴소후 사회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혜령, 1997).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 개념

자립의 개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떠나는 시설퇴소 아동들이 성공적인 상호의존의 성취로 자신의 '독립된 상태'를 이끄는 것을 뜻한다.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속의 의미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Maluccio, 1990;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에서 재인용). 즉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7천 여명의 시설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예외규정의 혜택기간이 끝나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다. 연도별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수는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연도 및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7,831	4,277	634	242	121	240	230	35	763	100	119	169	219	334	64	214	70
2005	6,298	3,148	652	234	135	157	179	22	560	123	82	129	243	304	99	183	48
2006	6,898	3,357	662	275	125	201	334	28	596	107	171	131	235	297	147	164	68

* 출처: “보건복지부. 2004, 2005, 2006년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을 재구성.

이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6>과 같다. 2004년과 2005년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숙소에 거주하는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월세 31%, 기타 20%, 자립지원시설 6%, 학교기숙사 4% 순으로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6%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표 II-6>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자립지원시설	전·월세	학교기숙사	회사기숙사	기타
2004	910	56	287	33	359	175
2005	855	51	257	34	336	177

*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07년 1월 26일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퇴소아동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⁷⁾ 주거제공 현황은 다음 <표 II-7>에 나타나 있다.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로 전국에 총 13곳⁸⁾에 지나지 않으며 이용인원 또한 총 235명에 지나지 않아 정원인 411명에조차 못 미치는 수준이다⁹⁾.

<표 II-7> 지역별 이동자립시설 수 및 이용인원

(단위 : 명)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¹⁰⁾
개소	13	3	1	2	1	1	1	1	1	1	1
이용인원 (정원)	235 (411)	67 (90)	18 (31)	44 (80)	20 (30)	19 (30)	7 (30)	23 (30)	20 (30)	17 (30)	- (30)

* 출처: “보건복지부(2007). 아동복지시설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을 재구성.

퇴소 아동 중 연도별·지역별 대학진학현황(전문대포함)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8>과 같다. 2004년과 2005년 모두 250명 안팎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표 II-8> 연도별·지역별 대학 진학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243	34	24	21	15	5	5	1	13	15	4	16	22	34	11	18	5
2005	265	38	38	14	13	8	8	6	20	15	4	11	24	29	9	23	5

*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07년 1월 26일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7)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이다.
- 8) 2004년 지원예산은 655백만원이며 2005년에는 688백만원(지방이양), 2006년에는 748백만원(예상)이다.
- 9) 자립지원시설의 이용 연한이 2년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당해연도 퇴소청소년 중에서 자립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10) 노후시설임

이들에 대한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회 소청소년은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14개 광역지자체에서 1인당 7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¹¹⁾.

<표 II-9> 시도별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등 지원현황

(단위 : 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입학금	300	53	200	300	-	-	250	200	-	150	100	73	-	-
등록금등	-	200	50		100	300	-	150	313				50	200

*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07년 1월 26일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9>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이 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¹²⁾.

<표 II-10> 시도별 2005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단가 현황

(단위 : 만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 단가	300	100	300	500	200	100	100	426	100	300	300	250	200	269	100	200

*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07년 1월 26일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또한 일부 시도(서울, 부산, 강원, 충남)에서는 시설 퇴소아동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11>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시도별 시설퇴소아동 지원 전세자금은 서울의 경우 1인당 2,500만원(2인당 4,000만원),

11) 지원예산은 2004년에 404명 574백만원이며, 2005년에 454명 698백만원, 2006년에 520명 798백만원(예정)이다.

12) 지원내용은 2004년 872명 18억원이며 2005년에는 836명 19억원(지방이양), 2006년에는 880명 22억원(예정)이다.

부산 1인당 1,000만원, 강원 1인당 300만원, 충남 1인당 1,250만원이다¹³⁾.

<표 II-11> 시설 퇴소 아동 전세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서울	부산	강원	충남
2,500만원/1인 4,000만원/2인	1,000만원/1인	300만원/1인	1,250만원/1인

*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07년 1월 26일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 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고찰에 따라 일상 및 가족생활영역,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직장영역, 주택 및 지역사회영역, 사회적 지지영역, 신체 및 심리적 발달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생활실태 및 욕구실태, 현황과악 과정은 물론 적응과정에 관한 심층면접조사시 주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1)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관련요인은 다음 <표 II-12>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일상생활관련요인은 친부모나 위탁 부모와의 연락정도(Festinger, 1983,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에서 재인용; Mech, 1996)와 부모자녀유대관계(정선옥, 2002; 현은민·박혜영, 2005)이다. 신혜령·김성경·안혜영(2003)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자립생활기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성경(2003)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선옥(2002)은 원가족과의 관계단절사건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13) 지원현황은 2005년 실적 기준 지원인원 60명, 지원액 551백만원이다.

〈표 II-1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변수

저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Mech(1996)	친부모, 위탁부모와의 연락	심리사회적 적응
현은민·박혜영(2005)	부모자녀유대관계	사회적 적응
신혜령·김성경·안혜영(2003)	자립생활기술	사회적응
강복정(2000)	대인관계변화정도, 가족건강도	사회적응
Festinger(1983: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에서 재인용)	부모와의 연락정도	사회적응
김성경(2003)	일상생활스트레스(교통 및 경제적 스트레스, 공동생활스트레스, 주변환경 스트레스, 보호자 관련 스트레스)	심리사회적적응
정선옥(2002)	원가족 관계경험 ¹⁴⁾ (부모자녀유대관계, 관계단절사건)	심리사회적 적응

(2)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별수는 학력, 자격여부(변미희, 2001; 신혜령, 1997)와 교육에 대한 기대, 교육적 열망(Ferrugia et al., 2006) 등이다.

〈표 II-13〉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변수

저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Mech(1996)	교육의 부실	심리사회적 적응
신혜령(1997)	학력, 자격여부	사회적응
변미희(2001)	학력, 자격여부	사회적응
Ferrugia et al., (2006)	교육에 대한 기대, 교육적 열망	적응

14) 원가족 관계 경험은 시설 입소 이전의 주요 애착관계인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질적 특성과 관계의 단절 경험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변수는 부모자녀 유대관계, 관계단절 사건 등이다(정선옥, 2002).

시설아동의 학업중단은 퇴소후의 사회적응을 위한 중요요인인 고졸학력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잃게 한다. 학력과 기술자격은 성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역할을 부여해주는 직장과 연결된다. 최영수(1988)는 시설아동들의 기초실력 부족,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부진, 획일적 진학, 자격증 미보유 등이 그들의 사회적응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 미진학자는 취업과 직업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정상적 취업(사무직, 공무원, 기능공, 운전원, 간호사, 자영업, 농업 등)보다는 대부분 비정상적인 취업(공원, 노무직, 서비스업 종사자, 점원, 사환 등)을 하게 되고 고교 졸업할 때에는 인문계, 상업계, 공업계에서 정상적 취업에 접근한 기회가 많아졌음을 통해 사회적응의 지지요소로 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혜령(2001)은 시설청소년들의 자립준비와 개인적 특성, 배치상황, 사회적 지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자기관리 기술에 대해 개인적 특성으로서 학교적응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음을 밝혔다.

(3) 직장 영역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 직장요인은 고용여부, 고용기간, 경력, 지위, 월급, 이직경험 등이다.

〈표 II-14〉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영역 변수

저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Mech(1996)	직장의 부실	심리사회적 적응
신혜령(1997)	고용여부, 고용기간, 경력, 지위, 월급	사회적응
Ferruggia et al., (2006)	직업동기	적응
이기필(2003)	취업유무, 이직경험	-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성인기에 접한 퇴소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인 안정에는 안정적인 직장과 월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졸의 학력이나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직장이동이 잦고 무직상태에 자주

있게 되면 사회경제적인 안정과 독립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퇴소아동의 사회부적응 사례들은 대부분 이직, 전직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신혜령, 2001). 최현 등(1990)에서의 연구에서는 퇴소대상아동이 생각하는 취업의 최우선 조건이 직업의 안정성, 그 다음으로 주거의 해결이었으며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사회적 공헌도였다. 즉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적응과 자신의 적응력과 자립심의 부족, 그리고 주거대책의 불안정으로 인해 퇴소자들은 직장적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상호작용과정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직과 전직을 반복하고 쉽게 직업을 이동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4)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 지적된 변수는 다음 <표 II-15>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변수는 자립생활관 거주 여부를 포함한 주거형태(신혜령, 1997; 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주거만족도(신혜령·김성경·안혜영, 2003; 현은민·박혜영, 2005), 이사회수와 관련 있는 주거안정성(Cook, 1994), 동거인(신혜령, 1997), 가족·후견인과의 근접성(Cook, 1994) 및 교통편리성, 이웃환경(Cook, 1994) 등이다.

<표 II-15>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변수

저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혜령(1997)	주거지여부, 주거형태, 주거비용, 동거인	사회적응
현은민·박혜영(2005)	시설향에 대한 불만족도	사회적 적응
신혜령·김성경·안혜영(2003)	자립생활관 거주여부, 이사회수, 주거만족도	사회적응
Cook(1994)	주거의 안정성, 가족과의 접근성, 전 후견인 및 학교나 직장의 근접성, 이웃환경, 교통 편리성	사회적응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현 등(1990)의 연구에서는 퇴소대상 청소년들이 퇴소 후 거처문제를 의지할 부모나 친척으로는 부모, 조부모, 외가, 고모나 삼촌, 친형제 등을 생각하고 있으나 갈 곳이 없다는 청소년도 54.4%로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실제로도 퇴소 후 이들의 주거환경은 생각했던 만큼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 또는 회사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 시 받는 자립정착금으로는 월세 보증금을 내기 힘들어 기숙사가 갖추어져 있는 직업을 선호하거나 자립생활관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직장과의 거리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남윤희(1994)등은 퇴소연장 청소년들의 자립에 자립생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자립생활관의 낮은 활용도가 퇴소청소년들이 결국 도시에서 쉽게 유흥업소를 선택하게 되고 친구 혹은 선배들과 월세를 얻어 생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거지의 불안정이 친구나 선배들과의 동거경향을 높이는데 이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갈 곳이 없어 동거하는 경우가 되어 대부분 경제력을 상실한 퇴소청소년들의 모임장소가 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줄만한 통제기능이 없어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직장에서 기숙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퇴소청소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거환경의 마련은 큰 부담이 되게 되며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사회적 지지영역

<표 II-16>에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관련 사회적 지지변수가 나타나 있다.

〈표 II-16〉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영역 변수

저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혜령(1997)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친구, 시설직원, 지역사회기관, 퇴소시 시설지원체계	사회적응
현은민·박혜영(2005)	시설 선생님, 학교 선생님, 친구, 후원자, 부모님	사회적 적응
Ferruggia et al., (2006)	부모, 중요한 타인, 또래 지지	적응
신혜령·김성경·안혜영(2003)	가족지지, 친구지지, 시설지지	사회적응
Barth(1986)	위탁부모나 그룹홈 직원과의 연락, 평균접촉횟수	사회적응
이기필(2003)	자립지원관련 프로그램 실시여부, 프로그램 만족도, 자립지원금액, 자립정착금, 희망하는 지역 선택요인, 거주지 지원책	-
Mech(1996)	성인기의 사후지도	심리사회적 적응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친구, 시설직원, 지역사회기관, 시설선생님, 학교선생님, 후원자, 중요한 타인, 위탁부모지지(신혜령, 1997; 현은민·박혜영, 2005; Barth, 1986; Ferruggia et al., 2006)와 자립지원관련 프로그램 실시여부, 자립지원금액, 자립정착금, 거주지 지원책 등을 포함하는 퇴소시 시설지원체계(신혜령, 1997; 이기필, 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후 사후지도 여부(Mech, 1996) 등이다.

사회적 지지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시설수용아동의 친부모 생존율은 80%이상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시설청소년들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신혜령, 2001), 부모생존율은 47.1%, 양친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가 10.8%,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한다. 즉,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설배치 이후 부모를 만난 적이 없는 아동이 퇴소 즈음이 되어도 부모의 생존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결

국 부모가 생존한 아동의 입소율은 높아졌지만 입소 후 연계부족으로 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비율은 줄었으나 부모 있는 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설과의 적극적 관계도 부족하다. 퇴소청소년이 성장해 온 시설의 시설장, 시설직원, 후배들은 가족과 같은 의미에서 퇴소 후에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개별 혹은 퇴소자의 모임 등 중간조직을 통해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추후지도를 통해 사회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부적응 퇴소청소년 사례의 경우, 시설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시설의 보육사들과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 그리고 시설의 출신자들의 모임이 있는 시설의 청소년은 자립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생활해 온 제 2의 가정인 시설의 직원 그리고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아동의 자립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신혜령, 1997).

(6) 신체적 심리적 발달영역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신체적 심리적 발달 요인은 신뢰성, 태도, 인내심, 솔선성, 책임감, 내외통제성, 자아탄력성 등이다(현은민·박혜영, 2005). 신체적 발달 영역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행연구들의 관심이 적어 적절한 변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II-17〉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발달 영역 변수

저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혜령(1997)	자립감, 신뢰성, 태도, 인내심, 솔선성, 책임감	사회적응
현은민·박혜영(2005)	내외통제성	사회적 적응
현은민·박혜영(2005)	자아탄력성, 우울·불안	사회적 적응
Ferruggia et al., (2006)	우울,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적응
강복정(2000)	자아정체감, 심리적 복지감,	사회적응

4.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1) 정책방향

2006년까지 우리나라 퇴소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퇴소한 청소년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특히, 마땅한 주거가 없는 퇴소청소년은 “침식이 제공되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쉽고 이러한 일자리는 대개 음식숙박업 등으로 값싼 노동시장인 경우가 많다. 최근에 들어 도움이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자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지적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소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부수적인 일로 취급되고 있다. 2007년 현재 퇴소한 청소년에게는 당장 따뜻한 가족, 적절한 주거, 괜찮은 직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

퇴소청소년의 완전한 자립은 아동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 고등학생이 바라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듯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은 아동이 퇴소 후에 자립하지 못한다면 아동복지서비스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퇴소청소년은 가족과의 재결합,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대학 등 정규교육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훈련,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등을 원하기에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시 지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퇴소청소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는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지원시설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자립정착금 지원

우리나라의 자립정착금 지원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원권고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며 퇴소후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별 예산증액확보를 추진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시기는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실상 이제까지 시설퇴소후 일정기관이 경과한후 지급되어온 것이 일반적이다. 지급은 퇴소 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소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시설) 자립정착금 지급시에는 아동에 대한 자기관리, 경제개념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정착금이 자립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각 시·도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시설장에게 일괄 송금하되 일괄 송금하는 때에는 퇴소 아동에게 전달되었는지 추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이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자체 및 시설은 퇴소아동(고3 학생, 3년 이내 퇴소자, 연장아동)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자립지원센터 운영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알선, 상담 등 시설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1993년 7월 1일부터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및 16개 시·도 지부로 인건비 230,304천원(2007년 483,648천원 예정), 전산운영경비 17,824천원/년(2007년 19,600천원/년 예정)이 지급된다.

퇴소를 앞둔 고3재학생과 퇴소아동에게 (ㄱ) 취업알선, 대한진학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적 자립을 유도하고 (ㄴ) 상담기능과 역할강화로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행청소년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하며, (ㄷ) 직업훈련, 기능교육, 사설학원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ㄹ)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원체계 확립 등을 주된 사업방향으로 한다.

사업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퇴소아동(만18세 이상) 중 당해연도 기준 3년 이내 퇴소자, 연장아동(만 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¹⁵⁾이다.

센터 운영방침은 중앙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도별 자립지원센터 전문상담원을 배치 운영하며 자립지원센터 국고지원 예산외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군·구)로부터 예산,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 퇴소한 아동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내용은 (㉠) 취업알선, 진학상담, 후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격증 취득 지원, 인성교육, 적성검사, 성숙도 검사, 만족도조사, 사회적응 프로그램(직장체험활동) 등 실시, (㉣) 시설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¹⁶⁾, (㉤) 자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1인 1기술갖기 운동 전개 및 1:1 지역사회 인사 등의 결연을 통한 상담·정서지지 및 후원추진, (㉦) 퇴소(예정) 아동에 대한 주거, 취업,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 실시(매년말 실시, 다음 연도 자립지원 사업계획 반영) 등이다. 소요예산은 2006년 248,128천원, 2007년 503,248천원이며 민간단체보조로 충당된다.

(3)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여 아동의 건전한 퇴소를 준비하게 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매입임대 사업과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도입키로 하였다.

현재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그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금액은 72만원이다. 이를 10년간 적립하더라도 2천만원을 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발달지원계좌는 현재 어린 아동에게 효과가 클 것이며 당장 가까운 장래에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을 위해 추가적인 국가,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6) 2007년 중에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급 예정

3) 우리나라 제도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퇴소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일반 가정집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독립된 주거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도달하면 ‘안정된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자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음식숙박업소 아르바이트와 같은 ‘괜찮지 않은 직장’이라도 얻고 퇴소한다. 이렇게 준비가 덜된 퇴소는 자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둘째, 퇴소청소년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가 있다. 적게 주는 자치단체는 100만원이고 가장 많이 주는 곳도 500만원인데, 이는 7명 원룸의 전세보증금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퇴소청소년은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기 쉬운데, 이러한 일자리는 영세규모의 제조업체나 음식숙박업소 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길 요구하는 일자리일 수도 있다. 국가가 퇴소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대도시 일부지역에 있는 “고시원”이나 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보증금정도 되는데, 이곳을 활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가출청소년과 유흥업소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열악한 주거환경은 퇴소청소년의 건전한 자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퇴소청소년은 갑작스럽게 상승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았던 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받았다. 퇴소와 함께 이들은 복지시설에서 받았던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건강이 나빠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다. 일반 가정집의 청소년은 일시적으로 곤경에 빠질 때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퇴소청소년은 대부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업,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등도 도움을 거의 주지 않는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많은 장학재단도 비슷한 처지라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까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수많은 사업도 퇴소한 청소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경우에도 퇴소청소년은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이기에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사실상 입주하기 어렵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 제9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중인 아동이나 귀가조치 한 아동의 ‘사후지도’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사후관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도 퇴소 이후에는 사후지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기에 이들의 자립은 방임되어 있는 셈이다.

Ⅲ.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 일 본
2. 미 국
3. 프랑스

Ⅲ.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 일본¹⁷⁾

1) 정책방향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필요성

사회적 양호¹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경우나 취업 후 주거를 확보할 기간과 같이 꼭 필요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8세가 되는 연도 말이 되면 입소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이외에도 18세미만이라 하여도 중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경우 조치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기초적인 생활능력이나 인간관계 형성 방법 등 사회적 자립능력을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채 사회에 진출하여 혼자 살거나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업을 하고 일을 익히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쉽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주변의 인간관계 및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취업 후에도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체제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전국아동양호시설협의회에 의하면 약 3만 명이 생활하는 아동양호시설(전국552개소)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약 50%를 넘는다. 대학·전문대학으로의 진학률(2002년 4월)은 8.5%로 일반가정의 1/5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중학·고등학교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업을 하여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대인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2년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시설출신자가 1년 이내

17) 이 부분은 정일교교수(가톨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

18)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여러 사정에 의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을 대신해서 사회가 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여 주는 양육보호.

에 전직한 경우가 46%를 넘었다(2005.3.11 마이니치신문).

동경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한 「아동양호시설퇴소아동의 추적조사」¹⁹⁾에 의하면 취업청소년의 정규직원 비율은 67.6%이며,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비율은 32.4%이다. 취업직종으로는 슈퍼·소매점과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아 59.7%이며, 서비스업(호텔,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22.4%, 제조업(인쇄, 제본, 부품제조, 식품공장 등)이 10.4%이다. 급여는 10만엔 미만인 16.9%이며, 10만 이상 15만엔 미만은 51.4%이다. 시설퇴소 시 취업한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54.2%, 퇴직한 경우는 43.0%이며, 1회 전직한 경우는 36.0%, 2회 이상 전직한 경우는 27.9%이다. 즉 시설퇴소 후 1년반 내에 퇴소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43%로 반수에 가깝다. 주거형태로는 민간아파트가 38.8%, 회사의 기숙사는 38.8%이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직자가 많아 불안정한 경제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들 중에는 「자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채 조치(위탁)해제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일단 취업을 하여도 직장 및 지역에서의 인간관계, 금전관리 및 가사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 조사에서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여러 어려움으로 퇴소하고 있으며 그 과제로서 「인간관계」, 「경제관념」, 「가사 등 생활지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양호시설 마쓰카제소우(松風莊)²⁰⁾의 종사자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들의 경우 아동들이 「졸업 후 불안하게 생각되는 점」으로는 제 1위가 정신적인 면, 제 2위가 인간관계, 제 3위가 생활기술면·금전관리 등을 들었다. 꼭 익혀야 한다는 것으로는 제 1위가 생활기능, 제 2위가 말씨(인사·사죄 방법·부탁하는 방법 등), 제 3위가 인간관계 만들기(배려·협조)이다.

19) 2001년도 중에 취업하여 조치해제 한 청소년 145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일 현재의 상황에서 추적조사를 함.

20) 초등학교생 4명, 중학생 8명, 고교생 12명이 입소하고 있는 아동양호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의견으로는 생활기능면에 대한 자기평가가 비교적 낮아 자신이 없고, 자기부정이 강한 아동이 많았다. 또한 자신의 본적, 생년월일 등을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의견으로는 「퇴소 후 곤란했던 점」의 제 1위는 돈, 제 2위로는 직장 혹은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기상(起床)이며, 「자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약 3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에 대한 질문으로는 ㉠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힘, ㉡ 자신을 갖는 것, ㉢ 일상생활의 관리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었다(淺倉惠一外, 2004 : 130-131).

아동양호시설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 일에 대한 불안, ㉡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 고독에의 불안, ㉣ 경제생활에의 불안, ㉤ 식생활에의 불안, ㉥ 질병 및 죽음, 의료비에의 불안, ㉦ 은행, 관공서 등의 활용에의 불안, ㉧ 사회상식에의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淺倉惠一外, 2004 : 131).

이와 같은 조사결과처럼 사회적 양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지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과제를 극복하면서 입소(위탁)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퇴소(위탁해제)후도 포함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 2005).

(2) 아동복지에 있어서 「자립」의 개념

1990년대 후반 이래 자립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과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고령자, 아동, 그리고 아동양호의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9).

「자립」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존재인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함과 동시에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東京都兒童福祉審

議會,2005).

이렇게 새로운 「자립」 개념은 서로 돕고 원조를 받아가면서 즉, 스스로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신체적 자립),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버는 능력(사회적 자립)뿐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자기실현」,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다운 생활양식과 삶의 방법을 실현하여 가려고 하는 과정자체를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6). 사람다운이란 한 사람 한사람 다른 내면적 가치를 찾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로서의 자립」은 제 3세대의 인권이라 불리운다(제 1세대의 인권은 사상·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자유외의 보장, 제2세대의 인권은 교육권 및 노동권 등의 생존권적 자유의 보장, 그리고 제3세대의 인권은 환경권, 발달권 등 개인의 내면적 가치도 포함한 자유의 보장)(淺倉惠一外, 2004 : 19).

「자립」 개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개인(個)」의 존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個)」을 존중하는 실천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개인(個)」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존하는 동료를 전제로 한 「개인(個)」의 존중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인(個)」의 자유는 방임도 아니고 자기마음대로도 아닌 서로 협력하고, 동료에게 인정되며 동료와 더불어 한 자유이다. 원조자도 포함하여 모두가 대등하게 협력하여 가며 각각의 개성을 발휘하는 집단이다(淺倉惠一外, 2004 : 16).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써 시설생활의 개인실화는 시설의 최저기준으로서 시설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다. 이것은 최근 「아동권리조약」,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실의 제공은 개개인의 생활공간 만들기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유물이나 가구 등 그 사람다운 생활시간과 리듬만들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실천의 전개에는 「자립」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전의 「혼자서 타인이나 행정의 보조를 받으며, 의존없이 생활가능하도록 하는 신변자립과 사회생활을 자립이라 한다」라고 하는 「자립」 개념

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자립」에 대한 새로워진 관점에 기반하여 사회적 양호 하에 양육되는 청소년의 자립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인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찰하면 첫째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전관리 및 가사 등의 기본적인 생활능력 뿐만 아니라 대화능력을 포함한 인간관계형성 등을 몸에 익히게 하는 자립이 필요하다.

둘째로 심리적 관점에서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립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을 몸에 익히는 자립이 필요하다.

셋째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한 직업을 가지며, 일을 해서 생활하기 위한 수입을 얻는 능력을 익히는 자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립의 힘이 「생존의 힘」이 된다. 이렇게 「생존의 힘」을 몸에 익혀 취업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운영하며 더욱 성장하여 가는 것을 자립이라 할 수 있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 2005).

타케나카 테즈오(竹中哲夫)는 자립의 개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동들의 생활전반의 원조를 기초로 성장·발달의 원조 및 가족관계·사회관계의 원조, 경제원조 등을 포함하는 활동으로서 ㉠ 기본적 생활습관 습득의 자립, ㉡ 가정생활의 자립(아동으로서), ㉢ 지역사회·학교생활의 자립, ㉣ 배움의 자립(혹은 자기교육력의 획득), ㉤ 사회적 인간관계의 자립, ㉥ 노동의 자립, ㉦ 경제생활의 자립, ㉧ 자기의식의 형성·자기동일성의 확립, ㉨ 성적인 자립·성역할의 자립, ㉩ 가정생활의 자립(성인으로서), ㉪ 사회적 주권자로서의 자립, ㉫ 삶의 보람·자기실현·인생관의 형성으로서 자립을 정의하고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35).

(3) 아동복지에 있어서 「자립지원」의 개념

1990년대 후반 이래 진행되어 온 사회적 양호의 개혁방향 가운데 「보호로부터 자립지원으로」의 전환이 개혁의 기본이념으로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양호시설의 목적에 자립지원이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전국아동양호시설협의회의 『아동양호시설미래상Ⅱ』(2003.4)와 사회보장심의회 아동부회의 「사회적 양호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원회(社會的 養護のあり方に關する専門委員會)」등의 개혁제안에서도 「보호로부터 자립지원」의 이념이 개혁의 방향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다(長谷川眞人, 2007 : 8).

아동복지에 있어서 「자립지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1998년에 발행된 후생아동가정국복지과 감수 『아동자립지원핸드북』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핸드북』에서는 시설입소아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립지원이란 아동이 사회인으로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활력을 기르는 것이며,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습득과 직업지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립이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원조를 구하는 것이 자립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의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발달기에 있어서 충분한 의존체험에 의해 길러진 다른 사람과 자기에의 기본적 신뢰감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쌓아야 할 기반이 된다(望月彰, 2004 : 94, 長谷川眞人, 2007: 9-10, 재인용).

또한 1998년 2월 24일 후생성아동가정국장통지 「아동양호시설 등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관계된 유의미점에 대하여」에서는 아동양호시설에 있어서 자립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립지원」이란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입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도 외에 입소아동 가정환경의 조정 및 퇴소 후에도 필요에 따라 조언함으로써 입소아동의 가정복귀 및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양호시설은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입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자립지원」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모두

자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 그 자체가 아동의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우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35).

또한 1998년 4월 시행의 아동복지법에도 아동복지시설 등에 「자립지원」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후생노동성의 자립지원의 정의로는 아동이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활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양호시설에서 「자립지원」은 장래 아동이 자립한 성인으로서 그 생활을 구축하여 가는 것을 예견하면서 현재 아동의 생활 및 발달의 과제에 주력하는 측면이 있다. 「자립지원」의 목적을 볼 때 아동의 「현재의 자립」과 「장래의 자립」에 대해서 아동과 직원간의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일이 가끔 있다. 직원은 아동이 장래에 시설출신자에 대한 현실사회의 차별로 인해 괴로워한다든지, 전·퇴직을 반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채 양호문제에 빠지는 것을 가장 문제시 한다.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의욕과 노동의욕에 관련된 지도를 중시한다. 또한 노동자·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높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주권자로서 성장하기를 아동에게 바란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자립의 요구를 아동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아동과 더불어 구체적인 장래의 생활설계를 세우는 것이 「자립지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望月彰, 2004 : 107-108).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립지원은 협의로는 시설퇴소 전 혹은 퇴소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생활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케어(care) 및 자립과정에 있어서 생활에 관한 상담에 따른 지원으로서 리빙케어(leaving care)·사후케어(after care)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시설퇴소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케어의 축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립지원은 광의로는 시설케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田澤あけみ외, 2002 : 89).

(4) 「사회생활지원」 개념의 구축

지금까지 사용해 온 「자립원조」 및 「자립지원」 개념은 극히 포괄적인 개념이며, 일상생활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자립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 및 생활의욕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기술의 습득을 자립지원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회생활지원」은 사회생활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 및 과제설정에 의한 생활의욕의 향상, 프로그램실시에 있어 직원과의 상호교류가 목적이며, 그러한 협동작업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생활기능 가운데에서도 감정통제기능에 관련된 노여움의 통제방법(anger management)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주장훈련(assertive training)을 받는 것은 자기지각을 빨리 파악해 스스로 감정통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적 케어와 병행하여 제공됨으로써 프로그램자체의 효과도 기대된다. 아동양호시설의 아동 다수는 낮은 자기긍정감과 더불어 인지의 왜곡과 감정의 통제 및 행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역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의식이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인지의 수정방법으로 애착관계의 형성(山田, 2002:49, 林浩康, 2006: 92, 재인용), 강점관점에 기초한 의도적 대화, 지지적 관계 등이 있지만(山田, 2003:160-161, 林浩康, 2006:92, 재인용) 성취감을 동반하는 체험 등도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공체험을 쌓아가는 것도 자신감 있는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생활지원」은 Ryan의 구체화가 가능한 기술(tangible skills)²¹⁾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화가 가능한 기술(tangible skills)로 요리, 청소, 세탁, 쇼핑과 같은 가사노동, 가계관리, 건강관리, 주거의 획득, 사회자원의 파악, 직업의

21) Ryan,은 자립을 위한 구체화가 가능한 기술(tangible skills)로 취업의 장, 주거, 식료, 의복의 획득방법, 가사일반, 금전관리 등을 들고 있으며, 구체화할 수 없는 기술(intangible skills)의 개념으로 의사소통, 연령에 상응한 의사결정, 자기평가, 감정통제 등을 들고 있다(Ryan, 1988, 林浩康, 2006: 93, 재인용).

획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이 생활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기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형성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사회생활기능의 습득이 개인의 생활수준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아동양호시설에서는 일반가정에 비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생활체험이 부족하기 쉬우며 생활기능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조기부터 사회적 자립이 요구되는 상황, 양호 고령아(연장아)가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점,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적절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독거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래 이러한 지원은 입소 때부터 의식적으로 실시하고 퇴소 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생활지원

2000년 이후 아동양호에 있어서 지역생활지원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아동양호시설의 기본 방향으로 시설의 소규모화, 생활단위의 소규모화, 가정적 양호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2003년 4월 전국아동양호시설협회 제도검토특별소위원회 「아동을 미래로 하기 위하여(子どもを未來とするために)－아동양호시설근미래(兒童養護施設近未來), 2003년 11월 사회보장심의회아동부회 「사회적 양호의 방향에 대한 전문위원회보고(社會的養護のあり方に關する専門委員會報告)」 등이 있다. 이들 보고서는 가정과 같은 양호, 즉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자원을 이용·참가하여 가는 지역생활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淺倉惠一外, 2004 : 21).

2)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1) 자립지원계획

자립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후생성 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장 통지

(1998년 3월 5일, 제9호) 「아동양호시설 등에 있어서 입소자의 자립지원계획에 대하여」에서는 아동자립지원계획은 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시설이 아동상담소의 치우지침을 받아 아동 및 보호자의 의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아동 및 그 가정의 원조 계획이라 하고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33). 이러한 자립지원계획은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규정되고 있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 2005).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평가, 의견청취, 계획, 실천, 재평가라는 사례관리 관점이 필요하며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등을 취할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는 관점으로 부터 시설에 입소하여서도 의향조사가 필요하며 ㉢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가정환경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양호시설에는 한명 한명의 「자립지원계획」의 책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계획은 아동상담소에서 보낸 「아동표(兒童票)」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田澤あけみ 외, 2002 : 52).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계획작성에 있어서 아동상담소와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과 아동서비스메니지먼트의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北川清一, 2000).

자립지원계획의 내용으로는 본인의 장래희망 및 과제 이외에 가족상황 및 부모의 양육력 등을 기재하고, 학교 및 아동상담소의 견해와 의견과 함께 지역의 의사 및 보건사, 민생위원 등의 의견도 포함한다.

시설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적는다. 진학과 취업의 목표와 절차, 학습자원봉사자에 의한 지원을 명확히 한 프로그램도 만든다. 지금까지 이러한 아동의 개별프로그램의 작성은 각 시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2005.3.11.매일신문).

한편 자립지원계획의 원칙으로 발달보장과 자기실현 보장, 사회적 자립지원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인 발달보장과 자기실현 보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아동에게는 발달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지식·생활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체·보완하는 생활의 장이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은 아동의 자립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편안하고 안심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사람, 의·식·주·놀이)를 제공한다.
- ㉡ 아동에게는 개개 상황에 적합한 리빙케어(취업자립을 향한 자립준비)를 실시한다. 아동의 자립을 전제로 개개의 연령, 상황, 능력, 희망에 맞는 지원계획이 책정되고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설에서 직접 취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에 복귀하는 아동에게도 배려한다.
- ㉢ 퇴소한 아동에게는 사후케어(퇴소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상담원조)를 실시한다. 퇴소 후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생활원조는 최소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양호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도 시설의 방문 혹은 상담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고 상담원조의 기회 및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직원체제를 만든다.

두 번째 원칙인 사회적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아동에게는 올바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사회규범을 배우고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사회규범의 학습을 위해 생활 중 아동의 언행 중 장려해야 하는 것과 개선해야 될 것을 각각의 연령 및 성격·특성에 맞추어 그때그때 보완하고, 사고방식이나 사물의 도리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 아동에게는 양질의 문화를 접할 풍부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의 정신적 안정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가와 놀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문화와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 ㉢ 아동에게는 바람직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 원조한다. 학교와 지역 사회의 행사·사회체육에 참여하는 등 아동의 사회적 활동(아르바이트,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소시·후에도 지원기관·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자립을 위한 아동양호의 실천지침

1999년 6월 개최된 제28회 전국아동양호문제연구회 전국대회 제4분과회 「자립을 위한 양호 실천지침(自立に向けた養護の取り組み)」에 의하면 아동양호란 “인간으로서 공통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과 「아동으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에게 사회적·공적 책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이며, 아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요구된다.

- ㉠ 편한 마음과 안정된 애정이 가득한 인간관계와 생활기반이 유지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 신체적, 정신적인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가 중요하다.
- ㉢ 아동 한명 한명에게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시설에 확실한 귀속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 아동다운 흥미, 호기심, 활동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 한명 한명의 개성과 감성, 생각을 살리고 고민과 불안 등을 이해하는 원조가 필요하다.
- ㉥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원조, 혹은 교육적인 원조를 받아야 한다.
- ㉦ 의·식·주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충실한 생활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 ㉧ 매일 생기 있고 즐겁고 활기에 가득 찬 장이며, 「장래에 기대나 꿈을 갖는 장」이어야 한다.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적다고 생각하고 개성이 경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동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시키는 것이 사회가 차세대의 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최선의 책무이다.

지침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시설에서 자립지원을 포함한 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입소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입소단계에 관한 입소 보호(admission care), 시설 입소 중의 케어(in care), 사회생활을 준비

하는 리빙케어(leaving care), 시설 퇴소후의 사후케어(after care) 등 각각의 케어에서 자립지원의 실시가 중요하다(淺倉惠一外, 2004 : 128-129).

1999년 6월 개최된 제28회 전국아동양호문제연구회 전국대회 제4분과회의 「자립을 위한 양호 실천지침(自立に向けた養護の取り組み)」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목표를 정하고 인간관계가 크게 중요하므로 토론을 실시함
- ㉡ 18세에 시설을 퇴소하여도 20세까지 사후케어로서 지도하고 있음.
- ㉢ 사람과 접하는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에게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한다든지 자립이 불안한 청소년에게 3개월 동안 아파트생활을 시키고 있음
- ㉣ 자립을 위해 개인실을 주어 모두 자기 혼자서 하게 함.
- ㉤ 초, 중, 고교생 회의를 열고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게 함

(3) 시설퇴소 시 지원

시설퇴소회의에서는 <표 III-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퇴소에 이르는 처우경과, 퇴소후의 보호자와의 관계, 퇴소후의 생활, 진로, 사후케어에 대하여 현재의 생활상황과 퇴소후의 원조 및 금후에 참고하기 위한 처우의 평가, 퇴소 후 사례기록 등을 검토한다. 참가직원은 모든 직원이 참가하는 것이 전제이다.(淺倉惠一外, 2004 : 138).

시설퇴소 시 보조되고 있는 제도로는 청소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양육가정, 자립원조홈에서 퇴소하여 취업 및 진학하는 경우, 아파트 등에 입주하는 경우, 시설장 등이 신원보증 및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동경도사회복지협의회가 경비를 보증한다.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취업 시 또는 대학,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입학 시의 신원보증은 5년 한도로 150만엔 이내의 금액이며, 아파트 등의 주거 임대 시 연대보증은 20세에 이르기까지 35만엔 이내의 금액이 보조되고 있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2005).

〈표 III-1〉 시설퇴소시 아동상담소·시설에서의 회의 검토사항

	아동상담소에서의 검토사항	시설에서의 검토사항	회의 참가자
퇴소시 실시하는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후 가정복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조정 등을 실시 - 퇴소의 진로 및 사후케어 등의 연계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까지의 처우경과 - 퇴소의 진로에 대한 검토 - 퇴소후의 친자관계 - 퇴소후의 사후케어 - 퇴소후의 생활, 각오 - 이후의 사례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사 아동지도사 심리상담직원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시설장 아동복지사 학교담임

* 출처: 淺倉惠一外, 2004 : 138, 일부 발췌.

(4) 취업지원

경제적 자립의 제일보는 취업하는 것이지만 취업하여 시설을 퇴소한 후 직장부적응 등으로 전직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돌아갈 가정도 없고 회사의 기숙사나 아파트를 생활의 거점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을 잃는 것은 생활의 장도 잃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확실한 직업관을 익히기 위한 지도와 직장체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은 직장체험, 직장실습 등을 통한 직업관의 양성이 필요하며, 직업적성의 확인을 위하여 체험을 실시하고, 또는 지역에서 일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직원이 직장의 개척 및 직장과의 청소년을 연결시키는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이런 실천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로부터 배우고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4년 7월 개설된 동경취업센터에서는 정보제공, 직업소개 이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직업적성진단,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과 취업센터가 연계한 취업지원도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되고 있다.

또한 이미 취업하고 자활하고 있는 시설출신자를 초청하여 직장의 모습과 체험담 등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선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고 효과적인 직업관의 형성이 기대된다. 동경도는 시설에게 방문 및 전화연락 등으로 청소년의 생활상황의 확인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후케어로 가산점을 주는 등 시설퇴소후의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5) 리빙케어(leaving care)

리빙케어란 양육대체기능을 가진 입소형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인케어(in care : 시설에 있어서 생활원조지원)과 사후케어(after care : 시설퇴소후의 자립원조지원)와 인접영역으로 그 쌍방의 겹치는 부분에 위치하는 인케어의 종결기부터 사후케어의 개시기에 있어서 자립지원의 원조내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鈴木 力, 2005: 135-136). 리빙케어는 구체적으로 퇴소 전 1년부터 퇴소 후 2~3년 동안 시설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전개하는 서비스 내용이다.

시설을 퇴소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부모 형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 퇴소 전 단계부터 직원을 교대하여 가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입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이미 해결되어 있는지, 시간의 경과 혹은 아동 자신의 성장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은 채 가정복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시설입소시와 역방향으로 접근하여 갈 필요가 있다. 그 접근은 직원의 주도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부모 당사자가 중심이 되도록 원조하고 퇴소·가정귀환의 계획과 감정의 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의 기술습득과 더불어 가족과 관계성의 구축이 중요하며, 또한 원조자는 퇴소청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자에 대해서도 사후, 언제라도 상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퇴소하여 의지할 부모, 친족도 없는 가운데 자립이 강요된 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습득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인

간관계의 형성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 담당직원과 퇴소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면 퇴소 시에는 그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직원과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른 직원이나 시설장이 대신하여 관계의 지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장도 이미 청소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담당직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鈴木 力, 2005: 139-140).

리빙케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각 시설 독자의 자활훈련동(실), 혹은 일정의 보조시스템인 자립원조홈(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 및 분원형자활훈련사업(分園型自活訓練事業) 등이 있다. 단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부터 리빙케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鈴木 力, 2005: 136). 리빙케어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종결없는 사후케어라는 개념에 일정의 구분을 짓는 것으로 시설의 업무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둘째 인케어의 종결기에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자립을 목표로 한 서비스를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鈴木 力, 2005: 137).

구체적으로 리빙케어의 목표는 첫째, 사회기술의 습득이며 둘째, 직원과 퇴소를 앞 둔 청소년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첫 번째의 사회기술은 생활분야전반으로서 이하의 항목을 들 수 있다.

- ㉠ 사회생활의 여러 절차로서 가스비·수도료·전기료·신문구독료 등의 지불, 주거이전의 수속, 전출증명, 전입신고, 아파트 보증인의 절차, 전직의 절차, 취업보증인의 선정절차, 건강보험·국민연금(후생연금)의 가입, 운전면허증의 취득과 갱신 등
- ㉡ 금전관리로서 은행·우체국의 카드 관리, 보통예금, 정기예금, 재형저축 등의 절차, 각종 권유, 통신판매, 방문판매에의 대응, 금융대출, 각종 신용에 대한 대응, 휴대전화, 간단한 지출장부를 통한 금전관리 등
- ㉢ 생활 및 건강관리로서 기상·취침 시간설정, 쓰레기 분리처리, 최소한의 청결과 식사섭취, 병원에서의 절차, 회사를 쉴 경우의 연락

법, 여가 시간 보내는 법 등

- ㉔ 인간관계 관리로서 퇴소시부터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를 맺는 법, 이성과의 교제 및 상대가족과의 교제방법, 회사 동료와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맺는 법, 이웃과의 관계, 인사, 고충처리 등
- ㉕ 위기관리로서 음주, 약물, 내기 등에 대한 자기 제한, 피임방법, 임신했을 때의 대응, 범죄를 범했을 때·범죄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의 대응,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동반되는 고독을 이겨내는 힘, 원조를 필요로 할 때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절한 원조를 받기 위한 방법 등
- ㉖ 기타 프로그램으로서 지적 장애 및 정신장애로 장기적 원조 및 복지·의료에 대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원조의 지속과 더불어 원조를 받는 것의 이해를 촉진, 또는 전문학교 및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의 경제생활확보를 위한 방법 등
- ㉗ 상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내의 자활원조동(실), 원외의 임대 아파트 등에서 1인 생활의 생활체험을 시도하고 원조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항목들에는 각각의 구체적인 기술이 있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가는 교육이 의도적으로 계속적 실시되고 있다. 졸업생을 강사로 초대하여 역할극과 사례를 교환하거나 숙박연수합숙을 실시하는 등 일종의 「동료 상담」의 기회를 갖는 교류를 통하여 기술 전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다. 또는 각 시설에 핸드북 및 자원지도, 연락처 일람 등을 작성하여 두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리빙케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퇴소하는 당사자와 담당직원, 또는 시설과의 신뢰관계 형성이다. 사춘기 중에 직원 또는 시설과의 인간관계는 자칫하면 악화된 상황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적어도 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이전의 불신이나 노여움을 풀고 오해가 있으면 고치고, 잘못 한 것이 있으면 사죄하고, 이야기 할 것은 이야기하여 퇴소하여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담당 직원(특히 담당직원에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의 얼굴이 떠올라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鈴木 力, 2005: 137-139).

또한 리빙케어와 관련된 사회자원으로서 리빙케어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전국고교생교류회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문제의식의 교류는 역량강화(empowerment)와 연결되며, 그 실천가치는 크다. 전국 조직은 아닐지라도 각 시설별로 혹은 각 지역별로 각각의 특징 있는 당사자 주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鈴木 力, 2005: 139-140).

다음의 <표 III-2>는 리빙케어의 목표로서 사회생활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지원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 표는 청소년복지센터의 『강요된 『자립』(強いられた「自立」)(ミネルヴァ書房, 1989년)의 틀 등을 참고로 A시의 아동양호시설직원과 하야시 히로야수(林 浩康)가 다시 작성한 것이다(林 浩康, 2006:96-97).

<표 III-2> 사회생활지원 내용

퇴소준비지원 항목(㉠-㉣)	
단기적 과제	㉠ 생활기능의 습득 식생활의 관리, 의류의 관리, 사회생활의 관리, 가게의 관리, 생활기기의 관리, 주거공간의 관리, 건강의 관리, 생활리듬의 체득
	㉡ 취업과정의 파악 직장 찾는 방법의 습득, 취업까지의 수속의 습득, 자격의 습득, 취업에 대한 마음의 준비, 급여에 대한 이해
	㉢ 사회자원의 파악 활용 가능한 시설·기관과 그 기능에 대한 이해
	㉣ 사회예절 등의 습득 편지 쓰는 방법·전화 대응·이웃과 사귀는 방법·인사하는 방법의 습득
중기적 과제	㉤ 생활의욕의 향상
	㉥ 여가의 활용
장기적 과제	㉦ 결혼관·가족관의 체득
	㉧ 정신적·인격적 발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 습득가능하며, 구체화하기 쉽고 사회생활상 필요성이 높은 사항으로 「퇴소준비 원조항목」은 ㉠ 생활기능의 습득, ㉡ 취업과정의 파악, ㉢ 사회자원의 파악, ㉣ 사회예절 등의 습득

네 항목이다. 또한 사회생활 상의 과제 중 중기적 과제로는 ㉓ 생활의욕의 향상, ㉔ 여가의 활용, ㉕ 결혼관, 가족관의 체득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 과제로서는 ㉖ 정신적·인격적 발달을 사회생활 상의 기본적인 과제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으로부터 ㉗ 정신적·인격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환경을 개선한다는 접근도 하나의 방법이다. <표 III-3>은 「퇴소준비 원조항목」만의 달성과제 및 개별과제를 구체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III-3> 퇴소준비원조항목·달성과제·개별과제

퇴소준비원조항목	달성과제	개별과제
생활기능의 체득	식생활의 관리	식사의 계획·영양계획, 매입·보존, 조리, 정리, 비품관리(식기·젓가락 등), 남은 음식의 사용방법의 이해
	의류의 관리	의류의 계획(계절·장소), 매입, 세탁(세탁기계, 세탁소를 포함), 다리미 사용방법의 이해, 복장·머리형·차림세의 배려
	금전의 관리	지출계획(각종지불과 그 방법), 예금(구좌 만드는 방법과 예금 저금의 방법)의 이해, 가두판매·멀티상법 등의 이해, 카드론의 이해
	생활기기의 관리	전기기기 보수, 가스 관리, 미디어기기 관리, 자동차 구입방법과 그 관리의 이해
	거주공간의 획득관리	집 얻는 방법의 습득(신문·잡지·부동산중개업등), 집세·보증금·사례금·보증인에 대한 이해, 취득, 계약·갱신에 대한 이해, 이사방법, 청소, 정리, 수선방법의 이해
	건강관리	기호품과 건강에 관한 지식(술, 담배, 약물 등)의 습득, 수면 및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 스트레스 발산법, 성에 관한 지식의 습득
	생활리듬의 체득	규칙적 생활의 체득
취업과정의 파악	직업 구하는 방법의 습득	직업안정소·정보지·스포츠신문, 간판 등의 분별
	취업까지의 과정습득	이력서 쓰는 법, 면접받는 방법의 이해
	자격의 취득	운전면허, 취업에 관한 각종 자격에 관한 이해
	취업에 대한 마음준비 체득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직장 규칙·매너에 대한 이해
	급여에 관한 지식의 습득	상여, 보험, 연금, 세금에 대한 이해

퇴소준비 원조항목	달성과제	개별과제
사회자원의 파악	활용 가능한 시설·기관에 관한 지식의 습득	관공서, 경찰, 병원, 보건소, 재판소, 헬로워크(young shop안내소), 변호사회관, 아동상담소, 우체국, 은행, 소비자생활센터, 사회복지사업협회, 공민관, 민간 사춘기상담실, 아동학대방지협회, 광고지 등에 관한 기능의 파악 및 수속에 관한 지식의 습득
사회의례 등의 파악	문서작성법, 인사방법, 각종 쓰는법의 습득	편지쓰는 법, 전화의 대응, 이웃사귀기 방법, 사과·거절·예의방법의 습득, 친족과의 관계방법, 인간관계를 가지는 방법의 이해, 인감사용법의 이해, 종교·정치단체와의 관계방법의 이해

(6) 사후케어(after care)

사후케어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자의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및 자립의 원조를 말한다. 시설직원이 때때로 퇴소청소년의 가정 및 직장방문, 또는 퇴소청소년이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가정, 지역, 직장 등에서의 인간관계의 조정 및 자립생활에서 발생하는 곤란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다(長谷川眞人, 2007: 214-215).

리빙케어의 범주에 속하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장기적 범위의 원조로서 시설의 기관업무로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사후케어의 업무범위는 대학졸업연령인 22세 무렵 혹은 결혼시기까지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鈴木 力.2005: 140-141).

사후케어와 관련된 사회자원으로서 자립원조홈(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공급부족이다. 또한 자립원조홈은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아동양호시설의 퇴소청소년들 중에는 자립원조홈의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일상생활을 통제하지 못함 →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적응할 수 없음 → 무단결근 → 상사로부터 질책 받음 → 무책임한 퇴직 → 기숙사에서 쫓겨나 거주할 곳이 없어 짐 → 게임이나 음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써버림)과 같은 유형은 20세 전의 단계에 많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과 자립원조홈의 제공서비스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홈 주변에 아파트를 빌리기도 하고, 사택에서 살면서 자립하려 노력하지만 금전적인 면에서 실패도

있고, 혼자 생활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어 소년원에 가는 청소년도 있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무소로 가는 청소년도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연애, 결혼, 출산조차 불안의 연속이다. 자립원조호 사업의 반은 홈에서 자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케어이다. 홈주변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약간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애인이 생겼거나, 일을 바꾸고 싶다 등의 이유로 홈에 가끔씩 돌아온다. 홈이 청소년들이 돌아 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마음의 안전지대로서). 한 동안 소식이 없었던 경우는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묻고, 방문을 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애인과 헤어지게 하고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다(今後目指すべき児童の社会的養護體制に關する構想検討會).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동경도는 민간사회복지시설서비스 추진비 보조금의 확보로 시설의 노력과 실적에 따른 가산제도를 신설하였다. 아동양호시설이 시설을 퇴소한다고 결정하고 퇴소 후 사후케어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직장방문이나 가정방문에 의한 상담·지도·지원 등 사후케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청소년에게 지원을 한 경우에는 사후케어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7) 가정지원전문상담원(family social worker)

가정지원전문상담원의 제도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양호시설 등에 배치되고 있다. 학대 등의 가정환경상 이유로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상담소와의 밀접한 연계에 의해 전화 및 면접 등을 통해 아동의 조기 가정복귀, 가정위탁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담, 지도 등을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상담원은 「인격이 원만하며 아동복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경험을 갖고 있는 자」로 되어 있다. 주로 입소 아동의 조기 가정복귀 등을 위해 시설입소 전부터 퇴소까지, 나아가 퇴소 후 사후케어에 이르는 종합적인 가정조정 기능을 담당한다(山縣文治, 2005 : 174-175).

(8) 아동양호시설분원형 자활훈련사업(兒童養護施設分園型 自活訓練事業)

시설입소아동이 시설을 퇴소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안에서 생활 체험을 하는 곳으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지식·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아동은 1년 이내에 사회적 자립을 예정하는 아동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훈련기간은 취업 전 대개 1년 간으로, 입소시기는 고교 3학년 진급 시 등으로 되어 있다(山縣文治, 2005 : 176- 177).

사업담당책임자는 연간지도훈련계획, 개별지도훈련계획, 입소아동의 생활기록, 기타 해당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관리를 하며 효과적인 지도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훈련에서 주의할 점은 대상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이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사고방지, 건강관리,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며, 지도훈련에 있어서는 개성을 존중하고, 시설퇴소 후 사회적 자립으로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간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9) 자립원조홈

자립원조홈은 아동양호시설의 퇴소청소년으로 의무교육 종료후 취업한 자 중에서 조금 더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을 입소시켜 생활지도를 행하는 곳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풍요로운 인간성의 형성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양호시설의 사후케어 시설로서 발족하여 1997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으로서 법제화된 상담원조사업이며, 사후케어를 보장하는 장으로서 아동복지법내의 시설로 인가되었다(長谷川眞人, 2007: 216).

자립원조홈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이며, 운영주체는 지방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자이며, 현재 실시 개소는 35개소(2005년 11월 현재)이다.

자립원조홈의 대상아동은 의무교육을 종료한 18세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20세미만의 자)으로 법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 ㉠ 위탁부모에 위탁한 조치 또는 아동양호시설, 정서장애아치료시설 혹은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입소시켜 조치가 해제된 자
- ㉡ 전호에 규정하는 아동이외의 아동으로 도도부현 지사 혹은 지정도시 시장이 해당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원조 및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대상인원은 약 5명에서 20명이며 자립원조홈의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직원이 입소아동에 대해 적절한 원조 및 생활지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일 것
- ㉡ 개개 입소자의 거실의 면적은 1인당 3.3㎡이상, 1실당 약 2명까지
- ㉢ 거실, 식당 등 입소자가 상호교류 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를 갖출 것
- ㉣ 보건위생 및 안전에 대하여 배려할 것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당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상황 및 그 처해진 환경에 따라 적절한 원조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취업에의 준비자세 및 직장의 대인관계에 대한 원조·지도
- ㉡ 건강관리, 금전관리, 여가활용, 식사 등 일상생활에 대한 원조·지도
- ㉢ 직장을 개척하는 것과 더불어 안정된 직업에 취업하기 위한 원조·지도
- ㉣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른 가정환경의 조정
- ㉤ 아동상담소 및 필요에 따라 아동가정지원센터, 아동위원, 공공직업안정소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 ㉥ 기타 필요한 원조 및 생활지도

자립원조홈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1948년 후생성령 제63호) 제43조에 정해진 아동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
- ㉡ 아동복지법시행령(1948년 정령 제74호) 제13조 또는 제22조에서 정해진 보모
- ㉢ 아동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자립원조홈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가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립원조홈은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안정되지 않은 아동에게 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장소이다. 또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크게 다른 점은 이용료가 든다는 것이다. 입소청소년은 매월 이용료(30,000엔 전후)를 내어야 한다,

2001년 후생노동성은 자립원조홈을 40개소까지 확충하는 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보조액은 정원 10명이상으로 연간 약 370만엔, 10인 미만에서는 260만엔으로 직원 한사람의 인건비에도 부족하다. 즉, 아동복지법이 그 대상연령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립원조홈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조성비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극히 불충분하며, 운영경비의 많은 부분을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개를 위해 국가는 아동·자녀양육지원플랜(子ども・子育て應援プラン)에 기초하여 2011년까지 6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함과 더불어 대상 인원 10미만 자립원조홈에 대하여 직원체계의 충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長谷川眞人, 2007: 215- 217).

자립원조홈 원조내용의 기본은 취업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구축되지 않았던 신뢰관계,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가는 마음의 케어, 관리교육으로부터 자기결정·자기책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자기를 체험하는 자발성의 획득을 위한 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패할 권리의 보장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원

조하고 있다.

각 홈에 따라서 원조과정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을 중시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물로 심신을 건강하는 「식사」를 실천하는 홈, 자연과 가축과의 공동생활로 「살아가는 원점」을 배우는 홈,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와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알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홈, 친밀한 인간관계와 그 인간관계의 운영으로 생기는 희로애락을 통하여 존재를 인정하고 변화를 기다리고 관계를 맺는 홈 등이 있다(長谷川眞人, 2007: 217-218).

자립원조홈에 오는 청소년의 다수는 피학대청소년들이며, 방임된 청소년들이다. 성인들에게 불신을 갖는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집단생활에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고 그대로 사회에 나아가 실패하고 돌아온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모습(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의욕도 가지지 않고, 좋다고 말하지 않고, 목표조차 갖지 않은 경우가 있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무엇인가 할 의욕이 생기도록 하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상대가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직원입장에서 좋지 않다,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도 그들이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당연히 잘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여 간다. 그럴 권리는 그들에게도 있다. 그러한 것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주체성의 보장」이다. 마음 깊은 곳에 성인에게 불신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성인과 만나는 것, 작은 경험이나마 주체성의 싹을 돋아나게 해 줄 성인과 만남이 중요하다.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상당히 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밖에서 놀고 싶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청소년,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 이성과의 관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청소년, 비행을 하여 다시 가정재판소나 소년원에 들어가는 청소년 등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하여도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면

원조를 계속한다. 그들이 관계를 끊지 않는 한 홈을 나온 이후에도 계속 원조를 계속한다. <표 III-4>는 자립원조홈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4> 자립원조홈의 사례

자립원조홈 신쥬큐료 ²²⁾ (自立援助ホーム 新宿寮)	운영 방침	15-20세까지의 남여로 혼자서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라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1. 열심히 일할 것 2. 일하여 받는 급여는 직원과 상담하여 저금을 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생활을 함 3. 약한 동료로 왕따하거나 다른 동료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을 것 이상의 약속을 지켜야 함.
	지도와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은 직원이 보관하며 상담 후에 줌. · 입소시간은 10시, 취침은 11시, 기상은 각각의 취업중인 일의 특성에 맞춤. · 구직 중에는 직원의 일을 도움. · 매주 미팅을 열고 모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립을 위한 학습회를 옴. · 기타 여러 집단활동을 하고 있음
자립원조홈 세이쥬료 ²³⁾ (自立援助ホーム 清周寮)	운영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호시설의 퇴소청소년을 비롯하여 붕괴가정의 소녀, 또는 중증 문제가 있어 자립이 곤란한 청소년들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 · 취업을 통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발달의 왜곡을 고치고 단계적으로 풍부한 인간형성을 돕고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지도와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맞는 일을 발견하고 잘 수행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쉬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 · 수입에 알맞은 생활을 유지, 자신을 관리, 방을 깨끗하게 정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사와 운동, 일과, 금전감각 등의 생활유지·관리능력을 체득. · 직장이나 생활의 장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고 인간관계의 조정기능 지도. ·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아동은 통신고교 혹은 정시제 고등학교에 통학하면서 독서, 취미 등 여가의 지도를 통하여 자존감 향상과 사회화 지도.

22) 東京都 新宿區 中落合1-6-22소재 시설. 정원 : 20명(남자)

23) 東京都 足立區 保木間 2-18-15소재 시설. 정원 20명(여자)

(10) 직업지도 위탁부모제도

의무교육 종료 후의 청소년들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탁부모가 양육과 직업지도 두 가지 모두 실시하는 제도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위탁청소년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위탁부모들이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위탁부모들은 청소년이 취업이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보증인이 되기도 한다.

(11) 지속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자립원조홈 퇴소청소년들은 실업으로 집세를 낼 수 없게 되거나 사택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상황 또는 인간관계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심리적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취업을 해도 사회에 나온 후에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자립원조홈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인적, 재정적으로 곤란하며, 효율적이지 않다. 아동상담소, 취업지원기능을 가진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등의 민간단체, 지역에서 보호와 지원기능을 가진 민생·아동위원 등이 연계하여 자립원조홈을 중심으로 청소년 취업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양호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를 들어 15, 6세의 연령이라도 고용해주는 곳을 찾고, 자립을 위한 아파트를 찾고, 임신한 입소자의 출산문제, 약물의존 청소년의 치료,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청소년의 시설 찾기, 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의 교정, 갱생, 퇴소한 청소년의 임신, 출산, 비행재발 등에 대한 보호와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많은 보호는 하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많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직업지도 위탁부모, 변호사, 의사, 가정재판소 조사관, 지역의 경찰, 부동산 중개업자, 아동상담소의 사회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보건부, 직업안정소, 모자시설 등의 많은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모든 자립원조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고 있

다(今後目指すべき児童の社会的養護體制に関する構想検討會).

또한 청소년의 자조집단의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중요하다. 즉 사회적 양호 하에 양육된 당사자들끼리 교류하고 일과 인간관계의 고민 등을 이야기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자조 집단을 만드는 것도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동경도는 시설과 양육가정의 단체와 연계하여, 시설 등을 퇴소한 청소년의 자조클럽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2005).

3) 문제점 및 시사점

아동양호시설 입소아동의 대다수는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일찍부터 사회적 자립을 강요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생활 기능을 익히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다. 이들 청소년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아 이들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고 안정된 상태가 될 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들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아동의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아동들의 집단의 특성(연령구성, 집단의 규모, 입소이유 등)에 따른 다양한 원조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모색을 통한 자립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자립은 결코 생활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정신적인 면의 자립은 장기간에 걸쳐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생활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 아동의 정신적인 면에서의 자립을 촉진하는 시설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98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양호시설의 목적에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며 아동양호시설의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자립지원의 문제점

이전에 비해 자립지원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양호시설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보호의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신뢰관계(혹은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인 안정이 자립지원에 필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그 성격상 집단생활이며, 교대제근무이기 때문에 일일생활 중에 복수의 직원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직원의 개별적이고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개개인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불충분하기 쉽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 2005).

또한 현재 자립지원체제에서는 일상생활에 관한 생활기능과 지식의 구체화는 교육에 의해 쉽게 습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립은 결코 생활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 보다는 심리적 상처회복을 위한 케어가 중요하다.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자립하는 것은 완전한 자립이라 할 수 없다.

자립의 기본은 「아동과 직원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의 증가」, 「아동의 존재를 무조건 수용하는 직원의 마음자세」, 「직원에 대한 아동의 의존체험」 등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의욕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실현을 위한 케어가 자립지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상생활을 최저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직원이 많으며, 청소년의 심리적 자립까지 포함하는 원조는 힘들다.

(2) 자립지원계획의 문제점

현재 자립지원계획은 아동상담소와 협의 하에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어 있다. 시설입소조치를 취한 아동들도 아동상담소는 필요에 따라 시설을 방문하여 아동과 면접을 하고 합동으로 처우 검토회를 갖는 등 시

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40-141). 이렇게 후생노동성이 아동상담소와 시설의 업무와 연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관점이다.

즉, 아동양호시설 등에서의 자립지원계획을 책정할 때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를 취하는 시점에서 아동의 처우지침 등의 참고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처우의 선택 및 이유, 보호자·아동 등의 의향,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 단기적 과제와 원조방법, 중장기적 과제와 원조방법, 차기 검증시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아동상담소에서는 일시보호를 한 후 조치회의를 거쳐 결정된 시설에는 결정사항을 근거하여 아동과 부모, 사회적 상황 등의 기록이 보내졌다. 이번 개정으로는 보호자와 아동 등의 의향과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 단기·중장기과제와 원조방법, 차기검증시기의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처우지침을 받아 자립지원계획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상담소의 전문성(채용인사 및 연수), 현실의 업무량으로 볼 때 각각의 시설의 처우실태를 파악한 후에 입소시설에 대한 아동상담소의 처우지침이 작성되게 될지 크게 의문이 된다. 후생노동성은 현재의 아동상담소에 대해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새로운 개혁을 아동복지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대담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淺倉惠一外, 2004 : 133-134).

(3) 리빙케어와 사후케어의 문제점

청소년 퇴소시 권리보장의 중심이 되는 것이 리빙케어(Leaving Care)이다. 아동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케어는 실제로 퇴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수정보완을

통한 리빙케어가 필요하다(山縣文治, 2005 : 49). 특히 한명 한명의 청소년의 사회생활능력에 맞추어 충실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 입소기간 중에는 자립지원에 역점을 두지만 자립의 결과는 시설을 퇴소한 이후가 된다. 또한 시설에서의 직원배치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퇴소청소년에 대한 추적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여유가 없다. 퇴소청소년 측으로부터 무엇인가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개인적 노력에 맡긴 지원을 항상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립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케어의 체도를 확립하여 퇴소 후 퇴소청소년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 사회자원의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長谷川眞人, 2007: 215-216).

(4) 자립원조힘의 문제점

자립원조힘은 중학교 졸업으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곳으로 또한 생활기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자립원조힘은 국가로부터 원조가 적어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운영에 대한 보조는 도도부현에 따라 달라 지방자치체에 의해 원조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자립원조힘은 매년 정부예산으로 금액이 정해진 보조금사업이며, 재정기반이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퇴소청소년들의 안정된 자립생활원조사업 으로서는 문제가 심각하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힘의 이용기간은 약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절한 지원을 위한 시설과 힘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5) 시사점

지금까지의 일본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주요 자립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 취업 등을 통하여 사회로 진출한 청소년의 대다수는 가족의 원조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들이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중학졸업의 15세의 연령까지 혼자서 살아갈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청소년들에게 풍요로운 생활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20세까지 시설에서 확고하게 자립에 대한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에 고등학교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고교생활 중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체험과 학습을 풍부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생활력을 함양하는 원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력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조치를 계속보장하고, 시설 내 혹은 시설 밖에서 동일한 원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의 결정 및 시설퇴소에 즈음해서는 청소년의 희망 및 의견과 선택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원조인 사후케어(after care)를 하는 것을 시설의 기본적 의무로 하여, 시설의 생활(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생활(개인생활)에서 일어날 여러 고민과 문제(고아·대인관계·식사·경제 등)를 개별로 상담·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설 퇴소 후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계획」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강화이다. 시설은 입소할 때 아동상담소가 작성한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개개 청소년의 자립지원계획을 사례회의 등의 협의하에 작성하지만 시설내의 회의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아동복지사와 의견을 교환하여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원조방법을 사례회의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淺倉惠一外, 2004 : 41).

또한 퇴소단계 회의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조치의 계속, 퇴소 후의 사후케어, 재조치 등의 원조방법에 대해서도 준비가 가능하도록 입소 때부터 「접근체제」를 만들고 상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淺倉惠一外, 2004 : 41-42).

자립원조홈에는 시설퇴소자는 물론 도내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 힘들 때나 상담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식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시설에도 안식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설을 퇴소하고 사회생활 하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된다면 계속해서 퇴소청소년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나아가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민생·아동위원,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아동이 입소 초기단계부터 퇴소후의 사회생활을 내다본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아동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구축한 후에 시설퇴소 후에도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東京都兒童福祉審議會,2005).

또한 청소년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관계자와의 협력과 자립원조홈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청소년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직원의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호시설직원에 의한 원조내용은 생활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활동을 보다 널리 공유하기 위한 원조활동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이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생활지원을 위한 대부금을 빌리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학업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시설장이 보증인이 될 때 연대책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도 안정되는 경향을 볼 때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학습지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퇴소후 직업을 잃은 청소년에 대한 재조치, 취업하여도 자립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하여 조치연장을 하여 자립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퇴소 후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열심히 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끝으로 퇴소청소년의 조직을 만들어 동료상담과 같은 당사자 간 원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 이 경우 퇴소청소년의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므로 직원·시설장의 전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설로서는 퇴소청소년 결연기금 등 상담원조의 프로그램을 퇴소청소년 조직과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소식지」의 발간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하고 생일날에는 생일카드를 보내는 등의 세심한 배려는 한명 한명의 용기를 북돋운다. 더욱이 우편물에 대해서는 시설명이 적힌 인쇄물은 피해, 개인명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직원을 원조시스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퇴소한 청소년들에게는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나 시설장 보다는 퇴직직원에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할 때 퇴직직원의 원조를 사후케어의 시스템 가운데 포함시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순차적으로 퇴직하여 가는 직원의 수는 상당히 많으므로 시설은 가능한 퇴직직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鈴木 力, 2005: 145).

또한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지원과 시설의 적극적인 노력과 퇴소청소년 자립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2. 미국

1) 정책방향

(1) 미국 아동복지의 특징과 시설보호의 위상

미국의 경우 18세기 중반부터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 양육시설이나 고아원의 수는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빈민가에서 노숙하거나 구빈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New York주는 1875년에 아동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3세에서 16세까지는 구빈원에 감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법(The Children's Act of 1875)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19세기 초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1909년 제1차 아동을 위한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는 아동에 대한 국가적,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아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 외에는 가정에서 떠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아동의 가정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미국에서는 가정위탁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Kadushin, 1974).

미국 아동복지의 철학은 아동입양과 가족안전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에 따른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이며, 가족보존의 경향이 강하여 개인보다 가족을 개입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족 안에서 각 구성원들의 욕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부모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동은 가능하면 친인척이 위탁부모가 되어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탁된 아동은 18개월에서 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으로 복귀되거나 영구가정으로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아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경향은 시설보호에 대한 양가감정을 낳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및 행동문제 등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 또는 시설형태의 아동보호(group and institutional child care)를 받지 않고 영구적 가정을 발견할 때까지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탁가정에 의뢰하여 임시적으로 아동을 양육보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아동 중에서 지체부자유 등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지체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정서적으로

심한 외상을 경험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동, 혹은 재활훈련이 필요한 비행청소년들만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계획적인 치료 및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이 임시적이며 치료나 훈련이 끝나면 가정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상시 위탁가정을 물색하는 과정 중의 단기간 동안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하는 일시보호시설은 있으나, 아동에게 치료가 요구되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보호시설에 거주시키지 않고 반드시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보호를 의뢰한다. 이것은 건전한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성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보호와 접촉을 갖는 것이 아동복지에 필수적인 요소라 믿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집단시설보호는 아동에게 치료적 환경으로 고안된 생활시설에서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을 만큼(CWLA, 1982) 원가정이나 대리가정에서 원조하는 것이 적합지 않은 아동에게 치료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수단으로서 시설보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시설보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아동복지생활시설 서비스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퇴소청소년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미국 시설보호의 역사

시설 내 집단보호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대리보호서비스 중 하나이다. 다른 형태의 보호가 더 적절한 아동들에게도 지역사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대규모 아동복지생활시설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아동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가 되어왔다. 따라서 초기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들은 소규모화되거나 소속사형태(cottage-style institution)

를 취하게 되었고, 입소 대상 역시 친가정이나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동복지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동의 집단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집단생활보호는 계속 되어오고 있으며 분명히 어떤 아동들에게는 가정보다 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입소하는 아동들을 특수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보호하고 있는 Girls and Boys Town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잘 고안된 생활시설보호는 이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uefner et al, 2004; Larzelere et al., 2004). 생활시설환경도 잘 계획해서 활용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나 비인간적인 시설이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과 비인간적인 시설 사이에는 가정과 같은 시설이 존재하며, 위탁가정에서 조차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잘 고안된 높은 수준의 생활시설 서비스가 더 효과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Whittaker, 2000).

미국의 아동복지생활시설 서비스는 1729년 가톨릭의 우르술라 수녀회에서 New Orleans에 설립된 고아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고아원은 Natchez의 인디언 대량학살로 인한 고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고아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아동을 성인과 분리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에 기초하여 1826년 New York에 최초의 청소년비행 교정시설인 ‘House of Refuge’가 설립되었고 이후 다른 도시에도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아동을 보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숙사 형태의 시설(cottage-style institution)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동복지생활시설들이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보호하

는 것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시설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장애아동들이나 비행아동들이 생활시설 내에서 거주하면서 학대와 방임을 받는 사건들이 보고되면서 정신보건, 청소년교정, 아동복지, 정신지체 분야 등에서 탈시설화 노력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집단생활시설 서비스와 관련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을 정리하면 <표 III-5>과 같다.

<표 III-5> 아동집단생활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

연 도	사 건
1729년	New Orleans의 우르술라 수녀회에서 Natchez의 인디언 대학살로 인한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최초의 고아원 설립.
1826년	New York에 최초의 청소년비행 교정시설인 'House of Refuge'가 설치되었고 유사한 기관이 1826년에 Boston에, 1928년에 Philadelphia에 설립.
1847년	Massachusetts주의 Westborough에 독일의 농업소년원을 모델로 하여 소년들을 위한 최초의 주립 교정학교인 'Lyman School'이 1847년에 설립. 하지만 이 'Lyman School'은 1970년대 초에 탈시설화로 유명한 'Massachusetts 실험'으로 폐쇄한 첫번째 주립 교정학교였음.
1855년	New York 아동구호협회(Children's Aid Society)는 1855년 최초로 고아들을 서부로 이주 보냄. Charles Loring Brace 등은 이 조치를 도시와 집단시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들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러한 조치로 인한 수용아동수 감소로 가장 타격을 받은 New York시에 있는 Irish Catholic Community)은 이 조치가 아동을 그들의 고유한 문화, 가족, 종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함.
19세기 후반	대규모시설이 보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써 소속사 형태의 시설들로 전환되기 시작. Chicago의 Healy의 활동으로 유래된 정신건강운동의 시작으로 아동기 장애의 분류, 진단과 치료 등이 강조됨.
1930년 ~ 1950년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동시설들이 단순 아동보호로부터 정서장애아동의 집단생활치료시설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
1960년대 이후	최근 장애아동들이나 비행아동들에 대한 집단생활시설에서의 학대와 방임이 알려지게 되면서 정신보건, 청소년교정, 아동복지, 정신지체 분야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탈시설화의 노력으로 이어짐

연 도	사 건
1980년	입양원조와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은 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ning)과 배치 예방(placement prevention)을 증진시키기 위한 절차상의 요구조건과 자원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아동복지 개혁입법임. 이 법에서는 대리보호의 대상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아동으로 제한하였고 일단 대리보호에 배치된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들과 친부모들과의 관계 유지를 의무화하였음.
1997년	입양인센티브 프로그램(The Adoption Incentive Program)은 아동입양과 가족 안전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의 일부로서 아동의 영구적 배치를 위해 1997년에 제정됨. 미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기 위해 입양촉진법(The Adoption Promotion Act)을 2003년에 통과시켰음. 이 프로그램은 각 주로 하여금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의 입양과 특별한 욕구를 가진 위탁아동의 입양을 돕기 위해서 고안됨. 이 법은 또한 각 주가 특별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입양의 목표치를 재조정하였음.

* 출처: Pecora et al., 2000; Pecora, 2005를 재구성

집단시설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1909년 제1차 백악관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9년 제1차 백악관회의의 선언에 따라 1920년대에는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의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시설보호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가정내 보호 즉, 가정위탁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1930년대부터 많은 아동복지생활시설들이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시설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집단보호환경이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서 선호되었다. 집단보호는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문제 혹은 기타 가정위탁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집단보호는 다양한 치료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되었다(Whittaker, 2000)

아동에게 양육보호를 제공해오던 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한 가족을 보존하여 아동을 대리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 가정 밖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들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또한

모든 아동들은 가정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이 가장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근접하며, 아동이 가족 내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해 확산된 위탁가정과 입양서비스의 발달 때문이다. 또한 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이 강조되면서 이전에 입양이 잘 되지 않던 아동청소년(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청소년)의 입양도 강조되고 있어서 시설보호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아동에 대한 집단생활의 독특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수의 양질의 위탁가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위탁가정의 충분치 못한 경험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잦은 변동과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자극되어 왔다. 이는 또한 위탁부모 선정기술의 부족, 배치 후에 계속되는 지도감독의 부실 등 때문에 위탁양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3) 친가정의 보호아동 및 시설의 현황

미국에서 시설과 관련된 변화는 크게 소규모화, 전환시설화, 탈시설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원이 25명 이상인 공립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연방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시설의 소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환시설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수용 시설은 감소하는 대신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 정서장애아 시설, 청소년교정시설 등의 시설이 늘어난 현상을 말한다(김응석 외, 1995). 마지막으로 탈시설화를 통해 가능한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시설보호와 같은 집단형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요보호아동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친인척위탁이나 일반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Stagner et al., 1990; 배태순, 1999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12%의 아동을 보호하는 집단보호시

설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아동보호예산의 39.4%를 차지한다. 집단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들로서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아동 1명을 돌보는 전문가의 비율이 0.85명에서 1.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시설보호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값싸고 편리한 보호방식이라기보다는 소규모화 및 전환시설화를 통해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문적인 필요성에 대응하는 고급의 보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변화, 즉, 탈시설화로 대변되는 시설보호의 지양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역사회를 통한 요보호아동의 보호가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여 지역사회보호체도의 정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탈시설화의 과정 중에 수용시설 생활아동의 일부가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인으로 전락되거나 또는 아동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타 시설에 강제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은 탈시설화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탈시설화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탈시설화를 진행하는 과정상의 문제로서 지역사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가족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약 20%가 위탁가정보호가 아닌 집단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국적인 조사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 대략 500,000명의 아동이 친가정외에서 보호되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위탁가정에 배치되었고, 25% 미만의 아동들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집단생활시설에 배치되었다. 이 비율은 1970년대 이후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이나 교정기관들에서 배치된 경우는 다소 과소 보고되어 파악된 것이다. 따라서 집단생활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포괄적이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동복지서비스 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 중의 하

나라고 지적되고 있다(Pecora et al., 2000).

친가정외보호에 대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친가정외보호 아동의 수는 198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되었다. 1985년에 대략 276,000명의 아동이 친가정외 보호 되고 있었으며, 1993년에는 약 449,000명으로 증가하였다(Braziel, 1996). 2001년에는 거의 542,000명이 친가정외보호 되고 있었으며, 이중 48% 정도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양육이었고, 18%가 공동생활가정과 시설을 포함하는 아동복지생활시설 아동이었다(U.S. DHHS, 2002b). 친가정외보호 되는 아동의 58%가 유색인 아동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인구 중 36%가 유색인 아동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02; U.S. DHHS, 2002b; CWLA, 2004, 재인용).

이들 자료에 따르면, 친가정외보호 되는 아동의 수는 1980년대 이후 급적으로 증가되어 1985년과 비교하면 2001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친가정외보호 된 아동 중 생활시설에 배치되는 아동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친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 환경에 적합한 대부분의 아동은 가정위탁 되고 있으며, 친가정외보호 되고 있는 아동 중 1990년대 중반에는 25%의 아동이, 2001년에는 18% 정도의 아동만이 공동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아동들이 생활 시설에 다양한 이유로 입소하게 되지만, 대다수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들 아동들은 여러 차례의 친가정외 배치를 경험하였고,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행동상의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활시설에 배치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학대, 방임, 행동상의 문제, 공격성, 임신, 가족위기, 약물남용 등이다. 또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D), 혹은 주의력결핍과잉행

동장애(ADHD), 우울증, 품행장애, 식욕부진, 폭식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이유로 배치되기도 한다(www.cwla.org).

시설보호는 위탁보호와 자주 비교되는데 매우 어린 아동에게는 시설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위탁보호에 비해서 시설보호 된 매우 어린 아동의 경우 보호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입양의 가능성도 낮으며 시설보호가 지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rrick, Barth, Needell, & Jonson-Reid, 1997). 구체적으로 위탁아동(1-6세)의 경우 16%가 입양된 반면 시설아동(1-6세)은 6%가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론 주(州)마다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시설보호의 입소기간은 위탁보호보다 17%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Wulczyn, Brunner, & Goerge, 1999). 또한 가족과의 재결합율도 위탁보호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보호에서 집으로 돌아간 아동은 위탁보호에서 재결합한 아동에 비해 재입소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단보호 되는 아동이 더 다루기 힘든 아동이며, 연령상으로도 더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소당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나 특정 치료방법의 사용여부가 퇴소 후 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라리 퇴소 후 보호의 질이 청소년의 이후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관련성이 높았다. 퇴소 후 지역사회 내 보호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설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의 접촉과 가족의 관여가 퇴소 후 성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적인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 있는 청소년은 그런 지지망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치료의 긍정적인 결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지적인 퇴소 후 환경, 비기질적이거나 비정신병적인 증상, 건강한 가족기능 등이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 반면 연령, 성별, 지능, 입소기간 등은 긍정적인 결과와 약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y, 1991).

(4)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유형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체에 의해서 분류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나 기능에 의해서 분류될 수도 있다. 즉,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복지부·법무부·정신보건국 등 주무 행정기관에 의해서 분류되기도 한다. 아동복지생활시설의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형태는 시설기반 생활치료센터(campus-based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와 지역사회기반 공동생활가정(community-based group homes)이다(Brasiel, 1996; Pecora et al., 2000, 재인용). 주(州)나 지자체의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보건, 청소년교정, 아동복지, 발달장애 등 각각이나 두 개 이상의 분류항목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감독기관에 의해 집단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상당한 중복이 발생된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시설들이 생활시설로 분류되는데 그 공통점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하루 24시간, 집단보호한다는 점이다(Pecora et al., 2000). 아동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 속에서 상담, 교육, 여가, 보건, 영양, 일상생활경험, 독립생활기술, 가족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혼합해서 받게 된다(Pecora et al., 2000).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생활시설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아동복지생활시설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구조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 동안에만, 필요한 내용만큼만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들은 가정환경보다는 생활시설 환경이 더 적합한 경우로서 치료적 환경(therapeutic milieu)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 Whittaker(1997)에 따르면, 치료적 환경이란 매일의 일상생활이 기본 생활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형식으로 활용되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환경을 말한다. 생활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생활환경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수단이고 내용이 된다. 이곳에서 제

공하는 내용은 보다 개별화된 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규칙이 있는 구조, 반복되는 일상, 놀이와 활동 등을 포함한다. 생활치료시설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발달적-교육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기술의 결합을 발견함과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회기술역량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예로는 Hobbs에 의해 개발된 Project Re-Ed(정서장애 아동의 재교육 프로젝트), Trieschman에 의해서 개발된 Walker School(시설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위한 초등학교) 등이 있다.

CWLA(2004)에서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원/지도감독 아파트, 공동생활가정, 생활치료시설, 집중생활치료시설, 응급쉼터보호, 단기/진단보호, 구급시설, 안전치료시설 등이 있다. 유형별 아동복지생활시설 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통원 외, 2005에서 재인용).

① 직원/지도감독 아파트(Supervised/staffed apartments)

4명 이하의 아동이 대규모 단지의 작은 생활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은 자립심을 함양하고 취업, 교육, 보건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함께 생활하는 직원이 상시 거주할 수도 있고, 교대로 근무할 수도 있으며 나이와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지도감독만 할 수도 있다.

* 정의 : 아동의 자립심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발달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로서 일상적인 소규모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다.

* 목적 :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들을 생활 속에서 익히는 것이다.

② 공동생활가정(Group homes)

4-12명의 아동이 분리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교육, 보건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외관은 지역사회와 다른 가정과 유사하고, 내부는 대가족과 유사하다. 직업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 정의 : 이는 지역사회와 완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정상적이고 발달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다.
- * 목적 : 가정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지만, 집중적인 생활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된다. 가정위탁양육이나 직원/지도감독 아파트 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도감독 없이 일부 활동에 주어지는 자유를 관리할 수 있는 아동에게 적합하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족환경이나 자립생활로 전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응급쉼터나 일시보호(respite) 서비스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③ 생활치료시설(Residential treatment)

포괄적 범위의 치료적, 교육적, 지지적 서비스와 레크레이션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다학제적인 팀에 의해서 제공되는 환경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고, 시설 내에서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④ 집중생활치료시설(Intensive residential treatment)

생활치료시설 보다 집중적으로 강도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은 빈도로 제공한다. 직원과 구조, 환경이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동에게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

- * 정의 : 포괄적 범위의 치료적, 교육적, 지지적 서비스와 레크레이션 서비스 등을 전문적이고 다학제적인 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생활치료시설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사정과 서비스 계획에 기초하여 계획된 개입을 한다. 또한 이는 시설 내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매우 구조화되고 지도감독이 되는 치료적

환경이다. 이는 생활치료시설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고, 빈도도 더 높으며, 지도감독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 * 목적 : 집중생활치료시설은 심각한 행동적·사회적·정서적 문제나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등과 같이 고도로 구조화된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행동적·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⑤ 응급쉼터보호(Emergency shelter care)

안전과 의식주 제공,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 제공되는 응급 서비스이다. 입소는 24시간 가능하며, 주(州)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스스로 입소할 수 있다. 서비스들은 쉼터 내에서 제공되기도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 * 정의 : 응급쉼터보호는 아동의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야간쉼터나 단기쉼터, 위기개입상담, 안정화, 배치 및 퇴소 후 계획,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목적 : 응급쉼터보호는 가정이나 위탁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동 안전을 위해 필수적일 때, 또 아동이 노숙상태이거나 가출상태일 때 등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아동자신이 입소의뢰를 하기도 한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응급 의료보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응급실이나 진료소 등 공식 의료시설에 의뢰하고, 응급 정신보건이나 알코올 및 기타 약물남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다른 서비스에도 의뢰한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동 스스로의 자해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한다.

⑥ 단기/진단보호(Short-term/diagnostic care)

이는 응급쉼터보호보다 더 강도 있는 서비스이다. 입소는 계획되거나 응급으로 가능하다. 시간의 제약 하에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대해서 사정/진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 * 정의 : 아동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단기 사정, 집중적인 가족 사정,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기개입, 안정화, 진단적 사정과 배치 혹은 퇴소이후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 * 목적 :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이 격리됨으로써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제공되지만, 장기는 아니고, 아동이 가정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동안에는 효과적으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진단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적 사정을 위해 제공된다. 대체로 기간은 매우 다양한데, 수 일에서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⑦ 구금시설(Detention)

법무부에서 양육권이 있는 아동의 단기 보호와 지도감독을 하는 시설이다. 구금시설은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제한적인 구조를 갖는다. 제공되거나 가능한 서비스는 응급쉼터와 유사하다.

- * 정의 : 법원의 판결 등을 기다리는 동안에 소년법원의 보호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일시적인 주거를 제공하면서 사정하는 것이다.
- * 목적 : 응급쉼터보호와 마찬가지로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응급 의료보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응급실이나 진료소 등 공식의료시설에 의뢰하고, 응급 정신보건이나 알코올 및 기타 약물남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다른 서비스에도 의뢰한다. 지역사회나 쉼터 내의 타인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동자신의 자해충동으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30일 이상 구금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의료 및 정신보건 사정을 한다.

⑧ 안전치료시설(Secure treatment)

문에는 자물쇠, 창문에는 방범창 등 제한적인 구조를 갖춘 안전한 시설 내에서 생활치료시설 서비스나 집중생활치료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모든 서비스는 시설 내에서 제공된다. 안전치료시설에서는 자해, 가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에게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과 구조, 환경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정의 : 안전치료시설은 각 가구가 완전히 독립된 형식인 생활치료 시설로써 아동을 아동자신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매우 구조화되어 있으며 고도로 제한적인 환경이다.
- * 목적 : 이 프로그램은 아동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가출 등의 위험이 있는 아동에게 제공된다.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최상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고가 끝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안전치료시설 보호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된다.

2)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정위탁 중심이며 시설 내에서는 일시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퇴소청소년 문제는 시설에서 일어나기보다 가정위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위탁보호체계에 놓여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그 이유는 가정위탁의 본래 취지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의 일시적인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주정부의 후견하에 위탁보호체계에 맡겨져 있는 동안 수년간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많은 아동이 원부모에게 돌아가더라도 1/3정도는 체계로 재입소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Craig & Herbert, 1997). 더욱 심각한 사실은 매년 2만여 명의 위탁아동이 18세가 되면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가 없으며 성인기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위탁보호체계에서 퇴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 기술,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보호체계를 나오게 되면 결국 노숙인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종종 폭력피해나 '생존'을 위한 성관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들의 취업이나 경제적 상황이 빈곤선상에 살고 있는 성인들보다 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oots & Geen, 1999). 따라서 미국에서 퇴소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 가정으로 재통합시키거나 입양을 시키는 방식을 취하거나 가정위탁청소년의 퇴소후 적응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정위탁의 경우도 가능한 영구적인 계획을 통해 가족재통합이나 입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퇴소후 적응 문제는 일반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1) 가정통합

시설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동을 지역사회에서 그들 고유의 가정, 입양, 위탁가정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가정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시설보호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아동이 어린 시절 내내 계속 시설에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합한 계획이 없거나 부모와의 개별면접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보호를 결정하거나 시설보호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가정위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탁아동을 가능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입양 등의 방식으로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퇴소청소년의 문제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① 입양원조와 아동복지법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1970년대까지도 연방정부는 주정부로 하여금 입양이 가능한 아동들에

게 입양가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종종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또는 시설에 배치되거나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독립생활프로그램에 맡겨졌다. 하지만 이 법을 기초로 아동의 거주와 관련하여 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ning)을 요구하였는데 위탁가정 내의 각 사례에 대해 대리보호체계에 들어온 후 18개월 이내에 원부모와의 재결합 또는 입양에의 준비 등 영구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Craig & Herbert, 1997).

② 아동입양과 가족안전법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1980년 제정된 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의 한계를 인식하여 제정된 법으로 부모의 친권이 박탈된 후에도 위탁보호체계에서 지내고 있는 아동의 신속한 입양을 권하는 내용이다. 1990년대 중반에 위탁보호에 있는 아동수, 이러한 위탁아동을 보호하는데 지불되는 비용, 그리고 아동이 이러한 체계를 떠난 후에도 수년간 소요될 간접적인 사회비용 등으로 위탁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문제에 대처하고자 아동이 일시적으로 집 밖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가능한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법은 최근까지도 위탁보호와 입양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 자립지원

①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of 1980)

이 법의 특징은 청소년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령하에서 대부분의 가출청소년 쉼터들이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를 수립하고 이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술습득, 직업훈련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적이고 귀가목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조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는 귀가가 불가능한 16-21세의 청소년에게 기관실무자가 지도, 감독하는 안전한 거주지인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18개월까지 머물면서 기본적인 생활기술은 물론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자립능력을 향상하여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회서비스 기관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것 또는 범죄로 인해 사법체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② 위탁보호 자립지원법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이 법은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프로그램을 승인한 법이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위의 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기타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년에 5,000달러까지 대학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이 위탁보호체계에 있는 동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만 이들이 18세 이후 독립으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고 의료보호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9년에 위탁보호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을 신설하여 위탁보호체계를 떠나더라도 건강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연속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적어도

21세까지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탁보호체계를 떠나는 아동에게 더 나은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고 상담 및 다른 서비스 등의 제공도 함께 명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위탁보호나 시설퇴소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자립준비사정과 사례계획서비스 등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이 법제화되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대학진학준비,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남용 예방훈련, 혼전 임신방지훈련, 예방적 보건활동, 후견인과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위탁가정을 떠난 청소년(18-21세)들에게도 방세와 식비를 낼 수 있도록 자립생활프로그램에 재정의 30%까지 쓰도록 하고 의료보호를 연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미국 각 지역의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오클라호마 지역의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The Oklahoma Independent Living Program)과 뉴욕주의 지역센터 활용예로서 미래세대센터(Next Generation Center)에 대해 살펴 보겠다.

가. 오클라호마 자립생활프로그램 (The Oklahoma Independent Living Program)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오클라호마 대학의 국립청소년서비스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for Youth Services)와 공동으로 오클라호마 자립생활프로그램(Oklahoma Independence Liv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okdhs.org>, 2007. 8. 15 인용).

이 프로그램은 오클라호마 지역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주정부차원의 다학제적 도움의 일환으로 미국 각 지역의 아동양육시설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오클라호마 독립생활프로그램은 10대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을 주된 목표로 한다.

- ㉠ 개인의 미래에 대한 초기 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강조하며
- ㉡ 개인의 내재된 강점을 개발하고
- ㉢ 정부차원의 양육(state custody)을 받는 16세에서 21세의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기 삶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 훈련된 현장전문가 혹은 주변 성인을 통해 다학제적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 ㉤ 10대중심의 자원과 지역사회파트너쉽을 개발하도록 함

오클라호마²⁴⁾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양육보호자립법(The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t Living Act)을 근간으로 한다. 이 연방법은 일정연령이 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가정외 양육을 받는 청소년이 자족적이고 성

24) 오클라호마 지역의 경우 양육보호를 받는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 등을 받아서 양육보호를 받게 되며 양육보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양육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모두 입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보호가 이루어진 이후 18-22개월동안 부모가 자녀를 가정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고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양육보호에 들어가는 과정은 철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며 이렇게 양육보호에 들어오는 아동의 대부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치료적 양육보호(therapeutic foster care)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양육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가고 싶은 양육보호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불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방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주정부법에 준용하여 세부지출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재정과 법률은 주별로 독립적이다. 시설 퇴소에 대비하여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립생활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주로 양육보호시설의 부모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된다. 대부분의 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이 생활이 이루어지며 시설의 부모가 아동들에 대한 훈육,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정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양육부모와 사적인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인 성인기생활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클라호마 인적서비스부(Oklahoma Department of Human Service: OKDHS)에 의해 관리되며, 교육, 직업, 직업계획(career plann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을 떠난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서비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현재 OKDHS의 양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친족양육보호(tribal custody) 또는 가정외(out of home placement)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16에서 21세사이의 청소년
- ㉡ 현재 OKDHS의 양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친족양육보호(tribal custody) 또는 가정외(out of home placement)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16에서 21세사이의 청소년 중 양육보호를 받은 기간이 9개월을 경과한 청소년
- ㉢ 18세가 경과했다라도 “18세이상 자발적 양육(voluntary care after 18)” 프로그램에 남기로 스스로 결정한 OKDHS의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등
- ㉣ OJA 양육이나 가족양육가정(family foster homes), 혹은 전문화된 지역사회가정(specialized community homes)에 있는 16세에서 19세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육보호하에 있거나 자발적 서비스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의뢰(referral)는 아동복지사나 친족지원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18세가 되어서 양육보호를 떠난 청소년 중 21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국립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의 직통전화 1-800-397-2945로 전화만 하면 바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목록은 다음과 같다.

- ㉠ 일상생활기술 사정(Life Skills Assessment) - 기본적인 생활기

술에 적절한 기능수행정도의 수준을 사정. 이러한 사정은 모든 적용가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 개별지도(Tutoring) -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가능하다.
- ㉡ 일상생활기술훈련(Life Skills Training) - 다음영역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 개인적, 인간관계적 기술(Personal and Interpersonal Skills)
 - ▷ 직업기술(직업준비, 직업탐색, 직업유지)
 - ▷ 금전관리
 - ▷ 주거 및 교통
 - ▷ 건강
 - ▷ 미래를 위한 계획
 - ▷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생활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가정 네트워크는 주정부의 인가를 통해 집중적인 독립생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생활로의 전이에 필요한 교육, 고용, 기술능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오클라호마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세부 서비스구성 내용은 연령별로 나뉘어져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15 1/2세 -16세
 - ▷ 보통수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확인
 - ▷ 청소년에게 IL프로그램 소개
 - ▷ 청소년의 교육적 욕구 사정과 OHLAP에 등록
 - ▷ 개인교사나 보충교육 가능한 보조자 만들기
- ㉣ 16 - 12 1/2 세
 - ▷ 배우게 될 생활 기술 사정
 - ▷ 청소년의 개별화된 자립 계획 개발
 - ▷ IL서비스에 청소년 등록
 - ▷ 지원금 지불 논의

- ▷ 생활기술 그룹 및 직업기술 서비스와 같은 청소년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확인
 - ▷ 청소년회의 참석
 - ▷ 청소년 개발 필요 기금 접근
 - ▷ IL세미나 참석
 - ▷ 퇴소 계획 짜는 것 확인
- ㉔ 16 1/2-17세
- ▷ 재검토와 개별화된 자립생활계획의 새로운 정보추가를 위해 청소년 만남
 - ▷ 기술향상과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지속
 - ▷ 청소년에게 "Future Near Me" 워크북 제공
 - ▷ 청소년 개발 필요 기금 접근
 - ▷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을 위한 멘토 요청
 - ▷ 퇴소 계획 재검토
- ㉕ 17 - 17 1/2세
- ▷ 재검토와 개별화된 자립생활계획의 새로운 정보추가를 위해 청소년 만남
 - ▷ 자발적 케어의 선택권에 대해 청소년과 논의. 청소년은 만약 고등학교나 GED를 마치지 않았다면 21세까지 케어를 받을 수 있다.
 - ▷ IL세미나 참석(16살까지 케어를 받았던 청소년들을 위한 2번째 세미나)
 - ▷ Lou Jartpence Schoaeship에 대한 청소년의 자격을 알아봄
 - ▷ 적절하다면 장학금 지원서 작성
 - ▷ 청소년 개발 필요 기금 접근
 - ▷ 교육과 Training Voucher Program(EVT) 논의
 - ▷ 퇴소 계획 재검토
- ㉖ 17 1/2 - 18세
- ▷ 케어를 벗어남에 있어 퇴소계획의 선택권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자립생활계획에 새로운 정보추가

- ▷ 퇴소 선택권 (교육서비스, 군대, 직장, 원가족으로 복귀가 속할 수 있음)
- ▷ 청소년 개발 필요 기금 접근
- ▷ 적절하다면, 청소년을 개별교육 제외 리스트에 넣을 것
- ▷ 청소년 퇴소 인터뷰, 퇴소 사정을 마치고,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 ▷ OKDHS와 함께하는 청소년 동창회 네트워크 연합 "Yes I Can"에 대한 논의
- ▷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논의

㊸ 18-21세

- ▷ 청소년이 만약 자발적인 장소에 있다면 서비스 받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 ▷ 개별교육 제외하고 Oklahoma Vocational schools, 전문대학, 대학들에 지원함
- ▷ 청소년은 계속 서비스를 받거나 IL서비스 지원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 OKDHS보호소에 있었고 16-18세 사이에 9개월 동안 가정 외에 배치되었다면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 ▷ 주거 지원은 18세의 퇴소케어를 받는 청소년에게 가능하다. 임시 자금 지원은 OKDHS보호소에 있었고 16-18세 사이에 9개월 동안 가정 외에 배치되었던 아동의 경우 가능하다.
- ▷ ETV 지원 완료
- ▷ 의료 지원 신청 등

나. 뉴욕시 지역센터활용의 예: 미래세대센터(Next Generation Center)

흑인, 히스패닉 빈곤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브롱스 지역에 위치한 미래세대센터(Next Generation Center, 이하 NGC)는 미국전역의 아동복지조직

인 아동원조위원회(The Children's Aid Society)의 하부조직으로 양육보호(foster care) 프로그램에서 일정연령이 되어 퇴소한 청소년들은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한다. 양육가정에 더 이상 살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독립으로의 전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http://www.childrensaidsociety.org/nextgen>, 2007. 8. 15인용).

NGC는 양육보호(foster care)를 끝낸 청소년들이 그들의 학업을 끝마치고, 직업을 구하고, 주택을 구함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헬스케어를 획득하고 중요한 생활기술을 익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교육전문가, 고용전문가,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지원팀들은 이러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기관은 성인기로 전이하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기관의 주된 사명은 브롱스지역의 14세에서부터 24세까지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지원(support)과 지도(guidance), 훈련(training)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NGC는 청소년리더십 및 생활기술 훈련(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training), 기술훈련(technology instruction), 직업준비 및 직업개발 서비스(job readiness & job development services), 교육 지도(educational guidance & tutoring), 법적 옹호(legal advocacy), 주택지원(housing assistance), 창조적이고 시각적인 예술에 관한 훈련(creative and visual art), 여가선용(recreation) 등을 실시한다. NGC의 멤버는 기관주변지역의 의료, 치과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시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방된다. 주간프로그램(day care center)은 매일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8세에서 24세까지의 학교를 중단했거나 일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간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집중적인 생활기술훈련과 직업준비를 위한 워크숍, 직업개발서비스, 그룹토의 등이

다. 참가자는 문제해결기술과 효과적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스태프들은 개인 상담시간 등을 통해 청소년과 1:1로 만날 수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은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14세에서 21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기술훈련, 직업준비워크숍, 그룹토의, 리더쉽훈련 등이 실시된다. 여름기간동안(6-8월)에는 25-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급인턴쉽/훈련프로그램인 여름학교(Summer Institute)를 운영하여 퇴소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3) 직업교육

미국은 그 동안 교육과 고용제도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청소년이 원활하게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인식하에 학교-직업이행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of 1994) 등 여러 법률 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체제 정비와 직업교육 내용의 질적 제고, 그리고 학교-기업 간 협동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함으로써 시설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높은 실업률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만, 당시 직업교육은 주로 저소득 청소년과 직업교육과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소 향상시키는 데 머물러 전반적인 직업교육의 체계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1990년대에는 정부가 고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을 위해 대규모 연방정부 입법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퍼킨스 직업·응용기술교육법(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ct)과 1994년 직업교육 및 인문교육의 국가 공통기준에 관한 틀을 제시한 2000년을 향한 교육법(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 그리고 학교-고용 진입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을 위

한 학교-직업이행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y Act) 등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의 보편화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영순·송연경, 2002).

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교육부이지만 최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여타 부서나 행정기관도 직업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이상일, 1998). 따라서 학교-직업이행기회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와 노동부가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기 위해 국가학교-직업이행사무소(National School-to-Work Office)를 별도로 설립하여 두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공통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일, 1998). 이 사무소는 현장 교육에서의 학교와 기업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장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선정하는 한편, 각 지역 직업교육협의체에 프로그램 정보 및 선진국 사례 제공뿐 아니라 자금 지원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기업체, 노동조합, 지역의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위해 설립된 직업교육협의체는 현장교육 직업교육과를 선정하고, 학생의 배치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규정을 만들며, 기업의 현장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슈퍼비전 및 평가를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보편화된 직업교육을 강조한 퍼킨스 직업·응용기술교육법과 학교-직업 이행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2년 전체 학생 중 인문계 고교생 43%, 직업계 고교생 12%, 종합 고교생 45%를 차지했던 비중이, 2000년 현재 전체 고등학교 중 인문계 고교 3%, 직업계 고교 3%, 특수목적 고교 4%, 종합고교 90%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종합학교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정영순·송연경, 2002). 학생들의 직업교육 선택은 학교 구조상 인문계 고등학교나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경우 직업교육을 위해 학교 체계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구조 자체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형으로 직업교육 선택이 자유롭고, 입학 후에도 학교 체계 내에서 다시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지녀 진로 선택의 유연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주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우선 학교에는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현장 교육시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훈련수당 보조(수당의 50%)와 세금 감면(연 20만 달러 한도 또는 기업 소득세의 10%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 학생, 기업 각각에 대해 인센티브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적인 정치구조를 지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아동복지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연방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자금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연방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아동복지가 이루어지는 주 및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반면, 성과가 좋지 않은 주 및 지역에는 지원 자금을 축소시키므로 연방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정부가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다(이상일, 1998).

미국의 직업교육 중 현장교육은 1994년 학교-직업이행기회법을 통해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강조하면서 실업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세팅 내에서 직업 현장 경험과 사회 수요에 맞는 노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화한 프로그램이다. 현장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프로그램당 실습 기간이 1년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론 중심의 현장실습을 대학 교과 과정을 연계하여 준학사(associate degree)를 주는 Tech-Prep 프로그램(Technical Preparation)과 현장실습 위주로 과정 이수 후 자격증이 부여되는 청소년도제프로그램>Youth Apprenticeship),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학교기반사업프로그램(School-Based Enterprise), 이론교육과 작업 현장의 실습을 병행하는 협동교육프로그램 (Cooperative Education), 수업 일수의 반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거나 학교 내에 현장 세팅을 마련하여 실습을 하는 직업아카데미프로그램(Career Academy), 이론교육과 작업현장의 실습을 병행하며 이수 후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교-직장도제 프로그램(School-to-Work Apprenticeship) 등이 있다. 이론교육과 실습시간의 비율, 자격증 부여, 실습장소,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학생들의 욕구와 여건에 맞게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정영순·송연경, 2002).

또한 미국은 현장 교육에서 학교-직업이행기회법에 근거해 학교와 현장에 실습 슈퍼바이저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바이저들은 학생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지도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지역의 직업교육협의체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게 현장교육의 지침을 전달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업에서 적절한 현장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시사점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려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립이 이들의 목표이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부모를 통한 사회화과정도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퇴소 후 엄청난 사회적, 행동적 그리고 교육적 결핍들을 극복해야 한다(Mech, 1994).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에 관계없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유형의 고위험 청소년집단이 되고 있다. 즉, 18세의 후기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과업을 갖게 되는데 그 전환기의 발달과업과 환경의 변화와 정서적·도구적 자원의 결핍은 퇴소청소년에게 다양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신혜령, 2004). 또한 시설 입소를 통해 원가정에서 시설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원가정과 관계가 중단되었듯이 퇴소를 통해 시설

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면서 또 한번 이전의 생활과 단절을 겪게 되며 보호의 연속성을 상실한다. 이로써 의존상태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는데 있어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 시설퇴소청소년의 적응을 원조하는 방안을 크게 가정통합, 자립지원, 직업교육,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시설퇴소청소년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원가정 재통합과 입양을 통한 영구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시설보호는 전통적으로 치료적 환경으로 고안된 생활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24시간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생활시설서비스의 목적은 친가정이나 위탁가정 등 가정환경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과 물리적인 안전을 제공하면서 아동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보호와 치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일시적으로만 보호하여 시설에서 퇴소하게 하기보다는 영구적인 가정에 재통합되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가정법원은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사례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그 동안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서비스 참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의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처럼 가정법원에서 심의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배치 형태를 결정하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적응이나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장기간 보호되기보다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동안 원가정에 통합되거나 입양되도록 가족보존서비스나 입양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친부·친모 등 연고자가 있는 시설 아동이 약 전체의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김통원 외, 2005). 그러나 친부모와의 규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의 책임을 더 강제하거나 부모책임의 회피가 심각한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모가 생존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재통합되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지지망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응 및 자립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신혜령, 2004). 불가피한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처음부터 부모가 직접 자녀를 시설로 위탁 계약하도록 하여 입소기간 동안에도 부모가 자녀양육에 참여,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가지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빨리 가정으로 복귀시키도록 아동·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사후적인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경우 위탁보호나 시설에서의 퇴소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개인별로 자립준비정도를 사정하고 사례계획서비스 등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이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세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생활프로그램이나 대학교육·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의 혜택도 21세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퇴소청소년들이 독립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설청소년들은 만 18세에 이르면 시설보호를 떠나야 하며 바로 지역사회 적응생활로 들어가야 하므로 입소기간 중이나 퇴소 후에도 자립, 독립심,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생활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전문가를 전담직원이나 순회직원으로 배치하고, 이 전문가에 의해 시설을 퇴소하기 이전부터 발달단계에 맞추어 자립준비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개별자립계획을 준비하고 연령별로 적절한 맞춤형 자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시설의 자발적인 힘으로 혹은 임의로 이루어지게 하기보다 법제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의 위탁청소년들을 위한 자립프로그램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교육, 취업, 사회적 지지망, 주택, 기술습득 등과 같은 영역들이 자립에 긍정적 의미가 있었으며 고졸이하의 낮은 학력과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취업 그리고 조기 임신과 출산 등이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Cook, 1994).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퇴소이전의 자립준비 교육을 통해 자립생활기술을 향상시키고 학력과 취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소전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은 퇴소 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퇴소 후의 사회적 지원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퇴소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퇴소후에도 주거, 취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18세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에게만 구분하여 자립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도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른 일반청소년들도 자립할 수 있다면 시설퇴소 청소년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전혀 자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업교육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학교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인문계와 실업계의 통합형 학교 체계를 통한 직업교육의 보편화를 이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직업 관련 구성요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원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결과로 현장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직업능력이 높아져 취업 시 유리해졌고 결국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tern, 1995). 미국은 1994년에 학교-직업이행기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취업에 효과를 보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교육체계와 교과과정의 변혁이 정부의 주도

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로 가능해졌고, 현장 교육을 위한 기업과 학교 간의 협력도 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인문계와 전문계(실업계)의 이분법적인 분리교육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교육 제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결정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에서 현장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현장 실습을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현장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철저히 하여 현장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업 모두에 슈퍼바이저(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를 두어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여 효과적인 현장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은 시설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의 기본조건이다.

시설보호청소년의 문제가 퇴소 후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져서 퇴소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무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예측이 되고 현실적으로 사회부적응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도 시설도, 담당공무원도, 일반국민도 애써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다.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퇴소청소년들이 사회복지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설들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조직, 대학, 기업, 민간재단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관 연계협력만이 청소년이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해 퇴소후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청소년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은 기본이며 이를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설퇴소청소년에게 좋은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청소년처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게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시설청소년이 가족으로 재통합되거나 입양되도록 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이행교육을 통해 일반 청소년이 18세에 자립할 수 있다면 시설퇴소청소년도 당연히 자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설청소년에게만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선별적인 서비스의 단점인 낙인감, 피해의식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상처에 더 예민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강화방안이 분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청소년의 자립강화방안과 통합되거나 연동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3. 프랑스²⁵⁾

1) 프랑스의 아동복지 정책

프랑스의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 장애인, 노인, 가족, 아동, 사회, 여성 평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연대 노동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아동들에 관한 업무와 정책은 ‘사회활동, 아동건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역할

2007년 3월5일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이 마련되어 다음과 같은 5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

- 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방대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에 관한 정보 수집, 평가 그리고 실천방안
- ③ 아동보호를 위한 재가복지
- ④ 아동과 성년이 된 청소년을 위한 복지방안
- ⑤ 아동보호 지방관할 관찰

25) 이 부분은 이은주(파리 9대학 박사과정)가 집필하였음

5가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알 수 있다. ①은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정책에 관련된 것이고 ③, ④는 요보호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서비스 ②, ⑤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책 못지않게 아동·청소년문제 예방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강화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요보호아동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수렴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으로 집약 되어 있다.

프랑스의 아동 복지의 담당 업무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연고자가 없는 아동은 물론 가정환경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보호가 요청되는 아동이나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위험에 빠질 여지가 많은 아동들의 보호 대책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문제 청소년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점검도 담당하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사전에 미리 보호하는 청소년 문제의 조기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가 약물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부모역할이 어렵고 양육을 담당 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들, 부모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약화되어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과 건강을 돌볼 수 없는 경우들을 포함하여 가정 문제로 인해 성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의 문제를 태아에서부터 시작, 즉 여성의 임신중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임신부 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들이 출산하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아동의 건강을 위주로 한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1989년 지방 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정책을 일괄성 있게 실시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으로 1997년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부 부서의 팀을 구성, 정부의 아동보호관찰 기구(L'observatoire

natal de l'enfance en danger)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각 지방의 아동보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의 주된 목적은 프랑스의 아동복지 정책이 전국적으로 고른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2004년 각 지방마다 지방 관찰관찰기구(L'observatoire departemental de la protection de l'enfance)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연결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역할

프랑스는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복지 재정이나 서비스의 실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단위의 아동복지정책은 지역마다 다르게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평균적으로 고른 정책이 되도록 관리 평가하고 있다.

1989년 7월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요보호아동들의 보호정책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1997년 이후 아동 보호정책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아동정책을 강화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 내에서도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단체와 협회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강한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 복지로 연결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3월에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더욱 강화한 개정법안이 마련 발표되어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① 2007년 개정법

2007년 3월에 개정된 아동보호법은 중앙정부 부서에만 있던 아동관찰부서(L'observatoire de la protection de l'enfance)를 각 지방마다(departements)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부서는 지방의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주된 역할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담당부서, 사법기관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 단체와 협회 등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주 역할자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이나 정책 마련이다. 중앙정부는

아동보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지방 정부의 아동관찰기구에 동질의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② 아동보호 지방관할 관찰부

(L'observatoire departementale de la protection de l'enfance)

- ▶ **임무와 운영:** 각 지방정부에 설치된 이 기구는 중앙정부의 아동보호 관찰 기구가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방정부의 이 기구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연결 체계를 갖추고 아동보호정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의 운영은 지방의회 위원장 책임 하에 아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들이 적어도 일 년에 2회 정책회의를 갖고 진행 중인 업무나 향후 필요한 정책 등을 의논 결정한다.
- ▶ **업무:** 이 기구는 다음의 세 가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렴하여 문제를 분석 평가하고 둘째, 평가에 따르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며 셋째, 관련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서비스와 시설에 관한 업무는 행정보호 (요보호 가정의 재정지원 교육지원 등)와 사법보호 (아동보호에 있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요보호아동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주변 환경인 가정, 학교, 그리고 아동의 건강 문제 등을 총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복지시설관계자 만이 아니라 지역행정전문가, 관련 연구단체 종사자, 관련 협회의 업무 담당자가 자료교환이나 정책조언 등을 수시로 교환하고 있다. 이 기구는 지방의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기술적인 두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정책업무로는 지방의 교육, 체육, 의료, 복지 창구, 사회복지 관련 대표자들로 구성된 팀이 아동 보호의 협의와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적인 업무는 아동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복지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 업무 담당자들은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동관련 통계 자료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전국적인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3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보고서 작성과 5년마다 UN 아동권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 지표와 자료 : 지방관할 관찰기구는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 ㉠ 각 지방의 특수한 배경과 상황
- ㉡ 요보호 아동의 실태
- ㉢ 아동보호 정책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수집과 중앙 정부의 정책과 각 대학을 포함한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수집한다.

수집되는 자료와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 지방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

- 인구학적 동태: 출생률, 유아 사망률, 21세 미만의 아동인구 구성 비율 등
- 사회 경제학적: 주거환경, 직업, 실업률, 결혼가정수 등
- 가정 동태 (가족 구조, 중요한 특성들)
- 아동보호를 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이미 마련된 정책

▶ 위협에 처해 있는 아동과 관련된 지표들

-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의 출처(전문가, 기관)
- 아동의 상황특성 (나이, 성별, 생활형편)
- 정보에 대한 업무 실행 기간 (평가기간, 결정기간)
- 결정기간

▶ 아동수용복지 시설의 가능범위

- 사회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용 가능범위
- 사법결정에 따라 필요한 수용이 가능한 시설범위
- 이미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수
- 지방관할 밖에서 수용 된 아동수

- 타지방 관할에서 위임 된 아동수
- 장애아, 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위임한 아동들의 수용 가능성

(3) 지원 실천을 위한 평가방법

정부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요보호 아동들의 보호범위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진행과정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료의 수집과 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복지 행정가와 정책자들의 긴밀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과의 연결체계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계자들의 직업 윤리에 의거한 지원서비스 실천에 대한 평가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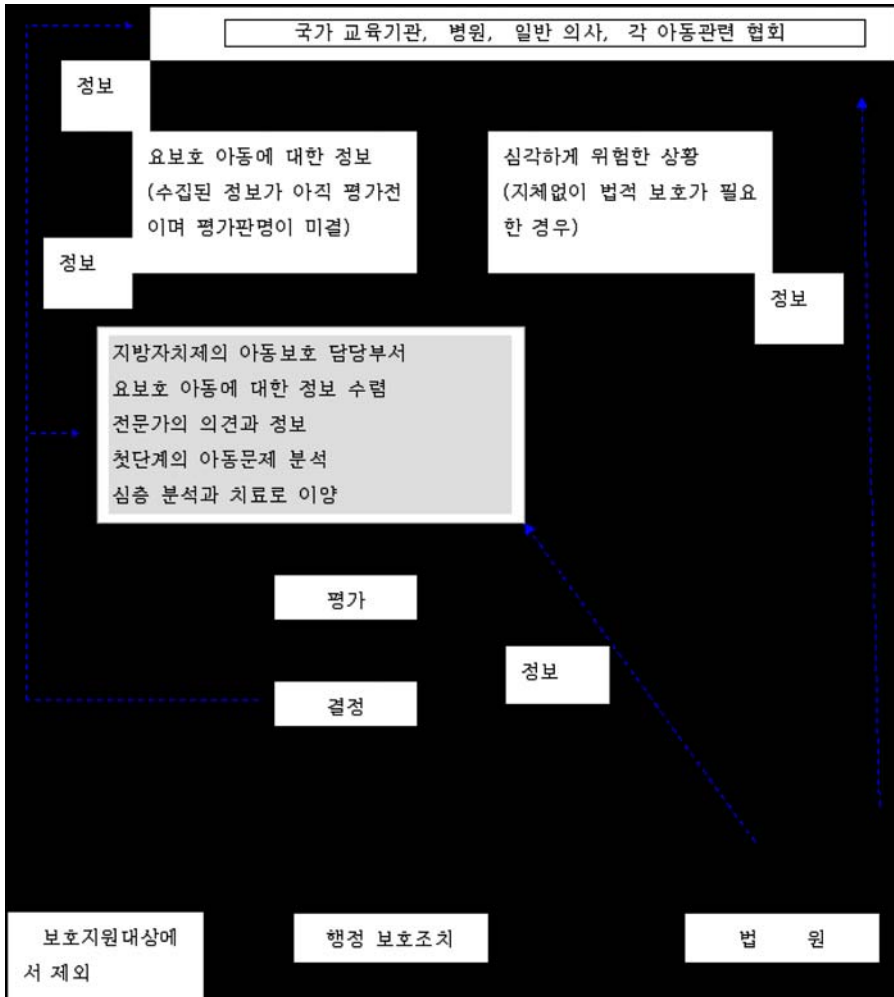
정보수집과 평가서비스는 각 지방 단위로 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책임 관장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아동복지서비스와 법적 문제들의 행정관으로서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등 각 분야의 아동문제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청 지휘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와도 긴밀히 연결 협력 한다.(예를 들어 국가의 아동 보호요청 긴급전화인 119로 접수된 아동보호문제는 곧 바로 각 지방으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관장 평가하게 된다.)

이들 전문가들이 입수하는 요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는 지방정부의 한 장소에 일관 접수되어 관련 전문가들 이상의 서비스를 결정하며 아동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있다.

2007년 개정법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들의 상황을 다각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각 기관들이 아동보호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판단하게 되어 이번 개정안에 이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일정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에 아동상황을 평가하고 행정을 주관하는 아동보호 담당자들은 서로 정보교환이 가능하지만 요보호아동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보조자, 저학년 아동교육자, 스포츠교사, 자원봉사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만 할 수 있고 정보교환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이 정

보고환은 아동가정의 개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상황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정보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지방단위의 복지정책과 행정은 2년 후 국회에서 2년 동안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아동복지 현황과 결산을 보고하여 추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참고하게 된다.



[그림 III-1]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보수집과 치료, 평가

위의 평가도식을 살펴보면 요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평가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아동관련 기관인 학교, 병원, 보육원 등에서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바로 법원에 보호관결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보호조치가 내려지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지방의회와 각 관련 기관으로 보내진다. 또 다른 하나는 아동관련 기관에서 보호가 요청되는 아동의 정보를 지방의회 아동담당 부서로 보내면 평가단에서 심사평가하여 보호지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의회와 관련 기관으로 전해진다.

2) 프랑스 아동복지의 주요 쟁점과 프로그램

프랑스 아동복지는 이미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문제 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 못지않게 아동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 문제는 아동의 출산 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 앞으로 태어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열악한 출산환경이나 위험에 처해있는 임신 여성들에 대한 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예방

프랑스는 아동, 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을 위해 1994년 아동주변의 위험감지나 긴급 상황에 대한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법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적 결정을 통해 아동을 예방 보호하고 있으며, 일선 교사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웃의 신고 등으로 예방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르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예방서비스는 크게 3개의 범주를 갖고 있다.

- ▶ 아동양육이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 이는 주로 가정의 부모가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이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대상은 어린 영아에서부터 성년이 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직접 주는 서비스와 더불어 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부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는 아동이 위협에 빠질 요소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모들을 교육하거나 아동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의사, 복지사, 각 구역의 사회복지과와 지역의 사회교육 시스템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화가 심한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 기관보호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로 부모들 보다는 이웃이나 주변에서 아동이 처한 상황을 보고 익명으로 신고해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 ▶ 출산 전후의 아동보호: 이는 유아사망률을 줄이고 임신 여성을 보호하는 목적과 더불어 가정을 구성하기 어려운 미성년 청소년의 임신이나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청소년의 경우, 여성에 대한 보호는 물론, 태어날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신모의 출산 전후의 보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는 주로 아동의 신체적인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임산부가 이미 자녀가 있을 경우 3세 미만의 자녀는 시설에 동반 보호될 수 있으며 3세 후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아동들의 의료사회적 예방: 이는 특히 6세 미만의 아동들의 보건 건강에 관한 보호대책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됨과 동시에 곧 전문의의 진료로 연결이 되며 이러한 이상 발견은 보육시설의 건강 검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6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는 학교 내 건강검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검진은 매해 필요한 예방 접종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아동을 검진한 의사와 학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의해 신체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들이 정기적인 검진 받아야 할 시기를 정해 놓고 있어 출생 전 검사로 임신부의 임신 4개월 시기와 3세 4세 아동 그리고 아동이 6세가 되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는 매 3년 마다 9세, 12세, 15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 아동의 발달 상황을 체크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 고등학생들의 건강검진은 성적충동, 약물유혹, 폭행, 비만, 자살 등 위험의 유혹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교육과 더불어 청소년과 학교 사회복지사나 교사, 부모들과의 대화와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강조,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다.

① 아동재가복지

아동을 위한 재가복지는 예방차원과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두 경우에 다 사용되는 서비스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과 사법적인 지원의 두 종류가 있다.

재가복지는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며 부모의 요청이나 문제 가정의 아동 상황을 판단한 사회복지사의 요청에 의해 평가 실시된다. 재가복지는 재정적인 현금지급에서부터 아동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법지원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법기관이 수혜기간과 서비스를 포함한 보호를 판단 결정한다. 기간은 최고 2년 미만이며 필요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결정된 판결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에 대해서 부모는 사용권한이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의 통제 하에 아동을 위해 쓰여 진다.

이 서비스의 성격은 사회와 가정을 중재하는 역할서비스로 관련 복지사가 부모 역할을 지원해 주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부모와 아동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주 역할이다. 주로 아동의 교육과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루 2, 4 시간 정도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일명 (Le technicien de l'intervention sociale et familiale) 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파리지에는 이런 재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센터가 4 곳 있다. 또한 이 재가서비스는 아동 교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요청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아동의 교육을 담당해 주는 것으로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이 재가서비스는 보호가 요청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첫 개입이 되며 복지사의 관찰에 따라 더 심층화된 보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주거환경을 위해 부모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아동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아동보호를 위해 임대인과의 집세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개방된 환경(가정이 아닌 지역시설)의 예방 보호서비스(actions educatives en milieu ouvert)

부모나 가정환경이 아동교육에 심각한 정도로 악영향을 줄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정신질환과 같은 아동교육에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 해당 사법당국의 판단과 중재에 의해 부모가 아닌 전문가가 다른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예방서비스이다.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일정 기간을 보낸 후 아동의 가정환경을 재평가한 다음 가정문제가 완화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가정으로 복귀시켜 부모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방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특징인 아동이 처해 있는 가정환경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③ 특별예방

이 특별예방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사회관계에서의 결속력과 사회화를 습득케 하고 이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주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의 주 대상자는 가정과 학교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원만한 가족관계를 갖지 못하고 환경에 적응도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배회하면서 소년범죄로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고립되어 가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에 대한 예방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d'aller vers) 방법을 사용하는 아동보호 예방프로그램으로 주목적은 아동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며 개인과 그룹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적용대상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예방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찾아 제도권 서비스로 이양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길거리 사회교육이 이 정책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원서비스가 환경변화에 따라 조절되면서 실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제도권 시설이나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나 제도와 연결이 되어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특별예방의 주 전달체계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교육하는 특별교육자 전담팀이다. 파리에 현재 60개 팀 (1팀이 4, 5명씩)의 거리선도 교육자 팀이 있다. 이 팀들은 21개 복지기관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14,000명의 청소년이 이 거리선도 교육 보호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이 특별예방에는 청소년들의 학습부진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 해결을 그룹이나 개별로 지도한다. 관련 교육자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익명으로 이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들의 교육, 취미활동, 운동, 문화, 건강, 주거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보호

이미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가 요구되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은 긴급으로 제 삼자에 의해 시설에 위탁 보호되거나 보호 신청이나 접수를 통해 일정기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호를 위탁하는 경로는 부모, 사회복지사, 가출 소년 자신, 성년이 된 청소년 자신, 법원의 판결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 예방차원의 보호를 받다가 시설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은 교육서비스(학교 교육, 사회교육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프랑스의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설에서 보호 하는 경우와 예방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재가 호를 받는 경우이다.

① 시설보호

시설보호는 장기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특별보호로 범주가 나누어져 있으며 매해 보호를 요청한 아동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기준은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인 상황과 이미 수용된 아동들은 수용기간동안의 호전된 상황여부, 학교생활과 가정과 부모와의 관계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프랑스는 L 313-7 법에 의거하여 기관 수용기간을 18세 미만으로(jeunes majeurs 프로그램은 21세 미만) 수용 가능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기간 5년으로 하고 지방의회장의 결정에 의해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시설보호에는 지역의 교육지도자, 아동·청소년 전문가, 정신치료의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하여 각 보호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 긴급보호시설,
- 12세미만의 영아 유아 보호시설
- 12세 이상의 청소년 보호시설

- 직업교육을 겸하고 있는 보호시설(이는 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청소년 임신부들을 위한 모자 보호시설
-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참고로 2006년 파리시에 산재해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 III-6> 파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사립 복지시설

	파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사립 복지시설
긴급보호	1	4
영 유아 보호 (12세 미만)	6	1
아동 청소년 보호	8	17
교육 직업교육	5 (위의 8개에 포함)	3
기타 아동보호 관련기관	4(모자보호기관)	11 (모자보호와 정신치료가 요구되는 청소년보호기관)

위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만 2006년 1,113 명의 청소년이 보호서비스를 받았다.

② 개인가정재가보호 (l'accueil familial specialis)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탁가정에 보호하는 것으로 정부의 아동복지부와 연결되어 있다. 아동들의 교육과 성년이 되어 오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며 이들의 부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의 관계 개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들의 학습지도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지역의 9개 복지시설에 763개의 위탁가정 (famille d'accueil)이 등록 되어 요보호아동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주로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단기간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위탁가정

보호는 단기로 이루어지는 대부모후원제도(Parrainage)의 한 형태이다.

3) 특별 프로그램

프랑스는 일반적인 아동보호정책 외에 보호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지원형태가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카톨릭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 후에 본 부모 외에 대부모를 두어 신앙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부모 형태를 아동보호정책으로 응용하여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Le parrainage)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 대한 정책(le pupille)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입양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아동보호정책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나이를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도 자립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 독립이 힘들거나 경제적 자립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1) 대부모후원제도 (le parrainage)

프랑스는 약 10년 전부터 아동보호 정책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이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문제해결 방법의 하나로 대부모후원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아동뿐 아니라 외국 아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대부모후원제도는 비단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인간애에 기반을 둔 특성을 갖고 서비스가 실행된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대부모후원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보호대상 아동들이 제삼자를 통해 (대부모지원협회, 아동보호 서비스기관) 대부모와 연결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들의 관계형성은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된다. 대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아동들을 지

원하며 부모자격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입양(adoption)이나 보호가정제(famille d'accueil)와는 다른 형태이다.

① 대부모후원제도의 역사

프랑스의 대부모 후원 제도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타 가정이나 시설에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모자보호와 같은 다른 성격의 활동이 추가되어 실시되어 왔다. 1947년 프랑스 아동보호센터가 창립되면서 아동보호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실행된 것이다.

이중 대부모후원제도는 전쟁 이후 외국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을 전쟁 중 부를 잃은 결손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전쟁 당시에는 대부모 역할에 외국인이 더 많이 참가하고 있었지만 차츰 외국인 대부모보다 자국 내 프랑스인 대부모가 급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더 발전해 갔다.

이후 대부모제도는 재정적 지원에서 뿐 아니라 단기간 대부모 가정에 함께 거주하는 지원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선 1961과 1962년에 프랑스 전역의 98개 아동시설에 있는 300명의 아동들이 대부모 결연가정에 주말과 방학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가정 거주 경험은 가족의 결속력과 함께 고립된 아동들에게 가정의 안락함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매해 이러한 보호를 받은 아동수가 증가하면서 1970년도에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은 아동 228,000명 중 148,000명이 위탁 가정에 위임, 대부모 서비스를 받았다.

1960년에 보호 아동수가 13,000명 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동안 보호 대상 아동수가 5.7% 증가 되었다. 이 통계수치는 같은 기간 내의 20세 미만의 인구 증가 수치인 1.3%에 대비해 상당수의 보호대상 아동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의 수는 1960년 63,300명에 비해 70년에는 46,100명으로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었지만 60년대의 이 제도 특성은 대부모가정에 위탁보호 되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들이고 이들의 지원기간이 단기간이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일반 아동들은 주로 시설을 이용하였다.

초기의 이제도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실행이 많이 지연되어 적합한 시기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또한 이 제도의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 아동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적합한 시기에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2년 6월 대부모후원제도를 제도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1978년 6월 30일 당시 가족복지부 장관이었던 Simone Veil 는 1972년 이후 이 정책에 대한 총결산과 대부모 후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초로 이 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보고서 형식의 회람(La circulaire Veil de 1978) 으로 발표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 ㉠ 1972년 7월 1일부터 1976년 3월까지 3,108명이 대부모 후원제도에 참여하였으나 당시는 지방마다 큰 차이를 보여 51개 지방의회는 이제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 ㉡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대부모나 자녀들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제도에 대한 실망이 컸던 점, 대부모를 지원하는 신청자 수의 부족, 단기간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신청자의 특성들에 의한 것이다.
- ㉢ 이 당시 이제도를 이용 혜택을 받은 아동은 주로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의 경우로(47% 이상) 이제도의 가능 주 이용대상인 10세에서 16세 사이 아동의 참여가 없었던 점이다.

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각 협회의 임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었다.

이후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정책과 더불어 1979년 1월 26일 Simone Veil는 다시 20만부의 대부모제도에 관한 회람(la circulaire Veil)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회람에는 특히 대부모의 책임이 입양부모의 책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성인들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10년 후 Madame Dorlhac은 veil의 1978년 이념을 다시 결성 재차 회람을 발표하면서 대부모후원제도를 포함한 아동 보호문제의 지방자치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권한도 강화되었다. 특히 보호가정을 찾기 힘든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시설에 보호하는 정책이 몇몇 (당시는 3개) 지방자치에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으로 1991년 이후 각 협회와 협력체제들의 연결이 개선되어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비스 방법도 보호에서부터 교육 그리고 취미여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반해 여전히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대부모 자녀가 결연된 수가 여전히 적었으며 대부분의 대부모를 원하는 성년들이 지원 대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년이 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1990년 말부터 아동보호정책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질적 성장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12월 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Madame Marie Dominique Vergez는 대부모후원제도 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팀을 구성,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Rapport sur le parrainage)를 발표하는 등 프랑스정부는 대부모후원제도의 개선과 효과적인 실천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② 오늘날의 대부모후원제도

대부모후원제도는 아동의 부모, 아동의 대부모, 협력기관이나 협력단체가 함께 어우러져 실행되는 아동복지를 위한 법적제도이다. 아동보호를 위해 가족과 이웃들이 결속력을 갖고 연결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본 가족 외의 성인이나 다른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 실제적인 가정형태를 이루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천되는 보호서비스이다.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은 아동이 본 가정에 다시 결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시설보호에 비해 더 애정이 기반이 되는 지원이 되며 특히 고립된 가정의 아동문제 해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아동보호정책의 하나로 다른 아동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정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운영의 효율성과 아동과 관련된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대부모제도는 아동보호의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역할 뿐 아니라 아동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도의 유연성으로 인해 다양한 실행방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방과후 학습지도에서 부터 방학기간과 주말에 대부모가정에 거주하는 등 부모역할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 범위가 포괄적이다.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대부모를 지원하는 성인의 참여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 대부모를 후원하거나 혜택을 받는 기간은 영구적인 아닌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양과 같이 아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요구되거나 행사 할 수 없다.
- ㉢ 각 아동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 ㉣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대부모 자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오늘날 대부모 후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정책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 되고 있다

- ㉠ 기부의 역동성 (dynamique du don)
- ㉡ 자발적인 참여
- ㉢ 대부모 자녀와의 결속력
- ㉣ 애정이 바탕이 되는 관계형성

③ 대부모

아동의 본 부모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이들을 케어 하지 못하는 시거나 상황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일정 기간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대부모의 기본 역할이다. 그러나 대부모는 아동의 친부모 역할을 전적으로 맡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부모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지녀야 할 전적인 책임감은 없지만 아동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대부모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측근도 될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제 삼자로 아동을 지원할 여유가 있는 성인들이며 자원 봉사적인 참여 (S'engager benevolement)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일정 기간 대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정서적 학습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대부모를 지원하는 지원자는 협회나 아동서비스 관련 기관을 통해 아동의 부모가 요청을 하거나 부모자격을 가진 성인이 신청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아동 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부모지원자는 동기서, 소정의 질의서 작성,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 건강진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모 자녀의 결연은 정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지방의회자문회 의장과 대부모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모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고 다른 가정과 함께 그룹 미팅을 통해 서로 아동보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④ 대자녀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령층이 다양하고 수혜가능 아동의 가족상황 역시 다양하다.

정책적으로 정해진 대부모 후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부모 연고가 없는 아동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
- ㉡ 아동복지 서비스를 혜택을 받고 있거나 이미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 ㉢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동, 원거리 취학 아동, 병원에 입원한 아동)
- ㉣ 가정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
- ㉤ 장애아동
- ㉥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들이라도 아동주변의 폭넓은 관계 형성을 원하는 아동
- ㉧ 고립된 청소년이나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

정부는 대부모후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법조인(변호사, 판사, 공증인)교육과 사회활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관계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에 대부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필요성 그리고 전달방법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홍보는 물론 아동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정보의 배포와 홍보는 사회활동 교육기관, 아동보호 관련 국가교육기간, 대학의 아동법 관련학과 등 거의 모든 아동 관련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⑤ 대부모후원국가위원회 (Le comite national du parrainage)

이 정부 기구는 2003년 9월 30일 아동의 대부모 후원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이전까지 대부모후원제도가 이를 필요로 하는 부모나

가정 그리고 요보호아동들을 위해 매우 유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대부모제도의 공식적인 홍보 역할과 이 제도의 발전을 돕는 것을 최우선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안내정보와 인증서와 현장 제작에 참여 한다. 안내정보는 제도의 실천사항과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대부모 후원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필요한 행동지침에 대한 평가도 담당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 대부모 후원제도 관련 정부 기관 대표
- ㉡ 지방자치 의회의 아동보호 관련대표
- ㉢ 대부모 후원 협회 대표
- ㉣ 대부모 후원제도 관련 서비스 기관 대표

이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회의를 갖고 그 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한다.

⑥ 대부모후원제도협회 전국연합

UNAPP(Union nationale d'associations de parrainage proximite) 대부모후원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후원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주로 협회(association)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모후원협회는 대부모후원제도의 실행기관으로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의 취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발적인 참여나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실행되므로 자원봉사자는 이 제도의 큰 자원이다. 지원자 수가 충분치 못할 경우 제도운영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협회는 대부모 지원자를 모집 하는 것과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신상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아동 양육에 적합한 교육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의 점검도 협회의 주요 임무이다.

2001년 9월 당시에는 8개의 협회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협회는 자원봉사자와 전문가와의 연결체계의 어려움은 물론 협회들 간의 협동체계가 미비하고 이제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충분치 않아 효과적인 운영이 힘들었으며 대부모를 지원하는 지원자도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협회들이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각자 고립되지 않고 서로가 지니고 있는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서비스 실행에 대한 토의와 협회간의 협동과 연결 체계를 위해 2005년 <대부모후원제도협회 전국연합>을 창립하였다.

이들의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 ㉠ 대부모 후원제도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점검
- ㉡ 아동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모 후원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 ㉢ 정책의 결과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평가
- ㉣ 이 제도에 대한 사회기반과 사법적 지원에 대한 조사
- ㉤ 정책실행을 돕는 적합한 조건에 대한 구상과 재정적 지원에 부합되는 기간 설정

▶ 참고자료:

파리 근교 지역(Ils de France)의 대부모 후원제도 통계(2006년도)
 수혜자: 61 여 아동 59 남 아동(3세미만: 1명, 3-6세 :19명, 6-12세 :65명, 12-18세 :26 명, 18-21명: 9명)

파리에 있는 “프랑스 아동보호센터” (Le centre francais de protection de l'enfance)라는 협회는 역사가 50년 이상이 되었으며 단기간의 대부모, 자녀를 연결해 주는 일부터 짧은 모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아동보호정책을 도와 연결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2) 국가가 지원하는 미성년 고아(Les Pupilles)에 대한 정책

전쟁 직후에는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이 아동보호 정책의 주대상자였다. 이후 전쟁고아들이 성년이 되면서 전쟁고아는 사라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잃은 아동 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평가기준에 의해 <국가가 보호하는 고아(le pupille de l' Etat)>로 명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면서 이 곳에서 실시되는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대부모 후원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인 없는 관계로 아동의 나이에 따라 많은 수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 되고 있다.

① 통계지표

2005년 국가가 승인한 고아(le pupille de l' Etat)의 수는 2,504명으로 신규가입이 887명이며, 법적으로 제한된 나이를 지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이 타이틀에서 제외된 수는 758명이다. 이는 1,000명의 신생아 중 1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로 등록되는 수치이다. 이들의 수는 1987년 7,693명에서 1995년에는 3,659명, 2005년에는 2,504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 수치는 아동 10만명 단위 당으로 계산하면 1987년에는 10만명 미성년자중 54명이었던 수가 2003년에 20명, 2005년에는 18명이다.

이들이 국가가 승인한 고아(le pupille de l' Etat)로 된 동기는 무연고가 35%, 유기된 경우가 28%, 부모에 의해 신청 접수된 경우가 15%, 부모가 부모 권한을 포기 한 경우가 13% 그리고 부모가 다 없는 고아가 9% 이다.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프랑스 아동 가족법 L. 224-4에 명시된 6개의 기준에 의해 선발되며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입양

이러한 고아들은 시설에서 보호서비스를 받지만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성 교육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시설 보호보다 더 좋은 보호방법은 입양이다.

고아의 입양은 15세 미만까지로 나이제한이 있으며, 다른 가정으로 호적과 같은 가족부가 완전히 바뀌어 입양되는 완전 입양제도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은 되지만 아동의 원래의 가정력은 보유하고 있는 단순입양의 두 형태가 있다.

이들의 입양은 주로 2세 미만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전체 입양의 29%) 1세 미만 아동의 69%가 입양되고 있다. 2세가 넘으면 입양되는 수가 감소된다. 15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된 경우는 부모가 부모의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입양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7세 아동이 입양된 경우는 전체 입양 아동의 9%에 이른다. 이렇게 입양되는 아동들의 10명 중 9명은 이미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중에 입양되는 경우이다.

고아들이 입양 될 경우 입양 가정은 지방의회장이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고아들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면서 부터는 보호 아동이나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57%가 3세 미만에 입양되어 일반 아동 범주에 등록이 되었다) 고아들의 ¼ 은 계속 시설에 거주 하면서 교육과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 후 보호 대상 아동의 제한 나이가 되면 고아(pupille)의 신분을 벗어나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아의 대부분이 입양을 원하고 있으나 신청자수와 입양되는 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리시에서 발표한 2006년에는 입양을 원하는 신청수 704건에 비해 42명의 고아가 입양되었으며 외국 아동 입양은 245명으로 국내 입양을 훨씬 능가 하고 있다. 입양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지원의 고아 복지 수혜자는 2006년 163명이다.

파리시에서는 <파리입양공간 (espace paris adoption)> 을 설치하여 입양된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접하게 되는 가정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663명의 고아들이 입양되지 못하였지만 반면, 아동을 입양하기를 위해 입양을 신청한 가정은 13,563 가정이며 이중 8,797 가정이 지방의회장에 의해 입양 승인을 받고 입양 아동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입양을 신청 한 후 포기를 하는 가정은 신청 가정의 1/4 쯤 된다.

입양경로는 다음과 같이 고아들의 등록 대상 경로와 비슷하다.

- ㉠ 무연고 (absence de filiation)
- ㉡ 부모의 의해 (remise par les parents)
- ㉢ 부 나 모에 의해 (remise par un parent)
- ㉣ 고아 (orphelins): 부모가 전혀 없는 아동
- ㉤ 부모가 권한 포기 (retrait total de l'autorite)
- ㉥ 사법결정에 의해 (declaration judiciaire d'abandon)

2005년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전체 입양된 아동 수 2,504 명 중 무연고로 인해 입양된 아동이 8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03명으로 사법 결정에 의한 입양이다. 가장 적은 수는 부·모 중 한 명이 요청한 경우이다. (83명)

④ 가정위원회(Conseil de famille)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로 승인된 아동들은 각 지방의회에 소속된 가정위원회에 위임되어 이 기구가 이들을 관리한다. 각 위원회에 위임되는 고아의 수는 50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프랑스 전역에 118개의 위원회 중(2005년도) 단 5곳만이 50명을 관리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평균 20명의 고아를 관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평균 년 7.5 회의 회의를 열고 있으며, 년 25회의 모임을 가진 위원회도 있다. 이들은 위임받은 고아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실행해 가고 있다.

(3) 성년이 된 청소년(les Jeunes majeurs:18세 이상 21세 미만) 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퇴소청소년 프로그램)

① 서비스 결정 요인

일반적으로 프랑스 아동과 청소년 보호는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나 18세 이후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어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Jeune majeur"라 명칭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담당 기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시설보호나 복지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 중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복지 담당 부서에서 계속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아동, 청소년 복지와 일반성인 복지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한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직업 교육과 아울러 취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고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18세 이전의 아동복지 정책보다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임신은 하였으나 가족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실행되고 있다. 이 경우 어린 자녀나 미혼모, 임신부에 대한 보호정책은 아동 보호정책에서 마련된 서비스로 연결이 된다. 이러한 모자 보호센터는 파리에 11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1세 이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아동복지 담당에서 일반 성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이양 되어 최소생계비 지원이나 가족수당, 주택 보조수당 등 성인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② 평가와 결정

18세 이상의 청소년의 복지 혜택 여부에 대한 평가는 아동 보호시설의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찰에 의해 지방정부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청소년 가정의 부모가 경제적,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아동의 사회 적응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㉔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어 시설외의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사회에 적응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로 이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에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㉕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정상적인 성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의 보호는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 점검과 청소년들이 시설이용 청구 시 작성하게 되는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검토한 후 입소가 결정된다.

이 결정은 청소년과 정부의 아동보호복지부의 공동협정에 의해 최장기간 일 년으로 계약이 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 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 건강, 재정자립, 가정이나 사회관계망 조성들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직업과 독립적인 생활기반 마련에 대한 동기서 작성이 중요하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은 일 년 단위로 단위 기간마다 재평가 하여 시설이용을 연장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며 기간연장은 예외인 경우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어 빠른 독립을 권장하고 있다.

▶ 평가와 결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 자치정부는 18세 이상의 청소년 정책을 세울 때 지방자치 정부의 재정상태, 거주시설의 확보, 교육수용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1975년 2월 18일 이후 정부는 청소년들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책임을 완료 한다.

㉖ 계약된 날짜가 만기 될 경우

㉗ 청소년의 나이가 21세가 될 경우

㉘ 시설이용 청소년이 약속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방의회 의장의 퇴소결정이 내렸을 경우

㉔ 청소년이 요구한 사항이 다 해결 되었을 경우

이들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㉕ 지방정부는 성년이 된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하며 이를 지원한다. 구성요원은 보건직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일반의사, 정신과의사, 가족 담당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다. 이 협력체제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초기 사회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과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제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의 의견이나 지시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㉖ 전문직으로 구성된 지방법원에 청소년 평가기관을 따로 마련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심층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 ㉗ 시설입소 시 작성하는 청소년이 앞으로의 자신의 계획이나 직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작성을 도와준다.

③ 주요 프로그램

- ㉘ 주택보조: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하면 주택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퇴소후의 복지서비스는 바로 성인들 프로그램으로 이양되어 일반성인들의 주택 보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매달 약 180유로의 주택 보조금이 지급되며 실업상태이면 주택보조를 포함한 실직 수당이 지급되고 취업이 되면 기업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 보조를 받게 된다.
- ㉙ 직업교육: 퇴소 후 자립기반의 중요한 자원인 직업교육을 위해 18세이상의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대부분 직업교육을 겸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직업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시설에 있는 동안 직업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 ㉔ 모자보건: 출산의 준비가 어렵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 임신모를 위해서는 모자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미성년이나 21세 이전에 임신한 청소년이 동반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과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정상적인 모자관계와 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주거마련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 ㉕ 취업: 기업의 대부모후원제도

2005년 3월 노동부에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청소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모 후원제도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젊은 청소년을 위해 기존의 대부모후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후원 대상자가 개인보다는 주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이 첫 취업 시 받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다른 제도의 보조적 정책이 아닌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발전 강화해 가고 있다.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매해 약 80만명의 첫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최소한 직업을 찾기 시작하는 처음 6개월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구직 기간과 더불어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지방의회, 기업책임자, 사회협력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각 대부모후원지원자, 요구자들의 질의서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선별된 지원자에게 적합한 역할과 지원을 허가한다.

2005년 대부모후원제도의 국가 예산은 3,524,810 유로(약 44억원)

이며 대부모제도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일인당 최고 305유로까지 지급된다.

▶ 인증서

지방정부는 각기 수립된 이 제도의 계획에 따르는 자체 내 평가와 더불어 대부모 후원자들의 역할과 상황을 기록 평가하고 후원자들의 연결망을 조성하여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인증서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모후원 역할을 하는 지원자들은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질의서를 작성하여 인증서를 받고 있다. 질의서는 대부모 후원자들이 매해 자신들이 수행한 일을 작성하여 계약 만기전에 제출하며 일년 단위로 재작성 한다.

질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대부모후원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 정보
- ㉡ 이 제도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주변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
- ㉢ 다른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타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정보(이는 시간적 효율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재정 계획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 ㉣ 지난 해의 실천 사항(이는 이미 실행된 서비스를 분석하여 다음 해에 계획수립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 ㉤ 후견인 대부모 정보(이는 대부모의 신뢰도에 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 대자녀에 대한 정보
- ㉦ 체결된 대부모, 자 관계에 대한 정보
- ㉧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 ㉨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이외에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이 교육비 보조와 직업교육비 보조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경우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질병치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다. 이 청소년들의 보호지원에 대해서는 물적 지

원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자문을 포함한 교육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수혜청소년 통계

파리시의 18세 이상의 성년이 된 청소년복지 수혜자는 2005년도 1,097명 2006년 1,127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2005년 수혜자 중 18세 때 입소 후 일 년마다 시설 이용 연장이 가능하여 계속 시설을 이용한 연장수혜자는 604명이며, 또한 18세 이전에 아동시설을 이용하다 18세 이후에 성년이 된 청소년 대상으로 보호대상 범주가 바뀐 수혜자는 39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21세가 되기까지 시설지원을 받고 있으며,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청소년들은 자립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18세 이후의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이어지고 있다.(이 통계에는 청소년 임신모의 통계는 포함 되지 않았음)

2006년도 새로운 보호 계약을 체결한 성년이 된 청소년은 597명이며 이중 172명(29%)의 18세 미만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된 청소년 (les jeunes majeurs) 프로그램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직업 교육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외국 미성년자들의 보호문제가 프랑스 아동 보호 주요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표 III-7> 연도별과 나이별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수

(명수)

년도	10세 미만	10-14세	14-18미만	18세 이상	합계
2002	26.0% (1291)	21.3% (1060)	36.2% (1797)	16.5% (818)	100 % (4966)
2003	23.7% (1228)	20.7% (1076)	36.4% (1888)	19.2% (994)	100% (5186)
2004	23.3% (1228)	20.4 % (1078)	35.7% (1886)	20.6 % (1087)	100% (5279)
2005	23.4 % (1162)	18.4% (1 910)	36.1% (1787)	22.1% (1097)	100% (4956)
2006	23.9% (1189)	18.0 % (895)	35.5 % (1764)	22.7 % (1127)	100% (4975)

위의 표에서와 같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그룹의 시설 이용수가 매 해 감소하는 것에 비해 18세 이상의 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

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14세에서 18세 미만의 그룹이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수도 전체 이용자 수의 20%를 넘고 있어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한 후의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8> 연도별 나이별 시설퇴소 아동수

(명수)

년도	0-5세	5-10세	10-14세	14-18미만	18세 이상	합계
2002	9.7% (164)	8.9 % (150)	14.9%(251)	23.4 % (394)	43.1% (727)	100% (1686)
2003	11 % (189)	8.5 % (139)	12.1% (199)	21.1% (346)	47.3% (775)	100% (1640)
2004	8.7% (161)	7.2% (134)	12.5% (231)	21.7% (402)	49.8% (921)	100% (1849)
2005	8.9% (181)	9.4 % (190)	15.1% (306)	21.5% (437)	45.1% (915)	100% (2029)
2006	6.4% (105)	8.1 % (133)	10.7% (176)	21.5% (352)	53.3 % (873)	100% (1639)

위의 표를 보면 연령별 퇴소률이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것은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최초지원시 정해진 기간 후에도 계속 시설을 이용, 대부분의 아동들이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4~18세 미만의 시설보호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하는 수가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상당 부분이 18세 이후에는 18세 이후 jeune majeur 프로그램으로 이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18세 이상 청소년의 퇴소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청소년의 자립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파리시의 통계에 따르면 25세 이전의 청소년들이 전화를 통해 상담하거나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9,111건으로 교육이나 취업 문제 뿐 아니라 마약이나 에이즈검사, 그리고 피임에 대한 상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이들 청소년의 대부분은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 있지만 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언어 교육이 지원되고 있다.

4) 파리시 청소년 복지정책(paris ado service)

파리시는 20세 미만의 인구가 전국 평균치 보다 2배나 많고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 역시 타 지방에 비해 훨씬 다양하므로 파리시의 아동정책이 프랑스의 아동정책을 대표하고 있어 파리시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소개 한다.

(1) 특별 프로그램 (paris ado service)

파리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파리 청소년 서비스(paris ado serv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1세까지의 거주자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나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시설의 전신은 15년 전 사법결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아동보호센터이다. 이를 파리시에서 2005년 <파리 청소년 서비스>라 명하고 파리북부 지역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13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단기간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미성년 임신부와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성년이 된 청소년 21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양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정과의 중재역할도 담당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600명의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3이 거주가 확실치 않아 숙소(mis a l'abri)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청소년의 75%가 일주일 미만으로 숙소를 이용하고 있어 단기 보호 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입소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요구할

경우 면접을 통한 평가를 통해 보호서비스를 결정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의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구성은 문제아동의 부모가 40%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요보호아동이 발견될 경우 이용한 경우가 35% 그리고 청소년 자신들이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25% 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27만 유로(약 3억 3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져 청소년 관련 기관들(보건시설, 병원, 교육기관, 복지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창설 운영되고 있다.

▶ 파리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의 2004년 결산 통계

- ㉠ 재정은 99만 5000유로(12억 5천만원)로 파리지 예산으로 충당되었으며
- ㉡ 이용청소년의 수는 573 명으로 이 중 성년이 된 18세 이상의 청소년 (les jeune majeur) 이 29%, 18세미만의 미성년 청소년이 71% 이다.
- ㉢ 연령별 이용자는 15~17세가 61%, 18세 이상이 39% 이며, 여자가 57% 남자가 43%이다.
- ㉣ 이들의 이용동기는 가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 58%, 불안정한 생활 환경이 39%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숙소로 이용(mis a l'abri)한 청소년 236명 중 80명이 가출, 35명이 부모로부터 유기된 경우, 121명이 법적 연고가 없는 경우이다.
- ㉤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청소년의 수는 2001년 53명, 2002년 98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 일반 주요 프로그램

파리시의 청소년을 위한 일반적인 주요 정책은 학교생활이 어렵고 사회 적응에 문제가 있으며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① 예방선도하고, ② 이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③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주요 아동과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과 보전에 대한 지원보호로 필요한 예방접종과 매년 치과진료가 무료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피임과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에이즈 예방 홍보와 검사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최근에는 청소년의 취업지원과 기술지원 더불어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학교를 결석하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중학교 청소년의 보호예방을 위해 237,000유로(2억9500만원)의 재정으로 4,500명의 청소년이 보호 지원 받았으며, 19개의 직업 고등학교에서 7,029명의 고등학생이 간호, 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 2006년 파리시의 아동보호 정책 관련 통계

- ㉠ 파리시는 2006년 성년이 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 784명에게 재정지원으로 파리시 예산 300,000유로(3억 7천만원정도)와 중앙정부의 135,000유로(1억 7천만원정도)를 지원했다.
- ㉡ 2,542명의 아동복지 관련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933명의 가정보조 사회복지사(assistantes familiaux)가 포함되었다.
- ㉢ 모든 보호시설 유지비, 종사자들 급여, 예방서비스비, 아동수당, 가족수당 지급 보조, 학교급식 보조비 등에 총 2억 8560만 유로(3,570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다.
- ㉣ 아동예방서비스를 위해 27개 시설, 21개 협회, 60개 그룹의 길거리 교육자(4개의 보조팀 포함)가 15,800명의 요보호 청소년을 담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은 2,280만 유로(285억원)
- ㉤ 예방서비스로 1,456명의 아동이 재가서비스를 받았고 개방된 환경(가정이 아닌 지역시설에서)의 예방 보호서비스(action educatives en milieu ouvert)의 수혜자는 2,979명으로 수혜자 합계는 4,435명

- ㉠ 시설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 4,975명 중 행정결정에 의한 수혜자는 1,734명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원을 받은 2,795명 중 법원에서 직접 보호 명령을 내린 청소년은 446명이다.
- ㉡ 청소년 임신모 326 명과 임산부의 아기 329명이 모자센터에 입소되어 보호를 받았다.
- ㉢ 국가가 지원하는 고아 중 42명이 입양 되었다.

5) 시사점

프랑스의 복지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가족이나 공동체가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사회와 정부가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회주의적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들 역시 개개인의 어려움은 사회구조로 인한 문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권리 요구가 강하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들의 아동보호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치료 못지않게 사전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일정한 근거 틀을 제시하고 통괄 운영하는 본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료의 입수와 서비스 실행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 복지가 지역사회복지로 연결 확대 발전하는 체제로 운영되어가고 있다. 또한 공공 복지기관과 민간복지가 잘 어우러져 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폭 넓은 서비스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아동복지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18세 이상의 퇴소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

어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지원에 비해 더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해 퇴소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립준비가 끝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이나 자살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한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보호지원 등 사회변화에 따르는 대처 예방 프로그램도 주요정책 중 하나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모후원제도는 우리나라의 퇴소청소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청소년 초기 취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의 기업이나 관심 있는 개인들이 이들을 후원하는 대부모후원제도는 우리나라의 퇴소청소년을 위해 도입해 볼 만한 정책이다.

I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현황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 및 욕구실태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현황

I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현황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 및 욕구실태

우선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115(45.6)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43(56.7)
	여자	137(54.4)		중소도시	72(28.6)
	계	252(100)		농어촌(읍, 면, 리)	37(14.7)
		계		252(100.0)	
나이	17세이하	15(6.0)	종교	없음	50(20.2)
	18세-23세	207(83.1)		개신교	180(72.9)
	24세-29세	27(10.9)		불교	5(2.0)
	계	249(100.0)		천주교	12(4.9)
	평균	20.41세		전체	247(100.0)
학력	초등학교 중퇴혹은 졸업	6(2.4)	결혼 여부	미혼	248(99.2)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12(4.9)		기혼	2(0.8)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84(34)		계	250(100.0)
	대학교(전문대)재학, 중퇴 혹은 졸업	137(55.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수여경험여부	있음	113(45.6)
	대학원 재학 이상	7(2.8)		없음	83(33.5)
	고등학교재학중	1(0.4)		모름	52(21)
	계	247(100.0)		계	248(100.0)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115명으로 45.6%, 여자가 137명으로 54.4%를 차지하였다.

나이는 17세이하가 6.0%, 18세-23세가 83.1%, 24세-29세가 10.9%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2.4%,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4.9%,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34%, 대학교(전문대) 재학 중퇴 혹은 졸업이 55.5%, 대학원 재학 이상이 2.8%, 고등학교 재학중이 0.4%를 차지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가 56.7%, 중소도시 28.6%, 농어촌(읍, 면, 리)이 14.7%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20.2%, 개신교 72.9%, 불교 2.0%, 천주교 4.9%였다.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이 99.2% 기혼이 0.8%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여 경험 여부별로는 급여수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45.6%, 없는 경우가 33.5%, 모르는 경우가 21%를 차지하였다.

1) 아동양육시설 관련 특성

아동양육시설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가 5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후(28.3%), 기타(8.4%), 고등학교 졸업전(7.6%)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²⁶⁾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7세이하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퇴소한 경우(23.1%)가 가장 많았고 18세-23세는 고등학교 졸업후 퇴소한 경우(61.3%)가 가장 많았으며 24세-29세인 경우는 대학교 졸업후에 퇴소한 경우(63.0%)가 가장 많았다.

26) 분할표분석(crosstab)에서 한 셀이라도 0이 있는 경우, t 검중이나 F 검중의 경우 한 셀이라도 사례수가 2이하인 경우 유의성 검증결과(분할표분석의 경우 pearson's chi square 값, t 검중의 경우 t 값, F 검중의 경우 F 값)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일지라도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표 IV-2〉 아동양육시설 퇴소시기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 시기				전체	χ ²
		고등학교 졸업 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 후	기타		
성별	남자	7(6.5)	65(60.7)	26(24.3)	9(8.4)	107(100.0)	2.267
	여자	11(8.5)	67(51.5)	41(31.5)	11(8.5)	130(100.0)	
나이	17세이하	3(23.1)	4(30.8)	2(15.4)	4(30.8)	13(100.0)	49.699***
	18세-23세	12(6.2)	119(61.3)	47(24.2)	16(8.2)	194(100.0)	
	24세-29세	2(7.4)	8(29.6)	17(63.0)	0(0)	27(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13(9.4)	83(59.7)	30(21.6)	13(9.4)	139(100.0)	10.326
	중소도시	2(3.1)	33(51.6)	23(35.9)	6(9.4)	64(100.0)	
	농어촌	3(8.8)	16(47.1)	14(41.2)	1(2.9)	34(100.0)	
총계		18(7.6)	132(55.7)	67(28.3)	20(8.4)	237(100.0)	

*<.05, **<.01, ***<.001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연령은 평균 19.79세였다. 연령별로는 19세가 32.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8세(27.0%), 23세(10.2%), 22세(9.8%), 21세(9.1%), 20세(8.8%), 25세(0.9%)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별로는 현재 24세-29세인 경우(20.96세)에 18세-23세인 경우(19.62세)보다 퇴소시 평균 연령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농어촌(20.59세)이 대도시(19.45세)보다 퇴소시 평균 연령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3〉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할 당시 나이

구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할 당시 나이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19.71	95	1.681	-.640	-
	여자	19.86	120	1.788		
나이	18세-23세	19.62	177	1.665	-3.800***	
	24세-29세	20.96	26	1.777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19.45	124	1.589	6.872***	A
	중소도시	20.07	59	1.837		A B
	농어촌	20.59	32	1.811		B
총계		19.79	215	1.60		

*<.05, **<.01, ***<.001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서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취업(3.2%), 위탁부모 혹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2.3%),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답답해서(0.9%), 짝은 무단가출로 퇴소신고처리 되어서(0.9%), 기타(0.5%)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7세이하인 경우(80.0%)에 비해 18세-23세(92.8%) 혹은 24세-27세(92.6%)인 경우에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 퇴소한 경우가 많았다.

<표 IV-4>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주된 이유

구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주된 이유						전체	χ ²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서	위탁부모 혹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답답해서	짝은 무단가출로 퇴소신고처리 되어서	취업	기타		
성별	남자	94(94.0)	1(1.0)	1(1.0)	2(2.0)	1(1.0)	1(1.0)	100(100.0)	7.700
	여자	110(90.9)	4(3.3)	1(8)	0(0)	6(5.0)	0(0)	121(100.0)	
나이	17세이하	8(80.0)	(10.0)	0(0)	0(0)	0(0)	1(10.0)	10(100.0)	25.477*
	18세-23세	168(92.8)	3(1.7)	2(1.1)	2(1.1)	6(3.3)	0(0)	181(100.0)	
	24세-29세	25(92.6)	1(3.7)	0(0)	0(0)	1(3.7)	0(0)	27(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118(92.9)	3(2.4)	0(0)	0(0)	5(3.9)	1(8)	127(100.0)	14.302
	중소도시	52(86.7)	2(3.3)	2(3.3)	2(3.3)	2(3.3)	0(0)	60(100.0)	
	농어촌	34(100.0)	0(0)	0(0)	0(0)	0(0)	0(0)	34(100.0)	
총계		204(92.3)	5(2.3)	2(0.9)	2(0.9)	7(3.2)	1(0.5)	221(100.0)	

*<.05, **<.01, ***<.001

아동양육시설에 있었던 기간을 살펴보면 10년이상인 6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년에서 9년(19.1%), 3년에서 5년(11.0%), 3년미만이(1.7%) 순이었다. 아동양육시설에 있었던 평균기간은 11.25년으로

나타났다.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7세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에 6년-9년(45.5%) 있었던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18세-23세와 24세-29세의 경우에는 10년이상 각각 67.2%와 92.6%로 가장 많았다.

<표 IV-5> 아동양육시설에 있었던 기간

구분		아동양육시설에 있었던 기간				전체	z2
		3년미만	3년-5년	6년-9년	10년이상		
성별	남자	1(9)	9(8.5)	20(18.9)	76(71.7)	106(100.0)	2.101
	여자	3(2.3)	17(13.1)	25(19.2)	85(65.4)	130(100.0)	
나이	17세이하	0(0)	3(27.3)	5(45.5)	3(27.3)	11(100.0)	21.341*
	18세-23세	4(2.1)	22(11.3)	38(19.5)	131(67.2)	195(100.0)	
	24세-29세	0(0)	1(3.7)	1(3.7)	25(92.6)	27(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2.2)	14(10.4)	22(16.4)	95(70.9)	134(100.0)	5.987
	중소도시	1(1.5)	8(12.3)	18(27.7)	38(58.5)	65(100.0)	
	농어촌	0(0)	4(10.8)	5(13.5)	28(75.7)	37(100.0)	
총계		4(1.7)	26(11.0)	45(19.1)	161(68.2)	236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살 곳을 마련하는 것(36.5%)과 경제적인 어려움(3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응(13.5%), 직장(10.0%), 외로움(4.3%)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도시의 경우에는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경우가(40.0%) 가장 많고 다음이 경제적인 어려움(36.2%)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39.4%)이 가장 많고 다음이 살 곳을 마련하는 것(31.8%)이었다. 농어촌은 살 곳을 마련하는 것(32.4%)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장(29.4%)이 어렵다고 하였다.

<표 IV-6>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가장 어려운 점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가장 어려운 점					전체	χ ²
		살 곳을 마련하는 것	직장	사회적응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성별	남자	34(31.8)	12(11.2)	19(17.8)	39(36.4)	3(2.8)	107(100.0)	5.380
	여자	50(40.7)	11(8.9)	12(9.8)	43(35.0)	7(5.7)	123(100.0)	
나이	17세이하	6(54.5)	2(18.2)	2(18.2)	1(9.1)	0(0)	11(100.0)	13.594
	18세-23세	61(32.1)	18(9.5)	8(14.7)	4(38.9)	9(4.7)	190(100.0)	
	24세-29세	15(55.6)	3(11.1)	1(3.7)	7(25.9)	1(3.7)	27(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52(40.0)	6(4.6)	20(15.4)	47(36.2)	5(3.8)	130(100.0)	20.332**
	중소도시	21(31.8)	7(10.6)	8(12.1)	26(39.4)	4(6.1)	66(100.0)	
	농어촌	11(32.4)	10(29.4)	3(8.8)	9(26.5)	1(2.9)	34(100.0)	
총계		84(36.5)	23(10.0)	31(13.5)	82(35.7)	10(4.3)	230(100.0)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시설 혹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이 8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 적성 자립능력 검사(56.4%),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55.9%), 건강관리(54.6%), 일상생활관리훈련(51.5%), 직업훈련프로그램(42.7%), 사회적응기술훈련(39.6%), 인간관계훈련(39.2%), 사회지지 및 여가활동이용(34.4%), 주택관리기술(15.0%), 퇴소선배에 의한 자립지도(14.1%), 예비부모교육(2.2%), 용돈관리(1.3%), 기타(0.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46.6%),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21.4%), 건강관리(57.3%), 주택관리기술(18.4%), 일상생활관리훈련(53.4%)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심리, 적성, 자립능력검사(58.9%),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57.3%)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에는 다른 연령보다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91.7%), 심리, 적성, 자립능력검사(75.0%),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83.3%)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8세-23세는 사회지지 및 여가활동이용(35.1%), 주택관리기술(16.0%)을 24세-29세는 퇴소선배에 의한 자립지도(45.8%), 일상생활관리훈련(58.3%), 인간관계훈련

(50.0%), 건강관리(75.0%)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사회 지지 및 여가활동이용 비율(55.1%)이 중소도시의 경우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60.3%)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의 경우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91.2%), 직업훈련프로그램(47.1%), 퇴소선배에 의한 자립지도(44.1%), 일상생활관리훈련(55.9%), 인간관계훈련(47.1%), 사회적응기술훈련(58.8%), 건강관리(61.8%), 주택관리기술(20.6%)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즉, 농촌지역 청소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퇴소청(소)년에 비해 퇴소 전에 시설 혹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시설 혹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복수응답)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시설 혹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복수응답)															전체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	직업훈련프로그램	심리, 적성, 자립능력검사	성과결혼에 관한 교육	퇴소선배에 의한 자립지도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	일상생활관리훈련	인간관계훈련	사회적응기술훈련	사회지지 및 여가활동이용	건강관리	주택관리기술	예비부모교육	용돈관리	기타		
성별	남자	86 (83.5)	48 (46.6)	55 (53.4)	56 (54.4)	35 (34.0)	22 (21.4)	55 (53.4)	43 (41.7)	42 (40.8)	35 (34.0)	59 (57.3)	19 (18.4)	2 (1.9)	0 (.0)	1 (1.0)	558 (664.8)
	여자	102 (82.3)	49 (39.5)	73 (58.9)	71 (57.3)	34 (27.4)	10 (8.1)	62 (50.0)	46 (37.1)	48 (38.7)	43 (34.7)	65 (52.4)	15 (12.1)	3 (2.4)	3 (2.4)	0 (.0)	624 (505.7)
나이	17세 이하	11 (91.7)	6 (50.0)	9 (75.0)	10 (83.3)	2 (16.7)	0 (.0)	5 (41.7)	1 (8.3)	3 (25.0)	3 (25.0)	5 (41.7)	1 (8.3)	0 (.0)	2 (16.7)	0 (.0)	58 (483.4)
	18세-23세	155 (82.4)	80 (42.6)	107 (56.9)	107 (56.9)	55 (29.3)	29 (15.4)	96 (51.1)	74 (39.4)	74 (39.4)	66 (35.1)	99 (52.7)	30 (16.0)	5 (2.7)	1 (.5)	1 (.5)	979 (520.9)
	24세-29세	19 (79.2)	10 (41.7)	10 (41.7)	9 (37.5)	11 (45.8)	3 (12.5)	14 (58.3)	12 (50.0)	13 (54.2)	8 (33.3)	18 (75.0)	3 (12.5)	0 (.0)	0 (.0)	0 (.0)	130 (541.7)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100 (80.0)	51 (40.8)	73 (58.4)	66 (52.8)	36 (28.8)	18 (14.4)	63 (34.4)	43 (36.0)	45 (35.2)	44 (55.1)	63 (50.4)	15 (12.0)	2 (1.6)	3 (2.4)	1 (.8)	623 (531.2)
	중소도시	57 (83.8)	30 (44.1)	36 (52.9)	41 (60.3)	18 (26.5)	7 (51.5)	35 (39.7)	27 (42.6)	29 (20.6)	14 (30.0)	40 (58.8)	12 (17.6)	2 (2.9)	0 (.0)	0 (.0)	348 (531.2)
	농어촌	31 (91.2)	16 (47.1)	19 (55.9)	20 (58.8)	15 (44.1)	7 (55.9)	19 (55.9)	19 (47.1)	16 (58.8)	20 (15.0)	21 (61.8)	7 (20.6)	1 (2.9)	0 (.0)	0 (.0)	211 (615.0)
총계	188 (82.8)	97 (42.7)	128 (56.4)	127 (55.9)	69 (30.4)	32 (14.1)	117 (51.5)	89 (39.2)	90 (39.6)	78 (34.4)	124 (54.6)	34 (15.0)	5 (2.2)	3 (1.3)	1 (.4)	1,182 (520.5)	

위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3가지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응기술훈련(43.8%), 직업훈련프로그램(37.2%), 심리적성자

립능력검사(26.0%), 주택관리기술(21.5%), 건강관리(20.7%), 성과결혼에 관한 교육(17.4%), 일상생활관리훈련(15.3%),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11.6%), 퇴소선배에 의한 자립지도(7.9%), 사회지지 및 여가활동이용(7.4%), 예비부모교육(0.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83.5%)와 여자(82.3%) 모두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의 경우에는 직업훈련프로그램(38.5%)이 18세-23세(46.7%)와 24세-29세(63%)는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각 46.7%, 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에 대한 필요성(30.8%→46.7%→63.0%),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7.7%→15.1%→37.0%),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0%→11.6%→14.8%)는 연령이 많은 집단으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사회적응기술훈련(61.5%→45.7%→22.2%), 주택관리기술(30.8%→20.6%→18.5%)은 연령이 많은 집단으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47.8%)와 농어촌(67.6%)은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는 사회적응기술훈련(58.0%)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8〉 위 프로그램 중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복수응답)

구분	위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복수응답)													전체	
	진로지도 및 관련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심리,적성,자립능력 검사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	퇴소 선배에 의한 자립지도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	일상생활 관리훈련	인간관계 훈련	사회적응 기술훈련	사회지지 및 여가활동 이용	건강관리	주택관리 기술	예비부모 교육		
성별	남자	86 (83.5)	48 (46.6)	55 (53.4)	56 (54.4)	35 (34.0)	22 (21.4)	55 (53.4)	43 (41.7)	42 (40.8)	35 (34.0)	59 (37.3)	19 (18.4)	2 (1.9)	557 (520.8)
	여자	102 (82.3)	49 (39.5)	73 (58.9)	71 (57.3)	34 (27.4)	10 (8.1)	62 (50.0)	46 (37.1)	48 (38.7)	43 (34.7)	65 (52.4)	15 (12.1)	3 (2.4)	621 (500.9)
나이	17세 이하	4 (30.8)	5 (38.5)	4 (30.8)	1 (7.7)	2 (15.4)	0 (.0)	4 (30.8)	3 (23.1)	8 (61.5)	0 (.0)	2 (15.4)	4 (30.8)	0 (.0)	37 (284.8)
	18세-23세	93 (46.7)	77 (38.7)	49 (24.6)	30 (15.1)	16 (8.0)	23 (11.6)	27 (13.6)	69 (34.7)	91 (45.7)	17 (8.5)	44 (22.1)	41 (20.6)	1 (.5)	578 (290.3)
	24세-29세	17 (63.0)	8 (29.6)	8 (29.6)	10 (37.0)	1 (3.7)	4 (14.8)	6 (22.2)	9 (33.3)	6 (22.2)	1 (3.7)	4 (14.8)	5 (18.5)	0 (.0)	79 (292.4)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 도시	65 (47.8)	48 (35.3)	36 (26.5)	26 (19.1)	12 (8.8)	17 (12.5)	17 (12.5)	45 (33.1)	52 (38.2)	12 (8.8)	24 (17.6)	35 (25.7)	1 (.7)	390 (286.6)
	중소도시	26 (37.7)	27 (39.1)	17 (24.6)	9 (13.0)	6 (8.7)	8 (11.6)	14 (20.3)	29 (42.0)	40 (58.0)	0 (.0)	13 (18.8)	13 (18.8)	0 (.0)	202 (292.6)
	농 어촌	25 (67.6)	15 (40.5)	10 (27.0)	7 (18.9)	1 (2.7)	3 (8.1)	6 (16.2)	7 (18.9)	14 (37.8)	6 (16.2)	13 (35.1)	4 (10.8)	0 (.0)	111 (299.8)
총계	116 (47.9)	90 (37.2)	63 (26.0)	42 (17.4)	19 (7.9)	28 (11.6)	37 (15.3)	81 (33.5)	106 (43.8)	18 (7.4)	50 (20.7)	52 (21.5)	1 (.4)	703 (290.5)	

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소비경제교육(37.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능력인성개발(10.9%), 자립지도(9.4%), 살림 사는 법(6.3%), 직장체험(6.3%), 사회적응기술 훈련(6.3%), 예체능(4.7%), 건강관리(3.1%), 요리법(1.6%), 주거문제(3.1%), 책임성프로그램(3.1%), 예절교육(3.1%), 스스로 벌여 필요한 물품을 장만하는 능력(1.6%), 직업훈련(1.6%), 미용관리(1.6%) 순이었다. 성별(남 39.3%, 여 36.1%), 나이별(17세이하 25%, 18세-23세 37.3%, 24세-29세 50.0%)로 관계없이 합리적인 소비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 합리적인 소비경제교육(55.0%)이, 중소도시의 경우 자립지도(22.2%)가 농어촌의 경우 책임성프로그램(33.3%)이 가장 필요한 기타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9> 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분	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전체	x ²	
	건강관리	요리법	합리적인 소비경제교육	살림사는 법	주거문제	능력/인성 개발	예체능	직장 체험	예절 교육	스스로 벌여필요 물품장만	사회적응 기술훈련	자립 지도	직업훈련	미용관리	책임성 프로그램			
성별	남자	1 (3.6)	0 (.0)	11 (38.3)	2 (7.1)	2 (7.1)	2 (7.1)	2 (7.1)	3 (10.7)	0 (.0)	1 (3.6)	1 (3.6)	2 (7.1)	0 (.0)	0 (.0)	1 (3.6)	28 (100.0)	11.634
	여자	1 (2.8)	1 (2.8)	13 (36.1)	2 (5.6)	0 (.0)	5 (13.9)	1 (2.8)	1 (2.8)	2 (5.6)	0 (.0)	3 (8.3)	4 (11.1)	1 (2.8)	1 (2.8)	1 (2.8)	36 (100.0)	
나이	17세 이하	0 (.0)	0 (.0)	1 (25.0)	0 (.0)	0 (.0)	0 (.0)	1 (25.0)	1 (25.0)	0 (.0)	0 (.0)	0 (.0)	0 (.0)	0 (.0)	1 (25.0)	0 (.0)	4 (100.0)	30.292
	18세-23세	1 (2.0)	1 (2.0)	19 (37.3)	4 (7.8)	2 (3.9)	6 (11.8)	2 (3.9)	2 (3.9)	2 (3.9)	1 (2.0)	3 (5.9)	6 (11.8)	1 (2.0)	0 (.0)	1 (2.0)	51 (100.0)	
	24세-29세	0 (.0)	0 (.0)	4 (50.0)	0 (.0)	0 (.0)	1 (12.5)	0 (.0)	1 (12.5)	0 (.0)	0 (.0)	1 (12.5)	0 (.0)	0 (.0)	0 (.0)	1 (12.5)	8 (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 도시	0 (.0)	0 (.0)	22 (55.0)	2 (5.0)	2 (5.0)	5 (12.5)	1 (2.5)	1 (2.5)	0 (.0)	1 (2.5)	3 (7.5)	1 (2.5)	1 (2.5)	1 (2.5)	0 (.0)	40 (100.0)	56.783 **
	중소 도시	2 (11.1)	1 (5.6)	2 (11.1)	1 (5.6)	0 (.0)	2 (11.1)	1 (5.6)	2 (11.1)	2 (11.1)	0 (.0)	1 (5.6)	4 (22.2)	0 (.0)	0 (.0)	0 (.0)	18 (100.0)	
	농 어촌	0 (.0)	0 (.0)	0 (.0)	1 (16.7)	0 (.0)	0 (.0)	1 (16.7)	1 (16.7)	0 (.0)	0 (.0)	0 (.0)	1 (16.7)	0 (.0)	0 (.0)	2 (33.3)	6 (100.0)	
총계	2 (3.1)	1 (1.6)	24 (37.5)	4 (6.3)	2 (3.1)	7 (10.9)	3 (4.7)	4 (6.3)	2 (3.1)	2 (3.1)	1 (1.6)	4 (6.3)	6 (9.4)	1 (1.6)	1 (1.6)	2 (3.1)	64 (100)	

*<.05, **<.01, ***<.001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²⁷⁾를 살펴보면 평균 3.23점(최소 1, 최대 5)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수준별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2.0%, 만족하지 않음 16.4%, 보통 43.6%, 만족함 32.8%, 매우 만족함 5.2%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농어촌(3.62점)에 살고 있는 경우 대도시(3.11점)에 살고 있는 경우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14	113	.895	-1.455	-
	여자	3.30	137	.817		
나이	17세이하	3.13	15	.743	.126	-
	18세-23세	3.23	205	.865		
	24세-29세	3.19	27	.834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3.11	141	.939	5.612**	A
	중소도시	3.26	72	.692		A B
	농어촌	3.62	37	.681		B
총계	3.23	250	.855			

*<.05, **<.01, ***<.001

시설에 오기전 경험을 부모님과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살펴보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한 경우가 55.1%,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집을 여기저기 옮겨다닌 경우가 32.6%, 친형제와 떨어져서 생활한 경우가 24.7%,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36.0%,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10.7%,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가 67.9%, 부모님 중 한 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신 경우가 5.4%, 부모님 중 한 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오랫동안 계신 경우가 12.3%,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을 나가신 경우가 54.3%, 부모님 중 한 분이 자신을 때리신 경우가 26.0%였다.

27)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표 IV-11〉 시설에 오기전 경험

구분	시설에 오기 전 경험(부모님과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전체
	그렇다	아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102(55.1)	83(44.9)	185(100.0)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59(32.6)	122(67.4)	181(100.0)
친형제와 떨어져서 생활하였다.	42(24.7)	128(75.3)	170(100.0)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62(36.0)	110(64.0)	172(100.0)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18(10.7)	151(89.3)	169(100.0)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125(67.9)	59(32.1)	184(100.0)
부모님 중 한 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9(5.4)	158(94.6)	167(100.0)
부모님 중 한 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다.	21(12.3)	150(87.7)	171(100.0)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을 나가셨다.	95(54.3)	80(45.7)	175(100.0)
부모님 중 한 분이 나를 때리셨다.	45(26.0)	128(74.0)	173(100.0)

2) 일상 및 가족생활영역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공동생활(43.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자(26.6%), 동성친구와 함께(9.7%), 형제 혹은 자매와 함께(6.9%), 부모님과 함께(6.5%), 퇴소한 친구와 함께(2.0%), 아동보호시설(1.6%), 친척과 함께(1.6%), 이성친구와 함께(1.2%), 배우자와 함께(0.8%) 순으로 나타났다²⁸⁾.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공동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50.4%)의 경우에 남자(34.5%)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남녀 모두 혼자 사는 경우가 두 번째로는 많았으나 남자(32.7%)가 여자(21.5%)보다 혼자 사는 비율

28)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퇴소후 기준아동양육시설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는 표집을 하기가 어려웠다. 아동양육시설에 협조를 구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타지로 떠나지 않고 아동양육시설 근처에서 아동양육시설 측이 마련해준 공동거주지에 거주하는 퇴소청(소)년의 상대적 표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 번째로는 남자는 동성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15.9%), 여자는 형제 혹은 자매(9.6%)와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의 경우 공동생활(60.0%)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8세-23세는 공동생활(43.8%)이 가장 많고 다음이 혼자(27.1%)순이었다. 24세-29세는 혼자 사는 경우(37.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동생활(25.9%)순이었다.

<표 IV-1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구분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전체	z2	
	혼자	형제 혹은 자매와 함께	동성친구와 함께	이성친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친척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공동생활	퇴소한 친구와 함께	아동보호 시설			
성별	남자	37 (32.7)	4 (3.5)	18 (15.9)	1 (.9)	6 (5.3)	2 (1.8)	1 (.9)	39 (34.5)	3 (2.7)	2 (1.8)	113 (100.0)	19.328*
	여자	29 (21.5)	13 (9.6)	6 (4.4)	2 (1.5)	10 (7.4)	2 (1.5)	1 (.7)	68 (50.4)	2 (1.5)	2 (1.5)	135 (100.0)	
나이	17세이하	1 (6.7)	1 (6.7)	0 (.0)	0 (.0)	1 (6.7)	0 (.0)	0 (.0)	9 (60.0)	0 (.0)	3 (20.0)	15 (100.0)	178.800 ***
	18세-23세	55 (27.1)	10 (4.9)	23 (11.3)	3 (1.5)	12 (5.9)	4 (2.0)	1 (.5)	89 (43.8)	5 (2.5)	1 (.5)	203 (100.0)	
	24세-29세	10 (37.0)	6 (22.2)	1 (3.7)	0 (.0)	3 (11.1)	0 (.0)	0 (.0)	7 (25.9)	0 (.0)	0 (.0)	27 (100.0)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34 (24.1)	13 (9.2)	15 (10.6)	0 (.0)	11 (7.8)	1 (.7)	1 (.7)	63 (44.7)	3 (2.1)	0 (.0)	141 (100.0)	25.619
	중소도시	23 (32.9)	3 (4.3)	5 (7.1)	3 (4.3)	5 (7.1)	2 (2.9)	1 (1.4)	25 (35.7)	1 (1.4)	2 (2.9)	70 (100.0)	
	농어촌	9 (24.3)	1 (2.7)	4 (10.8)	0 (.0)	0 (.0)	1 (2.7)	0 (.0)	19 (51.4)	1 (2.7)	2 (5.4)	37 (100.0)	
총계	66 (26.6)	17 (6.9)	24 (9.7)	3 (1.2)	16 (6.5)	4 (1.6)	2 (0.8)	107 (43.1)	5 (2.0)	4 (1.6)	248 (100.0)		

*<.05, **<.01, ***<.001

위탁부모, 후원자 유무를 살펴보면 위탁부모, 후원자가 있는 경우가 32.8%였으며 없는 경우가 67.2%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나이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의 경우 대부분(80.0%)이 위탁부모나 후원자가 있는 반면 18세-23세(66.8%), 24세-29세(96.3%)는 대부분이 위탁부모나 후원자가 없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26.8%, 중소도시의 31.0%, 농어촌의 59.5%가 위탁부모나 후원자가 있어 농어촌으로 갈수록 위탁부모나 후원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13〉 위탁부모, 후원자 유무

구분	위탁부모, 후원자 유무		전체	χ^2	
	예	아니오			
성별	남자	35(30.4)	80(69.6)	115(100.0)	.541
	여자	47(34.8)	88(65.2)		
나이	17세이하	12(80.0)	3(20.0)	15(100.0)	26.087***
	18세-23세	68(33.2)	137(66.8)	205(100.0)	
	24세-29세	1(3.7)	26(96.3)	27(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38(26.8)	104(73.2)	142(100.0)	14.386**
	중소도시	22(31.0)	49(69.0)	71(100.0)	
	농어촌	22(59.5)	15(40.5)	37(100.0)	
	총계	82(32.8)	168(67.2)	250(100.0)	

*<.05, **<.01, ***<.001

현재 친부모 유무를 살펴보면 친부모가 계신 경우가 59.7%였으며 안 계신 경우가 27.4%, 모르는 경우가 12.9%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 현재 친부모 유무

구분	현재 친부모 유무			전체	χ^2	
	예	아니오	모름			
성별	남자	66(57.9)	30(26.3)	18(15.8)	114(100.0)	1.568
	여자	82(61.2)	38(28.4)	14(10.4)		
나이	17세이하	10(66.7)	3(20.0)	2(13.3)	15(100.0)	1.788
	18세-23세	120(58.5)	57(27.8)	28(13.7)	205(100.0)	
	24세-29세	16(64.0)	7(28.0)	2(8.0)	25(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78(55.7)	42(30.0)	20(14.3)	140(100.0)	3.774
	중소도시	45(63.4)	16(22.5)	10(14.1)	71(100.0)	
	농어촌	25(67.6)	10(27.0)	2(5.4)	37(100.0)	
	총계	148(59.7)	68(27.4)	32(12.9)	248(100.0)	

*<.05, **<.01, ***<.001

친부모가 있는 경우 누가 계시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친부만 계신 경우가 35.1%, 친모만 계신 경우가 32.4%, 두 분 다 계시는 경우가 32.4%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5> 친부모가 있는 경우, 누가 계시는지

구분		친부모가 있는 경우, 누가 계시는지			전체	χ^2
		친부만계심	친모만 계심	두분 다 계심		
성별	남자	26(40.0)	22(33.8)	17(26.2)	65(100.0)	2.261
	여자	26(31.3)	26(31.3)	31(37.3)	83(100.0)	
나이	17세이하	6(60.0)	2(20.0)	2(20.0)	10(100.0)	8.722
	18세-23세	38(31.7)	39(32.5)	43(35.8)	120(100.0)	
	24세-29세	8(50.0)	6(37.5)	2(12.5)	16(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28(36.4)	27(35.1)	22(28.6)	77(100.0)	5.561
	중소도시	12(26.1)	17(37.0)	17(37.0)	46(100.0)	
	농어촌	12(48.0)	4(16.0)	9(36.0)	25(100.0)	
총계		52(35.1)	48(32.4)	48(32.4)	148(100.0)	

*<.05, **<.01, ***<.001

친부모와 연락(만나는 것 포함)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개월에 1-2번(14.9%), 거의 매일(13.5%), 3개월에 1-2번(10.8%), 거의 매주(9.5%), 1년에 1번 이하(8.1%), 6개월에 1-2번(6.8%),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는 경우(2.0%), 같이 거주하는 경우(1.4%)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6> 친부모와 연락(만나는 것 포함) 빈도

구분		친부모와 연락(만나는 것 포함) 빈도									전체	χ ²
		거의 하지 않음	1년에 1번이 하	6개월 에 1-2번	3개월 에 1-2번	1개월 에 1-2번	거의 매주	거의 매일	아버지 와는 연락하 지 않음	같이 거주		
성별	남자	20 (30.9)	6 (9.2)	7 (10.8)	9 (13.8)	9 (13.8)	8 (12.3)	5 (7.7)	1 (1.5)	0 (.0)	65 (100.0)	1.517
	여자	29 (34.9)	6 (7.2)	3 (3.6)	7 (8.4)	13 (15.7)	6 (7.2)	15 (18.1)	2 (2.4)	2 (2.4)	83 (100.0)	
나이	17세이하	3 (33.3)	0 (.0)	0 (.0)	0 (.0)	4 (44.4)	1 (11.1)	1 (11.1)	0 (.0)	0 (.0)	9 (100.0)	25.805
	18세-23세	39 (32.3)	11 (9.1)	8 (6.6)	16 (13.2)	16 (13.2)	12 (9.9)	15 (12.4)	3 (2.5)	1 (.8)	121 (100.0)	
	24세-29세	7 (43.8)	1 (6.3)	2 (12.5)	0 (.0)	1 (6.3)	1 (6.3)	3 (18.8)	0 (.0)	1 (6.3)	16 (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22 (28.2)	9 (11.5)	4 (5.1)	6 (7.7)	11 (14.1)	8 (10.3)	15 (19.2)	1 (1.3)	2 (2.6)	78 (100.0)	22.008
	중소도시	17 (37.7)	3 (6.7)	4 (8.9)	7 (15.6)	5 (11.1)	2 (4.4)	5 (11.1)	2 (4.4)	0 (.0)	45 (100.0)	
	농어촌	10 (40.0)	0 (.0)	2 (8.0)	3 (12.0)	6 (24.0)	4 (16.0)	0 (.0)	0 (.0)	0 (.0)	25 (100.0)	
총계		49 (33.1)	12 (8.1)	10 (6.8)	16 (10.8)	22 (14.9)	14 (9.5)	20 (13.5)	3 (2.0)	2 (1.4)	148 (100.0)	

*<.05, **<.01, ***<.001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 만족도(29)를 살펴보면 평균 2.77 점(최소 1, 최대 5)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준별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17.2%, 만족하지 않음 22.1%, 보통 35.9%, 만족함 16.6%, 매우 만족함 8.3%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9)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표 IV-17〉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구분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2.69	65	1.074	-.680	-
	여자	2.82	80	1.240		
나이	17세이하	2.90	10	1.197	.334	-
	18세-23세	2.72	117	1.151		
	24세-29세	2.94	16	1.237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2.81	77	1.298	1.028	-
	중소도시	2.59	46	1.087		
	농어촌	3.00	22	.756		
총계		2.77	145	1.167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담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30.3%),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19.7%), 형제 혹은 자매(16.0%), 혼자(14.8%), 기숙사·자립생활관·그룹홈 등의 선생님(9.4%), 부모님(7.8%), 친척(2.5%), 배우자(2.9%), 교회사람들(0.4%), 학교친구(0.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0.9%) 여자는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33.6%)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38.5%)와 24세-29세(44.4%)는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8세-23세는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36.8%)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34.0%)와 농어촌(51.4%)는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에게 상의하는 경우가 중소도시의 경우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34.8%)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18〉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담하는 사람(복수응답)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담하는 사람(복수응답)										전체	
		혼자	형제 혹은 자매와 함께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부모님	친척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기숙사, 자립생활 관.그룹 홈 등의 선생님	시설의 원장,사 무국장, 생활지도 원 선생님	교회사람 들		학교친구
성별	남자	21 (19.1)	9 (8.2)	29 (26.4)	24 (21.8)	4 (3.6)	3 (2.7)	6 (5.5)	11 (10.0)	45 (40.9)	1 (0.9)	0 (.0)	153 (139.1)
	여자	15 (11.2)	30 (22.4)	45 (33.6)	24 (17.9)	15 (11.2)	3 (2.2)	1 (.7)	12 (9.0)	43 (32.0)	0 (.0)	1 (.7)	189 (140.9)
나이	17세 이하	2 (15.4)	2 (15.4)	5 (38.5)	2 (15.4)	1 (7.7)	0 (.0)	0 (.0)	0 (.0)	4 (30.8)	0 (.0)	0 (.0)	16 (123.2)
	18세- 23세	28 (13.9)	32 (15.9)	57 (28.4)	45 (22.4)	16 (8.0)	6 (3.0)	3 (1.5)	22 (10.9)	74 (36.8)	1 (.5)	1 (.5)	285 (141.8)
	24세- 29세	6 (22.2)	4 (14.8)	12 (44.4)	1 (3.7)	1 (3.7)	0 (.0)	3 (11.1)	1 (3.7)	8 (29.6)	0 (.0)	0 (.0)	36 (133.2)
현재살고 있는지역	대도시	19 (13.8)	23 (16.7)	41 (29.7)	22 (15.9)	12 (8.7)	2 (1.4)	3 (2.2)	20 (14.5)	47 (34.0)	1 (.7)	0 (.0)	190 (137.6)
	중소 도시	11 (15.9)	15 (21.7)	24 (34.8)	19 (27.5)	5 (7.2)	3 (4.3)	1 (1.4)	3 (4.3)	22 (31.8)	0 (.0)	0 (.0)	103 (148.9)
	농어촌	6 (16.2)	1 (2.7)	9 (24.3)	7 (18.9)	2 (5.4)	1 (2.7)	3 (8.1)	0 (.0)	19 (51.4)	0 (.0)	1 (2.7)	49 (132.4)
총계		36 (14.8)	39 (16.0)	74 (30.3)	48 (19.7)	19 (7.8)	6 (2.5)	7 (2.9)	23 (9.4)	88 (36.0)	1 (.4)	1 (.4)	342 (140.2)

지난 세 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 3가지를 살펴보면 경제적 영역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관련영역(45.7%), 심리적 영역(42.5%), 인간관계영역(35.6%), 일관련영역(26.7%), 가사생활영역(24.3%), 신체적 영역(20.2%), 기타(0.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경제적 영역(79.1%), 진로관련영역(49.1%) 순으로 여자의 경우 경제적 영역(73.7%), 심리적 영역(48.2%)순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응

답하였으며 나이별로는 17세이하의 경우 심리적 영역(64.3%), 인간관계 영역(50.0%) 순으로 18세-23세의 경우 경제적 영역(77.8%), 진로관련영역(45.8%) 순으로, 24세-29세의 경우 경제적 영역(85.2%), 진로관련영역(44.4%) 순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경제적 영역(78.7%, 80.3%, 농어촌 57.1%), 진로관련영역(41.8%, 49.3%, 농어촌 54.3%)순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9> 지난 세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 3가지(복수응답)

구분		지난 세 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 3가지(복수응답)								전체
		경제적 영역	인간관계 영역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가사생활 영역	일관련 영역	진로관련 영역	기타	
성별	남자	87 (79.1)	35 (31.8)	21 (19.1)	39 (35.5)	33 (30.0)	33 (30.0)	54 (49.1)	0 (.0)	302 (274.6)
	여자	101 (73.7)	53 (38.7)	29 (21.2)	66 (48.2)	27 (19.7)	33 (24.1)	59 (43.1)	1 (.7)	369 (269.4)
나이	17세 이하	5 (35.7)	7 (50.0)	6 (42.9)	9 (64.3)	3 (21.4)	4 (28.6)	5 (35.7)	0 (.0)	39 (278.6)
	18세-23세	158 (77.8)	69 (34.0)	38 (18.7)	85 (41.9)	51 (25.1)	54 (26.6)	93 (45.8)	1 (.5)	549 (270.4)
	24세-29세	23 (85.2)	11 (40.7)	6 (22.2)	10 (37.0)	6 (22.2)	8 (29.6)	12 (44.4)	0 (.0)	76 (281.3)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111 (78.7)	49 (34.8)	29 (20.6)	57 (40.4)	34 (24.1)	36 (25.5)	59 (41.8)	0 (.0)	375 (265.9)
	중소도시	57 (80.3)	25 (35.2)	13 (18.3)	34 (47.9)	17 (23.9)	21 (29.6)	35 (49.3)	1 (1.4)	203 (285.9)
	농어촌	20 (57.1)	14 (40.0)	8 (22.9)	14 (40.0)	9 (25.7)	9 (25.7)	19 (54.3)	0 (.0)	93 (265.7)
총계		188 (76.1)	88 (35.6)	50 (20.2)	105 (42.5)	60 (24.3)	66 (26.7)	113 (45.7)	1 (.4)	671 (271.7)

자립생활기술중 일상생활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30.5%, 부엌기구와 장비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는 10.4%, 전기코드나 플러그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33.6%였다.

〈표 IV-20〉 자립생활기술

구분		자립생활기술				전체	평균 ³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상 생활관리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안다.	3(1.2)	48(19.3)	154(61.8)	44(17.7)	249(100.0)	2.96
	부엌기구와 장비의 사용법을 안다.	2(0.8)	24(9.6)	166(66.7)	57(22.9)	249(100.0)	3.12
	전기코너나 플러그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다.	9(3.6)	75(30.2)	117(47.2)	47(19)	248(100.0)	2.81
건강관리	간병과 간단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안다.	7(2.8)	42(16.9)	157(63.1)	43(17.3)	249(100)	2.95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	9(3.6)	60(24.1)	154(61.8)	26(10.4)	249(100)	2.79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안다.	1(0.4)	14(5.7)	162(65.6)	70(28.3)	247(100)	3.22
자금관리	저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하는 방법을 안다.	7(2.8)	47(19)	160(64.5)	34(13.7)	248(100)	2.89
	세금의 종류와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을 안다.	27(10.9)	129(52)	83(33.5)	9(3.6)	248(100)	2.30
	개인신용의 중요성과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다.	20(8.1)	66(26.6)	129(52)	33(13.3)	248(100)	2.71
주거마련관리	아파트나 다른집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다.	32(13)	124(50.4)	78(31.7)	12(4.9)	246(100)	2.28
	임대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다.	41(16.5)	127(51.2)	68(27.4)	12(4.8)	248(100)	2.21
	집예약 이후의 행정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등)를 알고 있다.	43(17.3)	122(49.2)	68(27.4)	15(6)	248(100)	2.22
지역사회자원활용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1(0.4)	15(6.1)	137(55.5)	94(38.1)	247(100)	3.31
	지역사회내의 정보를 알기 위해 인터넷 사용하는 법을 안다.	2(0.8)	20(8.1)	136(54.8)	90(36.3)	248(100.0)	3.27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다.	12(4.9)	105(42.5)	113(45.7)	17(6.9)	247(100)	2.55
성교육및결혼부모교육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에 대해 알고 있다.	4(1.6)	40(16.1)	168(67.5)	37(14.9)	249(100)	2.96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3(1.2)	27(10.8)	165(66.3)	54(21.7)	249(100)	3.08
	부모의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4(1.6)	33(13.3)	153(61.4)	59(23.7)	249(100)	3.07
대인관계	효과적인 대인관계기술을 가지고 있다.	4(1.6)	72(29)	145(58.5)	27(10.9)	248(100)	2.79
	결정을 내려야 할때 신중하게 결정할 줄 안다.	5(2)	54(21.7)	163(65.5)	27(10.8)	249(100)	2.85
	시설동료, 학교친구, 직장동료 등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5(2)	56(22.5)	161(64.7)	27(10.8)	249(100)	2.84
자이성장과 사회성개발	내 성격과 나의 장점, 욕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1.2)	22(8.9)	185(74.6)	38(15.3)	248(100)	3.04
	건강한 여가활용의 중요성과 여가시간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	3(1.2)	46(18.6)	166(67.2)	32(13)	247(100)	2.92
	나는 자이존중감의 개념을 알고 있다.	3(1.2)	42(16.9)	171(69)	32(12.9)	248(100)	2.94

자립생활기술중 일상생활관리를 살펴보면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20.5%, 부엌기구와 장비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10.4%, 전기코드나 플러그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33.8%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건강관리를 살펴보면 잔병과 간단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19.7%, 스트레스를 줄여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27.7%,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6.1%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자금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저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저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경우가 21.8%, 세금의 종류와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62.9%, 개인신용의 중요성과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34.7%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주거마련관리를 살펴보면 아파트나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63.4%, 임대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67.7%, 집예약이후의 행정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66.5%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지역사회자원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등포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6.5%, 지역사회내의 정보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8.9%,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사회자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47.4%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17.7%,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12.0%, 부모의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14.9%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대인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효과적인 대인관계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30.6%, 결정을 내려야 할때 신중하게 결정할

30)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부호화한 값이다.

줄 모른다는 경우가 23.7%, 시설동료, 학교친구, 직장동료 등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24.5%였다.

자립생활기술 중 자아성장과 사회성 개발에 대해 살펴보면 내 성격과 나의 장점, 욕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경우가 10.1%, 건강한 여가활용의 중요성과 여가시간 사용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경우가 19.8%,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18.1%였다.

<표 IV-21> 자립생활기술 영역별 비교

구분	자립생활기술 영역별 비교		
	평균 ³¹⁾	빈도(명)	표준편차
일상생활관리	2.96	248	.520
건강관리	2.98	247	.480
자금관리	2.63	246	.560
주거마련관리	2.23	245	.667
지역사회자원활용	3.04	245	.457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	3.03	249	.545
대인관계	2.82	248	.528
자아성장과 사회성 개발	2.96	246	.473
총계	2.83	237	.375

자립생활기술의 총평균³²⁾은 2.83점(최소 1점, 최대 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관리 2.96점, 건강관리 2.98점, 자금관리 2.63점, 주거마련관리 2.23점, 지역사회자원활용 3.04점,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 3.03점, 대인관계 2.82점, 자아성장과 사회적 개발 2.96점으로 지역사회자원활용이 3.0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3.03점), 건강관리(2.98점), 일상생활관리(2.96점), 자아성장과 사회적 개발(2.96점), 대인관계(2.82점), 자금관리(2.63점), 주거마련관리(2.23점) 순이었다. 특히 자금관리(2.63점)과 주거마련관리

31)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부호화한 값이다.

32)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부호화한 값이다.

(2.23점)와 관련한 자립생활기술이 낮아 이 부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현재 학교재학여부를 살펴보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49.2%, 아닌 경우가 50.8%였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연령이 많은 집단인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적었으며(92.9%, 50.7%, 11.5%)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42.1%)보다 중소도시(56.3%), 그보다 농어촌(62.2%)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비율이 많았다.

<표 IV-22> 현재 학교 재학 여부

구분		현재 학교 재학 여부		전체	χ ²
		예	아니오		
성별	남자	62(54.4)	52(45.6)	114(100.0)	2.276
	여자	60(44.8)	74(55.2)	134(100.0)	
나이	17세이하	13(92.9)	1(7.1)	14(100.0)	26.584***
	18세-23세	104(50.7)	101(49.3)	205(100.0)	
	24세-29세	3(11.5)	23(88.5)	26(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59(42.1)	81(57.9)	140(100.0)	6.724*
	중소도시	40(56.3)	31(43.7)	71(100.0)	
	농어촌	23(62.2)	14(37.8)	37(100.0)	
총계		122(49.2)	126(50.8)	248(100.0)	

*<.05, **<.01, ***<.001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학교의 종류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학교(37.7%), 실업계 고등학교(12.3%), 중학교(4.9%), 노동부인가 직업전문학교(2.5%), 대학원(1.6%), 인문계고등학교(0.8%), 사이버대학(0.8%), 보육교사교육원(0.8%) 순이었다.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의 경우 61.5%가 실업계고등학교, 38.5%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18세-23세의 경우 43.3%가 전문대학교, 44.2%가 4년제 대학교에 24세-29세의 경우 대학원, 중학교, 사이버대학에 각 33.3%씩 재학하고 있었다.

〈표 IV-23〉 재학학교의 종류

구분		재학학교의 종류								전체	χ ²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노동부인가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대학교	대학원	중학교	사이버대학			보육교사교육원
성별	남자	11 (18.0)	1 (1.6)	2 (3.3)	21 (34.4)	23 (37.7)	1 (1.6)	1 (1.6)	1 (1.6)	0 (.0)	61 (100.0)	9.636
	여자	4 (6.6)	0 (.0)	1 (1.6)	25 (41.0)	24 (39.3)	1 (1.6)	5 (8.2)	0 (.0)	1 (1.6)	61 (100.0)	
나이	17세이하	8 (61.5)	0 (.0)	0 (.0)	0 (.0)	0 (.0)	0 (.0)	5 (38.5)	0 (.0)	0 (.0)	13 (100.0)	139.628 ***
	18세-23세	7 (6.7)	1 (1.0)	3 (2.9)	45 (43.3)	46 (44.2)	1 (1.0)	0 (.0)	0 (.0)	1 (1.0)	104 (100.0)	
	24세-29세	0 (.0)	0 (.0)	0 (.0)	0 (.0)	0 (.0)	1 (33.3)	1 (33.3)	1 (33.3)	0 (.0)	3 (100.0)	
현재살고 있는지역	대도시	5 (8.5)	1 (1.7)	1 (1.7)	24 (40.7)	22 (37.3)	1 (1.7)	4 (6.8)	0 (.0)	1 (1.7)	59 (100.0)	15.931
	중소도시	4 (10.0)	0 (.0)	2 (5.0)	16 (40.0)	15 (37.5)	1 (2.5)	2 (5.0)	0 (.0)	0 (.0)	40 (100.0)	
	농어촌	6 (26.1)	0 (.0)	0 (.0)	6 (26.1)	10 (43.5)	0 (.0)	0 (.0)	1 (4.3)	0 (.0)	23 (100.0)	
총계		15 (12.3)	1 (.8)	3 (2.5)	46 (37.7)	47 (38.5)	2 (1.6)	6 (4.9)	1 (.8)	1 (.8)	122 (100.0)	

*<.05, **<.01, ***<.001

학교생활만족도³³⁾를 살펴보면 평균 3.46점(최소 1점, 최대 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다. 수준별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0.8%, 만족하지 않음 9.9%, 보통 40.5%, 만족함 39.7%, 매우 만족함 9.1%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3)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표 IV-24〉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학교생활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44	62	.842	-.371	-
	여자	3.49	59	.817		
나이	17세이하	3.29	14	.994	.426	-
	18세-23세	3.48	102	.793		
	24세-29세	3.67	3	1.528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3.42	60	.889	.878	-
	중소도시	3.61	38	.718		
	농어촌	3.35	23	.832		
총계		3.46	121	.827		

*<.05, **<.01, ***<.001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학비라고 응답한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비(22.5%), 어려움이 없다(11.7%), 원거리 통학(9.2%), 수업내용의 어려움(8.3%),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5.0%), 일과의 병행(4.2%), 가사부담(2.5%), 학업과 생활에 의한 피로와 시간부족(1.7%), 취업준비(0.8%)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5〉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구분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전체	χ ²	
	어려움이 없음	학비	일과의 병행	원거리 통학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생활비	수업 내용의 어려움	가사 부담	취업 준비	학업과 생활에 의한 피로와 시간부족			
성별	남자	9 (14.8)	18 (29.5)	3 (4.9)	7 (11.5)	2 (3.3)	14 (23.0)	5 (8.2)	2 (3.3)	0 (.0)	1 (1.6)	61 (100.0)	4.776
	여자	5 (8.5)	23 (39.0)	2 (3.4)	4 (6.8)	4 (6.8)	13 (22.0)	5 (8.5)	1 (1.7)	1 (1.7)	1 (1.7)	59 (100.0)	
나이	17세 이하	4 (30.8)	0 (.0)	0 (.0)	2 (15.4)	2 (15.4)	1 (7.7)	3 (23.1)	0 (.0)	0 (.0)	1 (7.7)	13 (100.0)	27.561
	18세-23세	10 (9.8)	37 (36.3)	5 (4.9)	9 (8.8)	4 (3.9)	25 (24.5)	7 (6.9)	3 (2.9)	1 (1.0)	1 (1.0)	102 (100.0)	
	24세-29세	0 (.0)	3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9 (15.0)	18 (30.0)	3 (5.0)	6 (10.0)	3 (5.0)	12 (20.0)	5 (8.3)	2 (3.3)	0 (.0)	2 (3.3)	60 (100.0)	14.905
	중소도시	2 (5.3)	12 (31.6)	1 (2.6)	3 (7.9)	2 (5.3)	13 (34.2)	4 (10.5)	0 (.0)	1 (2.6)	0 (.0)	38 (100.0)	
	농어촌	3 (13.6)	11 (50.0)	1 (4.5)	2 (9.1)	1 (4.5)	2 (9.1)	1 (4.5)	1 (4.5)	0 (.0)	0 (.0)	22 (100.0)	
총계	14 (11.7)	41 (34.2)	5 (4.2)	11 (9.2)	6 (5.0)	27 (22.5)	10 (8.3)	3 (2.5)	1 (0.8)	2 (1.7)	120 (100)		

*<.05, **<.01, ***<.001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2.5%,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7.5%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6>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전체	χ^2
		예	아니오		
성별	남자	35(33.3)	70(66.7)	105(100.0)	.068
	여자	39(31.7)	84(68.3)	123(100.0)	
나이	17세이하	8(57.1)	6(42.9)	14(100.0)	6.841
	18세-23세	59(31.6)	128(68.4)	187(100.0)	
	24세-29세	6(24.0)	19(76.0)	25(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43(33.3)	86(66.7)	129(100.0)	2.402
	중소도시	17(26.2)	48(73.8)	65(100.0)	
	농어촌	14(41.2)	20(58.8)	34(100.0)	
총계		74(32.5)	154(67.5)	228(100.0)	

*<.05, **<.01, ***<.001

상급학교 진학계획이 있는 경우 진학이유(복수응답)는 꿈을 이루기 위해가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더 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35.6%), 높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9.6%), 졸업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6.8%), 진학시 필요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어서(2.7%), 전문성 신장(2.7%) 순이었다. 성별, 나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유

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더 넓은 직업선택기회를 갖기 위해 진학한다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현저히 더 높은 반면 높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학하려고 한다는 응답은 남자의 경우 현저히 높았다.

<표 IV-27>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복수응답)						전체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	졸업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높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학시 필요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전문성 신장	
성별	남자	14(41.2)	10(29.4)	3(8.8)	5(14.8)	1(2.9)	1(2.9)	34(100.0)
	여자	21(53.8)	16(41.0)	2(5.1)	2(5.1)	1(2.6)	1(2.6)	39(110.2)
총계		35(48.9)	26(35.6)	5(6.8)	7(9.6)	2(2.7)	2(2.7)	73(105.3)
나이	17세이하	6(75.0)	1(12.5)	1(12.5)	0(0)	0(0)	0(0)	8(100.0)
	18세-23세	24(41.4)	24(41.4)	4(6.9)	6(10.3)	2(3.4)	2(3.4)	70(106.4)
	24세-29세	4(66.7)	1(16.7)	0(0)	1(16.7)	0(0)	0(0)	6(100.1)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21(50.0)	13(31.0)	3(7.1)	3(7.1)	0(0)	2(4.8)	42(100)
	중소도시	7(41.2)	10(58.8)	1(5.9)	2(11.8)	1(5.9)	0(0)	21(123.6)
	농어촌	7(50.0)	3(21.4)	1(7.1)	2(14.3)	1(7.1)	0(0)	14(100.0)
총계		35(47.9)	26(35.6)	5(6.8)	7(9.6)	2(2.7)	2(2.7)	77(105.5)

상급학교에 진학이후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을 살펴보면 대학수업료가 7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비(34.2%), 학습능력에 대한 부담(20.5%), 주거문제(12.3%), 지원해주는 사람이 안게 되는 부담(5.5%),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2.7%)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8〉 상급학교에 진학이후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구분		상급학교 진학이후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전체
		없음	대학 수업료	생활비	주거문제	학습능력에 대한 부담	지원해주는 사람이 안게 되는 부담	
성별	남자	0(0)	24(70.6)	10(29.4)	3(8.8)	6(17.6)	3(8.8)	46(135.2)
	여자	2(5.1)	29(74.4)	15(38.5)	6(15.4)	9(23.1)	1(2.6)	62(159.1)
나이	17세이하	2(25.0)	3(37.5)	1(12.5)	1(12.5)	1(12.5)	1(12.5)	9(112.5)
	18세-23세	0(0)	44(75.9)	24(41.4)	8(13.8)	13(22.4)	3(5.2)	92(158.7)
	24세-29세	0(0)	6(100.0)	0(0)	0(0)	0(0)	0(0)	6(1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1(2.4)	29(70.7)	15(36.6)	7(17.1)	10(24.4)	2(4.9)	64(156.1)
	중소도시	0(0)	14(77.8)	6(33.3)	1(5.6)	3(16.7)	1(5.6)	25(139)
	농어촌	1(7.1)	10(71.4)	4(28.6)	1(7.1)	2(14.3)	1(7.1)	19(135.6)
총계		2(2.7)	53(72.6)	25(34.2)	9(12.3)	15(20.5)	4(5.5)	108(147.9)

친구(선후배포함) 관계만족도는 평균 3.68점³⁴⁾(최소값 1, 최대값 5)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수준별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6.2%, 보통이 33.6%, 만족하는 경우가 60.2%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9〉 친구(선후배포함) 관계만족도

구분		친구(선후배포함) 관계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68	114	.896	.144	-
	여자	3.67	127	.713		
나이	17세이하	3.64	14	.745	.448	-
	18세-23세	3.71	198	.822		
	24세-29세	3.56	27	.641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70	138	.805	.213	-
	중소도시	3.66	67	.808		
	농어촌	3.61	36	.803		
총계		3.68	241	.803		

*<.05, **<.01, ***<.001

34)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4) 직장 영역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경우가 87.2%, 없는 경우가 12.8%를 차지하였다.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많은 집단으로 갈수록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0>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구분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전체	χ^2	
	예	아니오			
성별	남자	96(85.0)	17(15.0)	113(100.0)	.930
	여자	122(89.1)	15(10.9)	137(100.0)	
나이	17세이하	5(33.3)	10(66.7)	15(100.0)	43.589***
	18세-23세	183(89.3)	22(10.7)	205(100.0)	
	24세-29세	27(100.0)	0(0)	27(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128(90.8)	13(9.2)	141(100.0)	3.825
	중소도시	60(83.3)	12(16.7)	72(100.0)	
	농어촌	30(81.1)	7(18.9)	37(100.0)	
총계	218(87.2)	32(12.8)	250(100)		

*<.05, **<.01, ***<.001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번이상 20.0%, 1번 19.5%, 3번 16.0%, 2번 14.0%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1>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경험 횟수

구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경험 횟수					전체	χ^2	
	한번도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성별	남자	26(29.2)	19(21.3)	10(11.2)	15(16.9)	19(21.3)	89(100.0)	1.403
	여자	34(30.9)	20(18.2)	18(16.4)	17(15.5)	21(19.1)	110(100.0)	
나이	17세이하	3(60.0)	0(0)	0(0)	0(0)	2(40.0)	5(100.0)	14.369
	18세-23세	55(33.3)	33(20.0)	23(13.9)	23(13.9)	31(18.8)	165(100.0)	
	24세-29세	2(7.4)	6(22.2)	5(18.5)	8(29.6)	6(22.2)	27(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2(27.6)	22(19.0)	16(13.8)	22(19.0)	24(20.7)	116(100.0)	4.491
	중소도시	20(35.1)	10(17.5)	8(14.0)	6(10.5)	13(22.8)	57(100.0)	
	농어촌	8(30.8)	7(26.9)	4(15.4)	4(15.4)	3(11.5)	26(100.0)	
총계	61(30.5)	39(19.5)	28(14.0)	32(16.0)	40(20.0)	200(100.0)		

*<.05, **<.01, ***<.001

이직한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22.1%), 일이 적성 및 흥미에 맞지 않아서(21.3%), 계약기간종료로 인해(11.5%), 업무량이 과다해서(10.7%), 회사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5.7%), 회사측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4.1%), 회사의 명령이나 강압으로(1.6%), 입영문제(1.6%),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0.8%),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0.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녀(32.7%, 25.0%) 모두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나이별로는 17세이하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50.0%)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50.0%)가 반반이었으며 18세-23세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29.0%)가 가장 많았고 24세-29세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40.9%)가 가장 많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30.7%)가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33.3%)가 가장 많은 반면 농어촌은 일이 적성 및 흥미에 맞지 않아서(23.5%)가 가장 많았다.

<표 IV-32> 이직한 이유(복수응답)

구분		이직한 이유(복수 응답)											전체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이 적성 및 흥미에 맞지 않아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회사측의 차별, 편견 때문에	회사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회사의 명령이나 강압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입영문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양한 경험 쌓기 위해	
성별	남자	18 (32.7)	13 (23.6)	4 (7.3)	2 (3.6)	2 (3.6)	14 (25.5)	1 (1.8)	5 (9.1)	2 (3.6)	1 (1.8)	0 (.0)	62 (112.6)
	여자	16 (25.0)	13 (20.3)	9 (14.1)	3 (4.7)	4 (6.3)	13 (20.3)	1 (1.6)	9 (14.1)	0 (.0)	0 (.0)	1 (1.6)	69 (108)
나이	17세 이하	1 (50.0)	0 (.0)	0 (.0)	0 (.0)	0 (.0)	1 (50.0)	0 (.0)	0 (.0)	0 (.0)	0 (.0)	0 (.0)	2 (100)
	18세-23세	27 (29.0)	22 (23.7)	10 (10.8)	4 (4.3)	4 (4.3)	17 (18.3)	1 (1.1)	13 (14.0)	2 (2.2)	1 (1.1)	1 (1.1)	102 (109.9)
	24세-29세	5 (22.7)	3 (13.6)	3 (13.6)	1 (4.5)	2 (9.1)	9 (40.9)	1 (4.5)	1 (4.5)	0 (.0)	0 (.0)	0 (.0)	25 (105.21)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23 (30.7)	20 (26.7)	11 (14.7)	1 (1.3)	3 (4.0)	18 (24.0)	2 (2.7)	4 (5.3)	2 (2.7)	1 (1.3)	0 (.0)	85 (113.4)
	중소도시	9 (33.3)	2 (7.4)	1 (3.7)	2 (7.4)	2 (7.4)	6 (22.2)	0 (.0)	7 (25.9)	0 (.0)	0 (.0)	0 (.0)	29 (107.3)
	농어촌	2 (11.8)	4 (23.5)	1 (5.9)	2 (11.8)	1 (5.9)	3 (17.6)	0 (.0)	3 (17.6)	0 (.0)	0 (.0)	1 (5.9)	17 (100)
총계		36 (29.5)	26 (21.3)	13 (10.7)	5 (4.1)	7 (5.7)	27 (22.1)	2 (1.6)	14 (11.5)	2 (1.6)	1 (.8)	1 (.8)	134 (109.8)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업기술부족(20.0%), 사회적 적응력부족(16.4%), 주거해결문제(12.7%), 사회적 편견(11.5%), 학력부족(9.1%), 적성에 안맞음(0.6%)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직업기술부족(26.3%)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25.0%), 사회적 적응력 부족(19.7%)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33.7%)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16.9%), 직업기술부족(14.6%), 사회적응력부족(13.5%) 순이었다.

<표 IV-33>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

구분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						전체	χ ²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직업기술 부족	주거해결 문제	학력부족	사회적응 력부족	사회적 편견			적성에 안맞음
성별	남자	19(25.0)	20(26.3)	13(17.1)	5(6.6)	5(19.7)	4(5.3)	0(0)	76(100.0)	13.573*
	여자	30(33.7)	3(14.6)	8(9.0)	10(11.2)	2(13.5)	5(16.9)	1(1.1)	89(100.0)	
나이	17세이하	0(0)	0(0)	1(33.3)	1(33.3)	1(33.3)	0(0)	0(0)	3(100.0)	17.525
	18세-23세	40(29.6)	27(20.0)	4(10.4)	12(8.9)	25(18.5)	16(11.9)	1(7)	135(100.0)	
	24세-29세	9(36.0)	5(20.0)	6(24.0)	2(8.0)	0(0)	3(12.0)	0(0)	25(100.0)	
현재살고 있는지역	대도시	24(24.5)	18(18.4)	14(14.3)	11(11.2)	18(18.4)	12(12.2)	1(1.0)	98(100.0)	17.525
	중소도시	17(37.0)	10(21.7)	5(10.9)	3(6.5)	6(13.0)	5(10.9)	0(0)	46(100.0)	
	농어촌	8(38.1)	5(23.8)	2(9.5)	1(4.8)	3(14.3)	2(9.5)	0(0)	21(100.0)	
총계		49(29.7)	33(20.0)	21(12.7)	15(9.1)	27(16.4)	19(11.5)	1(0.6)	165(100.0)	

*<.05, **<.01, ***<.001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유무를 살펴보면 직장이 있는 경우가 53.3%, 없는 경우가 46.7%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7세이하는 7.1%, 18세-23세는 53.5%, 24세-29세는 74.1%가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34>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유무

구분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유무		전체	χ ²
		예	아니오		
성별	남자	52(47.7)	57(52.3)	109(100.0)	2.457
	여자	78(57.8)	57(42.2)	135(100.0)	
나이	17세이하	1(7.1)	13(92.9)	14(100.0)	17.544**
	18세-23세	107(53.5)	93(46.5)	200(100.0)	
	24세-29세	20(74.1)	7(25.9)	27(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79(58.1)	57(41.9)	136(100.0)	2.892
	중소도시	34(47.9)	37(52.1)	71(100.0)	
	농어촌	17(45.9)	20(54.1)	37(100.0)	
	총계	130(53.3)	114(46.7)	244(100)	

*<.05, **<.01, ***<.001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미만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이상 2년미만(23.9%), 2년이상 3년미만(11.1%), 4년이상(3.4%), 3년이상 4년미만(2.6%)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35>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일한 기간

구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일한 기간					전체	χ ²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		
성별	남자	28(59.6)	9(19.1)	6(12.8)	2(4.3)	2(4.3)	47(100.0)	1.98
	여자	41(58.6)	19(27.1)	7(10.0)	1(1.4)	2(2.9)	70(100.0)	
나이	17세이하	1(100.0)	0(0)	0(0)	0(0)	0(0)	1(100.0)	20.969
	18세-23세	62(66.0)	20(21.3)	7(7.4)	3(3.2)	2(2.1)	94(100.0)	
	24세-29세	5(25.0)	7(35.0)	6(30.0)	0(0)	2(10.0)	20(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44(62.0)	15(21.1)	8(11.3)	1(1.4)	3(4.2)	71(100.0)	4.371
	중소도시	16(51.6)	9(29.0)	3(9.7)	2(6.5)	1(3.2)	31(100.0)	
	농어촌	9(60.0)	4(26.7)	2(13.3)	0(0)	0(0)	15(100.0)	
	총계	69(59.0)	28(23.9)	13(11.1)	3(2.6)	4(3.4)	117(100.0)	

*<.05, **<.01, ***<.001

현재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서비스직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산직(18.0%), 사무직(13.1%), 사회복지 및 건강관련직(13.1%), 판매직(8.2%), 기술직(8.2%), 예능직(4.1%), 교육직(2.5%), 농업·수산업·광업(0.8%)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36> 현재 하는 일

구분		현재 하는 일									전체	χ ²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술직	사회복지 및 건강관련직	농업·수산 업·광업	예능직	교육직		
성별	남자	5(10.0)	12(24.0)	6(12.0)	13(26.0)	8(16.0)	5(10.0)	0(0)	1(2.0)	0(0)	50(100.0)	15.347
	여자	11(15.3)	10(13.9)	4(5.6)	26(36.1)	2(2.8)	11(15.3)	1(1.4)	4(5.6)	3(4.2)	72(100.0)	
나이	17세이하	0(0)	0(0)	1(100.0)	0(0)	0(0)	0(0)	0(0)	0(0)	0(0)	1(100.0)	30.037
	18세-23세	12(12.1)	20(20.2)	9(9.1)	32(32.3)	9(9.1)	10(10.1)	0(0)	4(4.0)	3(3.0)	99(100.0)	
	24세-29세	4(20.0)	2(10.0)	0(0)	6(30.0)	1(5.0)	5(25.0)	1(5.0)	1(5.0)	0(0)	20(100.0)	
현재살고 있는지역	대도시	12(15.8)	17(22.4)	5(6.6)	20(26.3)	6(7.9)	10(13.2)	1(1.3)	2(2.6)	3(3.9)	76(100.0)	16.381
	중소도시	3(10.0)	4(13.3)	4(13.3)	11(36.7)	3(10.0)	2(6.7)	0(0)	3(10.0)	0(0)	30(100.0)	
	농어촌	1(6.3)	1(6.3)	1(6.3)	8(50.0)	1(6.3)	4(25.0)	0(0)	0(0)	0(0)	16(100.0)	
총계		16(13.1)	22(18.0)	10(8.2)	39(32.0)	10(8.2)	16(13.1)	1(0.8)	5(4.1)	3(2.5)	122(100.0)	

*<.05, **<.01, ***<.001

현재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46.6%, 임시·계약직 44.1%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용직이 9.3%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나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임시직, 계약직 58.7%, 정규직 37.0%, 일용직 4.3% 순인 반면, 여자는 정규직 52.8%, 임시직, 계약직 34.7%, 일용직(12.5%)로 여자가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일용직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

<표 IV-37> 현재 고용형태

구분		현재 고용형태			전체	χ ²
		정규직	임시직,계약직	일용직		
성별	남자	17(37.0)	27(58.7)	2(4.3)	46(100.0)	7.169*
	여자	38(52.8)	25(34.7)	9(12.5)	72(100.0)	
나이	17세이하	0(0)	0(0)	0(0)	0(0)	3.549
	18세-23세	44(45.4)	42(43.3)	11(11.3)	97(100.0)	
	24세-29세	10(52.6)	9(47.4)	0(0)	19(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6(49.3)	30(41.1)	7(9.6)	73(100.0)	4.085
	중소도시	14(46.7)	15(50.0)	1(3.3)	30(100.0)	
	농어촌	5(33.3)	7(46.7)	3(20.0)	15(100.0)	
총계		55(46.6)	52(44.1)	11(9.3)	118(100.0)	

*<.05, **<.01, ***<.001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미만이 49.6%,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 47.2%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3.3%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8>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소득			전체	χ ²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성별	남자	23(45.1)	24(47.1)	4(7.8)	51(100.0)	6.002
	여자	38(52.8)	34(47.2)	0(0)	72(100.0)	
나이	17세이하	1(100.0)	0(0)	0(0)	1(100.0)	6.655
	18세-23세	52(52.0)	46(46.0)	2(2.0)	100(100.0)	
	24세-29세	7(35.0)	11(55.0)	2(10.0)	20(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9(51.3)	35(46.1)	2(2.6)	76(100.0)	1.812
	중소도시	14(45.2)	15(48.4)	2(6.5)	31(100.0)	
	농어촌	8(50.0)	8(50.0)	0(0)	16(100.0)	
총계		64(49.6)	58(47.2)	4(3.3)	126(100.0)	

*<.05, **<.01, ***<.001

현재 직업만족도는 평균³⁵⁾ 3.21점(최소값 1, 최대값 5)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척도기준별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3.2%, 만족하지 않음 14.5%, 보통 45.2%, 만족함 32.3%, 매우 만족함 4.8%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9〉 현재 직업만족도

구분		현재 직업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25	51	.868	.484	-
	여자	3.18	73	.872		
나이	17세이하	5.00	1	.	1.775	-
	18세-23세	3.18	101	.876		
	24세-29세	3.25	20	.786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3.16	76	.925	.685	-
	중소도시	3.22	32	.870		
	농어촌	3.44	16	.512		
총계		3.21	124	.867		

*<.05, **<.01, ***<.001

위에서 직업에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월급이 적어서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래발전가능성이 적어서(26.9%), 업무량이 과다해서(20.5%), 나의 적성 흥미와 맞지 않아서(15.4%) 순이었다. 성별, 나이, 현재살고 있는 지역별로 관계없이 월급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35)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표 IV-40〉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유(복수응답)

구분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유(복수응답)					전체	
		월급이 적어서	나의 적성흥미와 맞지 않아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미래발전가능성이 적어서	고객의 잦은 불만		기간제 아르바이트
성별	남자	13(40.6)	4(12.5)	4(12.5)	12(37.5)	0(0)	0(0)	33(103.1)
	여자	20(43.5)	8(17.4)	12(26.1)	9(19.6)	1(2.2)	1(2.2)	51(111)
나이	17세이하	1(100.0)	0(0)	0(0)	0(0)	0(0)	0(0)	1(100)
	18세-23세	25(39.1)	12(18.8)	13(20.3)	17(26.6)	1(1.6)	0(0)	68(106.4)
	24세-29세	6(50.0)	0(0)	3(25.0)	4(33.3)	0(0)	1(8.3)	14(116.6)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21(42.9)	7(14.3)	7(14.3)	16(32.7)	1(2.0)	1(2.0)	53(108.2)
	중소도시	8(42.1)	3(15.8)	6(31.6)	4(21.1)	0(0)	0(0)	21(110.6)
	농어촌	4(40.0)	2(20.0)	3(30.0)	1(10.0)	0(0)	0(0)	10(100)
총계		33(42.3)	12(15.4)	16(20.5)	21(26.9)	1(1.3)	1(1.3)	84(107.7)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³⁶⁾은 평균 3.2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척도기준별로는 매우 불안정함 2.6%, 불안정한 편임 18.3%, 보통 40.0%, 안정적인 편임 32.2%, 매우 안정적임 7.0%로 응답하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1〉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

구분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20	50	.990	-.266	-
	여자	3.25	65	.867		
나이	17세이하	5.00	1	.	1.609	-
	18세-23세	3.23	94	.848		
	24세-29세	3.11	18	1.183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3.23	70	.966	.104	-
	중소도시	3.27	30	.868		
	농어촌	3.13	15	.834		
총계		3.23	115	.918		

*<.05, **<.01, ***<.001

36)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5)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립지원시설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월세(25.6%), 학교기숙사(6.2%), 그룹홈(5.4%), 회사기숙사(4.5%), 친구집(4.5%), 부모님집(3.7%), 기타(2.5%), 친척집(2.5%), 자기소유의 집(2.1%)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17세이하는 자립지원(42.9%), 기타(35.7%), 전, 월세(14.3%) 순으로 18세-23세는 자립지원시설(42.9%), 전, 월세(24.0%), 학교기숙사(7.5%) 순으로 24세-29세는 전월세(46.2%), 자립지원시설(30.8%)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자립지원시설(49.3%), 전, 월세(28.3%), 그룹홈(6.0%) 순으로 중소도시는 자립지원시설(31.3%), 전, 월세(28.3%) 순으로 농어촌은 자립지원시설(40.5%), 학교기숙사(16.2%), 전, 월세(13.5%) 순으로 거주하였다.

<표 IV-42>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										전체	χ ²	
	자기소유의 집	자립지원시설	전, 월세	그룹홈	회사기숙사	학교기숙사	친구집	친척집	부모님집	기타			
성별	남자	4 (3.7)	34 (31.2)	35 (32.1)	6 (5.5)	6 (5.5)	8 (7.3)	7 (6.4)	3 (2.8)	4 (3.7)	2 (1.8)	109 (100.0)	14.891
	여자	1 (.8)	70 (52.6)	27 (20.3)	7 (5.3)	5 (3.8)	7 (5.3)	4 (3.0)	3 (2.3)	5 (3.8)	4 (3.0)	133 (100.0)	
나이	17세이하	0 (.0)	6 (42.9)	2 (14.3)	1 (7.1)	0 (.0)	0 (.0)	0 (.0)	0 (.0)	0 (.0)	5 (35.7)	14 (100.0)	130.625 ***
	18세-23세	4 (2.0)	89 (44.5)	48 (24.0)	12 (6.0)	10 (5.0)	15 (7.5)	9 (4.5)	4 (2.0)	8 (4.0)	1 (.5)	200 (100.0)	
	24세-29세	0 (.0)	8 (30.8)	12 (46.2)	0 (.0)	1 (3.8)	0 (.0)	2 (7.7)	2 (7.7)	1 (3.8)	0 (.0)	26 (10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도시	2 (1.4)	68 (49.3)	39 (28.3)	9 (6.5)	2 (1.4)	3 (2.2)	7 (5.1)	4 (2.9)	4 (2.9)	0 (.0)	138 (100.0)	41.416 **
	중소도시	3 (4.5)	21 (31.3)	18 (26.9)	2 (3.0)	6 (9.0)	6 (9.0)	1 (1.5)	1 (1.5)	4 (6.0)	5 (7.5)	67 (100.0)	
	농어촌	0 (.0)	15 (40.5)	5 (13.5)	2 (5.4)	3 (8.1)	6 (16.2)	3 (8.1)	1 (2.7)	1 (2.7)	1 (2.7)	37 (100.0)	
총계	5 (2.1)	104 (43)	62 (25.6)	13 (5.4)	11 (4.5)	15 (6.2)	11 (4.5)	6 (2.5)	9 (3.7)	6 (2.5)	242 (100)		

*<.05, **<.01, ***<.001

주거형태만족도³⁷⁾는 평균 3.3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척도 기준별로 살펴보면 전혀 만족하지 않음 2.4%, 만족하지 않음 10.4%, 보통 43.4%, 만족함 32.9%, 매우 만족함 10.8%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3〉 주거형태만족도

구분		주거형태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39	113	.995	-.067	-
	여자	3.40	136	.819		
나이	17세이하	3.67	15	.724	1.281	-
	18세-23세	3.40	204	.880		
	24세-29세	3.15	27	1.134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40	143	.972	.017	-
	중소도시	3.38	69	.842		
	농어촌	3.41	37	.725		
총계		3.39	249	.901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총이사횟수는 평균 1.17회였다. 횟수별로는 1번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 번도 없는 경우(35.3%), 2번(13.4%), 3번이상(13.4%) 순이었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별 차이를 살펴보면 17세이하(.56회)와 18세-23세(.99회)에 비하여 24세-29세의 퇴소후 총이사횟수가 2.20회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37)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표 IV-44〉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총이사횟수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총이사횟수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1.15	87	1.368	.025	-
	여자	1.18	100	1.298		
나이	17세이하	.56	9	.726	11.859***	A
	18세-23세	.99	151	1.166		A
	24세-29세	2.20	25	1.555		B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1.30	117	1.404	2.403	-
	중소도시	1.09	46	1.189		
	농어촌	.67	24	1.090		
총계		1.17	187	1.328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지원여부를 살펴보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9.3%,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9.7%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별 차이를 살펴보면 17세이하는 잘모르겠음(66.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세-23세는 없다(42.2%)고 응답한 비율이 24세-29세는 있다(51.9%)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45〉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지원 여부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지원 받은 경험유무			전체	χ ²
		없다	있다	잘 모르겠음		
성별	남자	40(38.8)	35(34.0)	28(27.2)	103(100.0)	2.087
	여자	51(42.9)	30(25.2)	38(31.9)	119(100.0)	
나이	17세이하	2(22.2)	1(11.1)	6(66.7)	9(100.0)	15.763*
	18세-23세	78(42.2)	50(27.0)	57(30.8)	185(100.0)	
	24세-29세	10(37.0)	14(51.9)	3(11.1)	27(100.0)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63(48.5)	39(30.0)	28(21.5)	130(100.0)	11.912*
	중소도시	20(32.8)	16(26.2)	25(41.0)	61(100.0)	
	농어촌	8(25.8)	10(32.3)	13(41.9)	31(100.0)	
총계		91(41)	65(29.3)	66(29.7)	222(100)	

*<.05, **<.01, ***<.001

주거와 관련하여 한달 평균 소요되는 금액은 약 23.0만원이었다. 기준별로는 10만원미만이 33.1%,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25.2%,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이 29.4%, 50만원이상 70만원미만이 9.2%, 70만원이상이 3.1%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나이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도시(18.86만원)에 비해 농어촌(31.38만원)의 주거관련 한달평균 소요금액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46> 주거와 관련하여 한달 평균 소요되는 금액

구분		주거와 관련하여 한달 평균 소요되는 금액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24.81	75	20.191	1.057	-
	여자	21.45	88	20.179		
나이	17세이하	12.00	2	11.314	.807	-
	18세-23세	22.75	133	21.069		
	24세-29세	23.81	26	15.852		
현재살고있는지역	대도시	18.86	104	19.385	6.488**	A A B B
	중소도시	29.68	38	20.746		
	농어촌	31.38	21	17.979		
총계		23.0	124	20.192		

*<.05, **<.01, ***<.001

주거지역만족도³⁸⁾는 평균 3.3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척도기준별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1.2%, 만족하지 않음 10.2%, 보통 46.3%, 만족함 35.8%, 매우 만족함 6.5%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8)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만족함=4”, “매우 만족함=5”로 부호화한 값이다.

<표 IV-47> 주거지역만족도

구분	주거지역만족도			F(t)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성별	남자	3.31	113	.856	-.940	-
	여자	3.41	133	.749		
나이	17세이하	3.47	15	.834	.578	-
	18세-23세	3.33	201	.783		
	24세-29세	3.48	27	.935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42	143	.851	1.467	-
	중소도시	3.34	67	.750		
	농어촌	3.17	36	.655		
총계		3.36	246	.800		

*<.05, **<.01, ***<.001

6) 사회적 지지 영역

사회적 지지영역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도구적 지지로 나누어 각 대상별 값³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서적 지지(최소값 1, 최대값 4)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관계자(3.06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2.92점), 시설친구, 선후배(2.85점), 학교친구, 선후배(2.81점), 위탁부모, 후원자 등(2.59점),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2.48점), 부모님(2.42점), 학교선생님(2.33점), 친척(2.16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최소값 1, 최대값 4)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관계자(2.96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교친구, 선후배(2.89점), 시설친구, 선후배(2.85점), 형제, 자매(2.84점), 위탁부모, 후원자 등(2.63점), 학교 선생님(2.60점),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2.58점), 부모님(2.48점), 친척(2.32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최소값 1, 최대값 4)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관계자(2.91점)가 역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친구, 선후배(2.88점), 시설친구, 선후배(2.86점), 형제, 자매(2.74점),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2.45점), 위탁부모, 후원자 등(2.38점), 학교 선생님(2.27점), 부모님(2.16점), 친척(1.42점)순이었다.

39)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부호화한 값이다.

물질적, 도구적 지지(최소값 1, 최대값 4)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형제, 자매(2.91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관계자(2.88점), 학교친구, 선후배(2.87점), 시설친구, 선후배(2.85점), 부모님(2.50점), 위탁부모, 후원자 등(2.36점),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2.33점), 학교 선생님(2.19점), 친척(2.11점) 순이었다.

<표 IV-48> 사회적 지지

구분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 ⁴⁰⁾	
	안 계신다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정서적 지지	① 부모님	90(37.3)	38(15.8)	34(14.1)	56(23.2)	23(9.5)	241(100)	2.42
	② 형제, 자매	65(27.0)	17(7.1)	30(12.4)	79(32.8)	50(20.7)	241(100)	2.92
	③ 친척	62(25.7)	60(24.9)	48(19.9)	54(22.4)	17(7.1)	241(100)	2.16
	④ 학교 친구, 선후배	1(0.4)	21(8.6)	35(14.3)	155(63.5)	32(13.1)	244(100)	2.81
	⑤ 시설친구, 선후배	2(0.8)	17(6.9)	35(14.3)	159(64.9)	32(13.1)	245(100)	2.85
	⑥ 학교 선생님	16(6.5)	44(18)	77(31.4)	97(39.6)	11(4.5)	245(100)	2.33
	⑦ 시설관계자	4(1.6)	8(3.2)	27(10.9)	151(60.9)	58(23.4)	248(100)	3.06
	⑧ 위탁부모, 후원자 등	70(28.8)	19(7.8)	53(21.8)	81(33.3)	20(8.2)	243(100)	2.59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53(21.6)	31(12.7)	53(21.6)	92(37.6)	16(6.5)	245(100)	2.48
평가적 지지	① 부모님	90(37.8)	30(12.6)	33(13.9)	69(29)	16(6.7)	238(100)	2.48
	② 형제, 자매	67(27.9)	17(7.1)	28(11.7)	93(38.8)	35(14.6)	240(100)	2.84
	③ 친척	63(26.4)	41(17.2)	49(20.5)	75(31.4)	11(4.6)	239(100)	2.32
	④ 학교 친구, 선후배	2(0.8)	12(4.9)	38(15.6)	156(64.2)	35(14.4)	243(100)	2.89
	⑤ 시설친구, 선후배	3(1.2)	13(5.3)	40(16.4)	159(65.2)	29(11.9)	244(100)	2.85
	⑥ 학교 선생님	18(7.5)	25(10.4)	58(24.2)	119(49.6)	20(8.3)	240(100)	2.60
	⑦ 시설관계자	4(1.6)	8(3.3)	36(14.8)	152(62.6)	43(17.7)	243(100)	2.96
	⑧ 위탁부모, 후원자 등	69(28.6)	18(7.5)	43(17.8)	95(39.4)	16(6.6)	241(100)	2.63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55(22.9)	24(10)	47(19.6)	96(40)	18(7.5)	240(100)	2.58
정보적 지지	① 부모님	87(36.6)	51(21.4)	37(15.5)	51(21.4)	12(5)	238(100)	2.16
	② 형제, 자매	64(26.9)	28(11.8)	29(12.2)	78(32.8)	39(16.4)	238(100)	2.74
	③ 친척	63(26.5)	67(28.2)	60(25.2)	41(17.2)	7(2.9)	238(100)	1.42
	④ 학교 친구, 선후배	0(0.0)	17(7.1)	44(18.3)	129(53.8)	50(20.8)	240(100)	2.88
	⑤ 시설친구, 선후배	2(0.8)	15(6.3)	47(19.6)	133(55.4)	43(17.9)	240(100)	2.86
	⑥ 학교 선생님	12(5)	50(21)	77(32.4)	88(37)	11(4.6)	238(100)	2.27
	⑦ 시설관계자	5(2)	17(6.9)	34(13.9)	143(58.4)	46(18.8)	245(100)	2.91
	⑧ 위탁부모, 후원자 등	69(29)	30(12.6)	56(23.5)	71(29.8)	12(5)	238(100)	2.38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51(21.5)	37(15.6)	44(18.6)	89(37.6)	16(6.8)	237(100)	2.45
물질적, 도구적 지지	① 부모님	91(38.2)	39(16.4)	19(8)	66(27.7)	23(9.7)	238(100)	2.50
	② 형제, 자매	64(26.9)	20(8.4)	26(10.9)	77(32.4)	51(21.4)	238(100)	2.91
	③ 친척	65(27.3)	59(24.8)	51(21.4)	48(20.2)	15(6.3)	238(100)	2.11
	④ 학교 친구, 선후배	3(1.2)	18(7.4)	37(15.3)	143(59.1)	41(16.9)	242(100)	2.87
	⑤ 시설친구, 선후배	3(1.2)	19(7.8)	34(13.9)	152(62.3)	36(14.8)	244(100)	2.85
	⑥ 학교 선생님	20(8.4)	53(22.2)	79(33.1)	80(33.5)	7(2.9)	239(100)	2.19
	⑦ 시설관계자	7(2.9)	17(7.1)	34(14.1)	144(59.8)	39(16.2)	241(100)	2.88
	⑧ 위탁부모, 후원자 등	67(28.3)	38(16)	49(20.7)	67(28.3)	16(6.8)	237(100)	2.36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55(23.3)	43(18.2)	48(20.3)	78(33.1)	12(5.1)	236(100)	2.33

40)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부호화한 값이다.

사회적 지지⁴¹⁾는 평균 2.72점(최소값 1, 최대값 4)이며 이 중 정서적 지지는 2.71점, 평가적 지지는 2.77점, 정보적 지지는 2.56점, 물질적, 도구적 지지는 2.59점으로 평가적 지지(2.77점)와 정서적 지지(2.71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반해 물질적, 도구적 지지(2.59점)와 정보적 지지(2.5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 실질적 도움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IV-49> 사회적 지지 영역별 비교

구분	사회적 지지 영역별 비교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2.71	97	.500
평가적 지지	2.77	100	.566
정보적 지지	2.56	108	.575
물질적, 도구적 지지	2.59	103	.582
총 계(사회적 지지)	2.72	83	.441

7) 신체 및 심리적 발달 영역

지난 1년내 질병발생경험유무(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없는 경우(59.9%)를 제외하고 충치 및 잇몸질환(24.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장 및 내과질환(11.8%), 피부질환(9.7%), 각종사고(6.3%), 빈혈(1.3%), 만성질환(0.8%), 천식(0.8%), 디스크(0.8%), 감기·몸살(0.8%), 성관련문제나 질병(0.4%) 순이었다. 성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로 관계없이 충치 및 잇몸질환이 가장 많은 반면 나이별로는 17세 이하와 18세-23세는 충치 및 잇몸질환이 많은 반면 24세-29세는 위장 및 내과질환(3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1) 정서적 지지는 “1)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에 관한 9문항을 합산(compute)한 후 9로 나눈 값, 평가적 지지는 “2)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에 관한 9문항을 합산한 후 9로 나눈 값, 정보적 지지는 “3)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에 관한 9문항을 합산한 후 9로 나눈 값, 물질적, 도구적 지지는 “4)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물건, 장소 등)을 주거나 빌려준다.”에 관한 9문항을 합산한 후 9로 나눈값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이렇게 구해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도구적 지지를 합산한 후 4로 나눈값으로 활용하였다.

〈표 IV-50〉 지난 1년내 앓은 경험이 있는 질병(복수응답)

구분		지난 1년내 앓은 경험이 있는 질병(복수응답)											전체
		없음	각종사 고 (교통 사고, 부주의 사고) 로 인한 질병	충치 및 잇몸질 환	위장 및 내과질 환	성관련 문제나 질병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등)	피부질 환	빈혈	천식	디스크	감기, 몸살	
성별	남자	64 (59.8)	11 (10.3)	23 (21.5)	10 (9.3)	1 (.9)	1 (.9)	9 (8.4)	0 (.0)	1 (.9)	0 (.0)	1 (.9)	121 (112.9)
	여자	78 (60.0)	4 (3.1)	34 (26.2)	18 (13.8)	0 (.0)	1 (.8)	14 (10.8)	3 (2.3)	1 (.8)	2 (1.5)	1 (.8)	156 (120.1)
나이	17세 이하	8 (57.1)	0 (.0)	3 (21.4)	1 (7.1)	0 (.0)	0 (.0)	1 (7.1)	0 (.0)	0 (.0)	1 (7.1)	0 (.0)	14 (100.0)
	18세- 23세	118 (60.8)	13 (6.7)	50 (25.8)	19 (9.8)	1 (.5)	2 (1.0)	20 (10.3)	3 (1.5)	2 (1.0)	1 (.5)	2 (1.0)	231 (118.9)
	24세- 29세	13 (50.0)	2 (7.7)	4 (15.4)	8 (30.8)	0 (.0)	0 (.0)	2 (7.7)	0 (.0)	0 (.0)	0 (.0)	0 (.0)	29 (111.6)
현재살고 있는지역	대도시	76 (56.7)	7 (5.2)	35 (26.1)	24 (17.9)	1 (.7)	2 (1.5)	14 (10.4)	1 (.7)	1 (.7)	2 (1.5)	2 (1.5)	165 (122.9)
	중소도시	41 (61.2)	6 (9.0)	15 (22.4)	4 (6.0)	0 (.0)	0 (.0)	6 (9.0)	2 (3.0)	0 (.0)	0 (.0)	0 (.0)	74 (110.6)
	농어촌	25 (69.4)	2 (5.6)	7 (19.4)	0 (.0)	0 (.0)	0 (.0)	3 (8.3)	0 (.0)	1 (2.8)	0 (.0)	0 (.0)	38 (105.5)
총계		142 (59.9)	15 (6.3)	57 (24.1)	28 (11.8)	1 (.4)	2 (.8)	23 (9.7)	3 (1.3)	2 (.8)	2 (.8)	2 (.8)	277 (116.9)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유무를 살펴보면 치료한 경우가 77%,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가 23%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1>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유무

구분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유무		전체	χ ²
		예	아니오		
성별	남자	38(76.0)	12(24.0)	50(100.0)	.050
	여자	49(77.8)	14(22.2)	63(100.0)	
나이	17세이하	6(66.7)	3(33.3)	9(100.0)	1.150
	18세-23세	70(79.5)	18(20.5)	88(100.0)	
	24세-29세	11(68.8)	5(31.3)	16(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53(77.9)	15(22.1)	68(100.0)	.150
	중소도시	23(76.7)	7(23.3)	30(100.0)	
	농어촌	11(73.3)	4(26.7)	15(100.0)	
총계		87(77)	26(23)	113(100)	

*<.05, **<.01, ***<.001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유를 살펴보면 증세가 가벼워서가 35.7%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비가 없어서(28.6%), 의료보험이 없어서(14.3%), 귀찮아서 (7.1%),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14.3%)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 나이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2>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유

구분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유					전체	χ ²
		증세가 가벼워서	치료비가 없어서	의료보험이 없어서	귀찮아서	바빠서 시간이 없다		
성별	남자	2(25.0)	2(25.0)	2(25.0)	1(12.5)	1(12.5)	8(100.0)	2.975
	여자	3(50.0)	2(33.3)	0(0)	0(0)	1(16.7)	6(100.0)	
나이	17세이하	1(100.0)	0(0)	0(0)	0(0)	0(0)	1(100.0)	10.080
	18세-23세	1(10.0)	4(40.0)	2(20.0)	1(10.0)	2(20.0)	10(100.0)	
	24세-29세	3(100.0)	0(0)	0(0)	0(0)	0(0)	3(100.0)	
현재살고있는 지역	대도시	3(33.3)	4(44.4)	1(11.1)	1(11.1)	0(0)	9(100.0)	12.522
	중소도시	1(33.3)	0(0)	0(0)	0(0)	2(66.7)	3(100.0)	
	농어촌	1(50.0)	0(0)	1(50.0)	0(0)	0(0)	2(100.0)	
총계		5(35.7)	4(28.6)	2(14.3)	1(7.1)	2(14.3)	14(100.)	

*<.05, **<.01, ***<.001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현황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3〉 조사대상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26(44.8)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30(51.7)
	여자	32(55.2)		중소도시	13(22.4)
	계	58(100)		농어촌	15(25.9)
조사대상 전문가의 시설에서 직위	생활지도원	21(36.8)	조사대상 전문가 연령대	계	58(100)
	사회복지사	17(29.8)		20대	16(28.1)
	상담사	4(7)		30대	17(29.8)
	사무국장	12(21.1)		40대	22(38.6)
	간호사	1(1.8)		50세이상	2(3.5)
	생활복지사	1(1.8)		계	57(100)
	과장	1(1.8)			
	계	57(100)			

우선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전문가의 성별은 남자가 44.8%, 여자가 55.2%였다.

조사대상 전문가의 시설에서의 직위를 살펴보면 생활지도원 36.8%, 사회복지사 29.8%, 상담사 7%, 사무국장 21.1%, 간호사 1.8%, 생활복지사 1.8%, 과장 1.8%으로 생활지도원과 사회복지사가 퇴소청소년 업무를 주로 담당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51.7%, 중소도시 22.4%, 농어촌 25.9%였다.

조사대상 전문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8.1%, 30대가 29.8%, 40대가 38.6%, 50세 이상이 3.5%였다.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현황 및 사업실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한해 법적 퇴소연령도달 퇴소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 6.00 명이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4> 한해 법적퇴소연령도달 퇴소인원(최근3년 평균)

구분		한 해 법적 퇴소 연령도달 퇴소인원(최근 3년 평균)			F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6.54	28	4.501	.595	-
	중소도시	6.40	10	7.427		
	농어촌	4.73	15	5.161		
총계		6.00	53	5.281		

*<.05, **<.01, ***<.001

퇴소연령 도달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한 퇴소 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 한해 5.63명이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중소도시의 한 해 기타 사유 퇴소인원(10.00명)이 농어촌(3.93명)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IV-55> 한해 기타 사유로 인한 퇴소인원(최근3년 평균)

구분		한해 기타 사유로 인한 퇴소인원(최근 3년평균)			F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5.04	26	3.995	4.142*	A B B A
	중소도시	10.00	9	9.579		
	농어촌	3.93	14	2.731		
총계		5.63	49	5.499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1.0%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편이 17.2%, 필요없다고 한 경우가 1.7% 순이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6>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의견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의견			전체	χ ²
		필요 없음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1(3.3)	4(13.3)	25(85.3)	30(100.0)	1.571
	중소도시	0(0)	3(23.1)	10(76.9)	13(100.0)	
	농어촌	0(0)	3(20.0)	12(80.0)	15(100.0)	
총계		1(1.7)	10(17.2)	47(81.0)	58(100.0)	

*<.05, **<.01, ***<.001

시설차원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여부를 살펴보면 94.8%가 운영한다고 응답하였고 5.2%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7> 시설차원의 아동양육시설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여부

구분		시설차원의 아동양육시설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여부		전체	χ ²
		예	아니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29(96.7)	1(3.3)	30(100.0)	2.953
	중소도시	13(100.0)	0(0)	13(100.0)	
	농어촌	13(86.7)	2(13.3)	15(100.0)	
총계		55(94.8)	3(5.2)	58(100.0)	

*<.05, **<.01, ***<.001

아동양육시설 퇴소전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실시방법(복수응답)을 살펴 보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가 8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75.9%), 직업소개소나 주거마련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 주력(69.0%), 수업이나 강의형식의 교육을 통해(31.0%), 토론식의 조별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통해(17.2%), 대학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3.4%) 순이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도시(76.7%)의 경우 중소도시(53.8%)나 농어촌(66.7%)에 비해 직업소개소나 주거마련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58> 아동양육시설 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실시방법(복수응답)

구분		아동양육시설 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실시방법(복수응답)						전체
		직업소개소나 주거마련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 주력	수업이나 강의형식의 교육을 통해	토론식의 조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1:1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23 (76.7)	11 (36.7)	7 (23.3)	24 (80.0)	24 (80.0)	1 (3.3)	90 (300.0)
	중소도시	7 (53.8)	3 (23.1)	2 (15.4)	9 (69.2)	11 (84.6)	1 (7.7)	33 (200.0)
	농어촌	10 (66.7)	4 (26.7)	1 (6.7)	11 (73.3)	13 (86.7)	0 (.0)	39 (260.1)
총계		40 (69.0)	18 (31.0)	10 (17.2)	44 (75.9)	48 (82.8)	2 (3.4)	162 (279.0)

퇴소청소년 지원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업무의 과다로 인한 전담인력배치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요한 재정의 부족(27.6%),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의 부족(8.6%), 체계적인 교재나 지침의 부족(8.6%), 체계적인 교재나 지침의 부족(8.6%),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정부정책(6.9%),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3.4%), 시설과 지속적인 관계유지(1.7%), 취업가능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함(1.7%),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립을 배려(1.7%), 아동들의 성격장애, 정신적 문제(1.7%) 순이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9> 퇴소청소년 지원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퇴소청소년 지원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전체	χ ²	
	업무의 과다로 인한 전담인력 배치의 어려움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의 부족	체계적인 교재나 지침의 부족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정부정책	필요한 재정의 부족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퇴소청소년 본인의 인식 부족	시설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취업가능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함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립을 배려	아동들의 성격장애, 정신적 문제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13 (43.3)	2 (6.7)	31 (10.0)	1 (3.3)	7 (23.3)	2 (6.7)	1 (3.3)	0 (0)	0 (0)	0 (0)	1 (3.3)	30 (100.0)	25.205
	중소도시	3 (23.1)	3 (23.1)	2 (15.4)	1 (7.7)	2 (15.4)	1 (7.7)	0 (0)	1 (7.7)	0 (0)	0 (0)	0 (0)	13 (100.0)	
	농어촌	3 (20.0)	0 (0)	0 (0)	2 (13.3)	7 (46.7)	0 (0)	1 (6.7)	0 (0)	1 (6.7)	1 (6.7)	0 (0)	15 (100.0)	
총계	19 (32.8)	5 (8.6)	5 (8.6)	4 (6.9)	16 (27.6)	3 (5.2)	2 (3.4)	1 (1.7)	1 (1.7)	1 (1.7)	1 (1.7)	58 (100.0)		

*<.05, **<.01, ***<.001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주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생활지도원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원장(25.0%), 사무국장

(16.1%), 상담사(7.1%), 보육사(1.8%), 외부초빙강사(1.8%), 과장(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60>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주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

구분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주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							전체	χ^2
		생활 지도원	상담사	보육사	원장	외부초 빙강사	사무 국장	과장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14 (48.3)	3 (10.3)	1 (3.4)	5 (17.2)	0 (.0)	5 (17.2)	1 (3.4)	29 (100.0)	9.384
	중소도시	5 (38.5)	1 (7.7)	0 (.0)	5 (38.5)	1 (7.7)	1 (7.7)	0 (.0)	13 (100.0)	
	농어촌	7 (50.0)	0 (.0)	0 (.0)	4 (28.6)	0 (.0)	3 (21.4)	0 (.0)	14 (100.0)	
총계		26 (46.4)	4 (7.1)	1 (1.8)	14 (25.0)	1 (1.8)	9 (16.1)	1 (1.8)	56 (100.0)	

*<.05, **<.01, ***<.001

이미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가 4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홈커밍데이나 선후배간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17.5%), 정기적인 1:1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12.3%),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10.5%), 정기적인 수업이나 강의형식의 교육을 통해(5.3%), 시설과 지속적인 관계유지(1.8%),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정보제공(1.8%), 장학금, 주택 마련금 지원(1.8%) 순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1:1 상담을 통하거나(12.3%) 정기적인 수업, 강의를 통한(5.3%)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1〉 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

구분		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								전체	χ ²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정기적인 수업이나 강의 형식의 교육을 통해	홈커밍데이나 선후배 간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정기적인 1:1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시설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정보제공	장학금, 주택마련금 지원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2 (6.9)	16 (55.2)	2 (6.9)	4 (13.8)	2 (6.9)	1 (3.4)	1 (3.4)	1 (3.4)	291 (100.0)	11.813
	중소도시	3 (23.1)	6 (46.2)	0 (.0)	1 (7.7)	3 (23.1)	0 (.0)	0 (.0)	0 (.0)	13 (100.0)	
	농어촌	1 (6.7)	6 (40.0)	1 (6.7)	5 (3.3)	2 (13.3)	0 (.0)	0 (.0)	0 (.0)	15 (100.0)	
총계		6 (10.5)	28 (49.1)	3 (5.3)	10 (17.5)	7 (12.3)	1 (1.8)	1 (1.8)	1 (1.8)	57 (100.0)	

*<.05, **<.01, ***<.001

양육시설 기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은 평균 .64명으로 1명도 채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2〉 양육시설 기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구분		양육시설 기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F	Scheffe
		평균	빈도(명)	표준편차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62	29	.561	1.231	-
	중소도시	.85	13	.689		
	농어촌	.50	14	.519		
총계		.64	56	.586		

*<.05, **<.01, ***<.001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전문학교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원봉사자(35.2%), 인근지역기업(25.9%), 거의 없음(16.7%), 읍, 면, 동사무소(14.8%), 지역사회복지관(13.0%), 인근 중, 고등학교(7.4%), 고용안정센터(고용지원센터)(5.6%), 청소년수련관(3.7%), 금융기관(3.7%), 아동복지연합회(3.7%), 주변의 지인(3.7%), 멘토링서비스(1.9%), 실업극복운동본부(청소년지원팀)(1.9%), 자립지원센터(1.9%), 지역문화센터(1.9%) 등으로 나타나 취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자원에 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3>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지역사회자원(복수응답)

구분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지역사회자원(복수응답)																전체	
	거의 없음	인근 중,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읍,면, 동사무소	인근 지역기업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멘토링	금융기관	고용안정센터(고용지원센터)	주변의 지인	실업극복운동본부(청소년지원팀)	자립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아동복지연합회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도시	7 (24.1)	0 (.0)	13 (44.8)	3 (10.3)	7 (24.1)	14 (48.3)	5 (17.2)	1 (3.4)	1 (3.4)	0 (.0)	3 (10.3)	1 (3.4)	0 (.0)	1 (3.4)	0 (.0)	2 (6.9)	58 (199.6)
	중소도시	1 (9.1)	1 (9.1)	7 (63.7)	1 (9.1)	3 (27.3)	3 (27.3)	0 (.0)	0 (.0)	0 (.0)	0 (.0)	0 (.0)	1 (9.1)	0 (.0)	1 (9.1)	0 (.0)	0 (.0)	18 (245.7)
	농어촌	1 (7.1)	3 (21.4)	8 (57.1)	4 (28.6)	4 (28.6)	2 (14.3)	2 (14.3)	1 (7.1)	0 (.0)	2 (14.3)	0 (.0)	1 (7.1)	0 (.0)	0 (.0)	0 (.0)	0 (.0)	28 (199.9)
총계	9 (16.7)	4 (7.4)	28 (51.9)	8 (14.8)	14 (25.9)	19 (35.2)	7 (13.0)	2 (3.7)	1 (1.9)	2 (3.7)	3 (5.6)	2 (3.7)	1 (1.9)	1 (1.9)	1 (1.9)	2 (3.7)	104 (192.6)	

세부 프로그램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필요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세부 프로그램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를 살펴보겠다.

건강관리의 경우 술, 담배약물의 위험성 지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8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이용법(84.7%), 간단한 응급처치(71.2%), 건강유지법(71.2%),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52.5%) 순이었다.

자금관리의 경우 저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8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신용관리(74.6%), 금융기관서비스(61%), 신용카드사용법(57.6%), 세금(40.7%), 이자계산법(30.5%) 순이었다.

주거마련 및 관리의 경우 화재예방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8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관련행정절차(71.2%), 독립생활물품목록작성법(62.7%), 집구하는 방법(61%), 임대계약서 이해(50.8%), 도둑방지(47.5%), 임차인의 법적권리(42.4%) 순이었다.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경우 등초본발급방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8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사무소 이용법(81.4%), 지역도서관 및 지역사회자원활용법(67.8%), 동호회 활용법(32.2%) 순이었다.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9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88.1%), 성병의 예방발견치료법(79.7%), 결혼과 사랑(79.7%), 부모의 책임과 역할(74.6%), 배우자의 책임(67.8%) 순이었다.

대인관계의 경우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7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방법(69.5%), 자기의견주장법(62.7%), 분노관리기술(57.6%), 갈등관리법(47.5%) 순이었다.

자아성장 및 사회적 개발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개념인식 프로그램이 7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격적 장점 및 욕구파악(71.2%), 여가활용방법(62.7%), 의사결정과정(59.3%),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법(55.9%) 순이었다.

다음으로 세부 프로그램별 필요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건강관리의 경우 술담배약물의 위험성 지각(94.9%)과 건강유지법(94.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간단한 응급처치(91.5%), 병원이용법(91.5%),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89.8%) 순이었다.

자금관리의 경우 저축 프로그램(98.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개인신용관리(96.6%), 신용카드사용법(94.9%), 세금(84.7%), 금융기관서비스(84.7%), 이자계산법(72.9%) 순이었다.

주거마련 및 관리의 경우 임대계약서 이해(98.3%)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집 구하는 방법(94.9%), 주거관련행정절차(93.2%), 화재예방법(91.5%), 임차인의 법적권리(91.5%), 독립생활물품목록작성법(86.4%), 도둑방지(79.7%) 순이었다.

지역사회자원활용의 경우 동사무소이용방법 프로그램이 93.2%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등초본발급방법(91.5%), 지역도서관 및 지역사회자원활용법(84.7%), 동호회 활용법(76.3%)순이었다.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의 경우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프로그램이 98.3%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변화(96.6%), 배우자의 책임(96.6%),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94.9%), 성병의 예방발견치료법(93.2%), 결혼과 사랑(93.2%) 순이었다.

대인관계의 경우 대인관계기술(96.6%), 의사소통방법(96.6%), 자기 의견주장법(96.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분노관리기술(94.9%), 갈등관리법(93.2%) 순이었다.

자아성장 및 사회성 개발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개념인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94.9%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성격적 장점 및 요구과약(93.2%), 의사결정과정(89.8%), 여가활용방법(89.8%),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법(86.4%) 순이었다.

각 자립지원프로그램실시여부와 필요성 인식간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의 경우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이 차이(37.3%)가 나는 항목은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로 8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52.5%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건강유지법(차이 23.7%)으로 9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71.2%에 그쳤다. 간단한 응급처치법의 경우에도 상당한 차이(차이 20.3%)가 나타났는데 9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71.2%였다.

자금관리의 경우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이 차이(44%)가 나타나는 항목은 세금으로 8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40.7%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이자계산법(차이 42.4%)으로 72.9%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실제 실시하는 경우는 30.5%에 그쳤다. 신용카드사용법의 경우에도 차이(37.3%)가 두드러졌는데 9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실시하는 경우는 74.6%에 그쳤다. 금융기관서비스(필요성 84.7%, 실시 61%, 차이 23.7%)와 개인신용관리(필요성 96.6%, 실시여부 74.6%, 차이 22%)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 마련 및 관리의 경우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임차인의 법적권리(필요성 91.5%, 실시 42.4%, 차이 49.1%)였으며 다음으로 임대계약서 이해(필요성 98.3%, 실시여부 50.8%, 차이 47.5%), 집구하는 방법(필요성 94.9%, 실시 61%, 차이 33.9%), 도둑방지(필요성 79.7%, 실시 47.5%, 차이 32.2%), 독립생활 물품목록작성법(필요성 86.4%, 실시 62.7%, 차이 23.7%), 주거관련행정 절차(필요성 93.2%, 실시여부 71.2%, 차이 22%) 순이었다.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경우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동호회 활용법(필요성 76.3%, 실시여부 32.2%, 차이

44.1%)이며 다음으로 지역도서관 및 지역사회자원활용법(필요성 84.7%, 실시여부 67.8%, 차이 16.9%) 순이었다.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의 경우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배우자의 책임(필요성 96.6%, 실시 67.8%, 차이 28.8%)이며 다음으로 부모의 책임과 역할(98.3%, 실시 74.6%, 차이 23.7%) 순이었다.

대인관계의 경우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갈등관리법으로 9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실시하는 경우는 47.5%에 지나지 않아 그 차이가 45.7%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분노관리기술로 9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실시한 경우는 57.6%에 지나지 않아 차이가 37.3%에 달했다. 자기의견 주장법(필요성 96.6%, 실시 62.7%, 차이 33.9%), 의사소통방법(필요성 96.6%, 실시 69.5%, 차이 27.1%), 대인관계기술(필요성 96.6%, 실시 72.9%, 차이 23.7%)도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성장 및 사회적 개발에 대해 살펴보면 필요성과 실시여부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의사결정과정(필요성 89.8%, 실시여부 59.3%, 차이 30.5%)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법(필요성 86.4%, 실시 55.9%, 차이 30.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활용방법(필요성 89.8%, 실시 62.7%, 차이 27.1%), 성격적 장점 및 욕구과약(필요성 93.2%, 실시 71.2%, 차이 22%), 자아존중감의 개념인식(피료성 94.9%, 실시 72.9%, 차이 22%)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V-64> 세부프로그램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필요성 인식

구분		세부프로그램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필요성 인식					
		실시여부			필요성		
		예	아니오	무응답	필요	불필요	무응답
1) 건강 관리	(1) 간단한 응급처치	42(71.2)	12(20.3)	5(8.5)	54(91.5)	5(8.5)	0(0)
	(2) 병원이용법	50(84.7)	6(10.2)	3(5.1)	54(91.5)	4(6.8)	1(1.7)
	(3)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	31(52.5)	20(33.9)	8(13.6)	53(89.8)	3(5.1)	3(5.1)
	(4) 술담배약물의 위험성 지각	51(86.4)	5(8.5)	3(5.1)	56(94.9)	2(3.4)	1(1.7)
	(5) 건강유지법	42(71.2)	12(20.3)	5(8.5)	56(94.9)	2(3.4)	1(1.7)
2) 자금 관리	(1) 저축	53(89.8)	5(8.5)	1(1.7)	58(98.3)	1(1.7)	0(0)
	(2) 세금	24(40.7)	29(49.2)	6(10.2)	50(84.7)	6(10.2)	3(5.1)
	(3) 금융기관서비스	36(61)	17(28.8)	6(10.2)	50(84.7)	5(8.5)	4(6.8)
	(4) 이자계산법	18(30.5)	34(57.6)	7(11.9)	43(72.9)	12(20.3)	4(6.8)
	(5) 개인신용관리	44(74.6)	11(18.6)	4(6.8)	57(96.6)	2(3.4)	0(0)
	(6) 신용카드사용법	34(57.6)	21(35.6)	4(6.8)	56(94.9)	1(1.7)	2(3.4)
3) 주거 마련 및 관리	(1) 접구하는 방법	36(61)	20(33.9)	3(5.1)	56(94.9)	1(1.7)	2(3.4)
	(2) 임대계약서 이해	30(50.8)	25(42.4)	4(6.8)	58(98.3)	1(1.7)	0(0)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25(42.4)	27(45.8)	7(11.9)	54(91.5)	3(5.1)	2(3.4)
	(4) 독립생활물품목록작성법	37(62.7)	16(27.1)	6(10.2)	51(86.4)	5(8.5)	3(5.1)
	(5) 주거관련행정절차	42(71.2)	12(20.3)	5(8.5)	55(93.2)	1(1.7)	3(5.1)
	(6) 도독방지	28(47.5)	24(40.7)	7(11.9)	47(79.7)	6(10.2)	6(10.2)
	(7) 화재예방법	48(81.4)	7(11.9)	4(6.8)	54(91.5)	3(5.1)	2(3.4)
4) 지역사회자원 활용	(1) 동사무소이용법	48(81.4)	7(11.9)	4(6.8)	55(93.2)	1(1.7)	3(5.1)
	(2) 등초본발급방법	51(86.4)	4(6.8)	4(6.8)	54(91.5)	2(3.4)	3(5.1)
	(3) 지역도서관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법	40(67.8)	14(23.7)	5(8.5)	50(84.7)	5(8.5)	4(6.8)
	(4) 동호회 활용법	19(32.2)	33(55.9)	7(11.9)	45(76.3)	9(15.3)	5(8.5)
5) 성교육 및 결혼, 부모교육	(1) 남성과 여성의 변화	55(93.2)	3(5.1)	1(1.7)	57(96.6)	2(3.4)	0(0)
	(2) 성병의 예방발견치료법	47(79.7)	8(13.6)	4(6.8)	55(93.2)	2(3.4)	2(3.4)
	(3)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	52(88.1)	4(6.8)	3(5.1)	56(94.9)	3(5.1)	0(0)
	(4) 결혼과 사랑	47(79.7)	8(13.6)	4(6.8)	55(93.2)	2(3.4)	2(3.4)
	(5) 배우자의 책임	40(67.8)	14(23.7)	5(8.5)	57(96.6)	2(3.4)	0(0)
	(6) 부모의 책임과 역할	44(74.6)	12(20.3)	3(5.1)	58(98.3)	1(1.7)	0(0)
6) 대인 관계	(1) 대인관계기술	43(72.9)	15(25.4)	1(1.7)	57(96.6)	2(3.4)	0(0)
	(2) 의사소통방법	41(69.5)	15(25.4)	3(5.1)	57(96.6)	2(3.4)	0(0)
	(3) 자기의견주장법	37(62.7)	17(28.8)	5(8.5)	57(96.6)	1(1.7)	1(1.7)
	(4) 갈등관리법	28(47.5)	25(42.4)	6(10.2)	55(93.2)	2(3.4)	2(3.4)
	(5) 분노관리기술	34(57.6)	20(33.9)	5(8.5)	56(94.9)	1(1.7)	2(3.4)
7) 자아성장 및 사회성 개발	(1) 자아존중감의 개념인식	43(72.9)	11(18.6)	5(8.5)	56(94.9)	1(1.7)	2(3.4)
	(2) 성격적 장점 및 욕구 파악	42(71.2)	15(25.4)	2(3.4)	55(93.2)	3(5.1)	1(1.7)
	(3) 의사결정과정	35(59.3)	19(32.2)	5(8.5)	53(89.8)	3(5.1)	3(5.1)
	(4) 여가활용방법	37(62.7)	18(30.5)	4(6.8)	53(89.8)	3(5.1)	3(5.1)
	(5)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법	33(55.9)	21(35.6)	5(8.5)	51(86.4)	4(6.8)	4(6.8)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의 어려움 및 문제점, 제안점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의 어려움 및 문제점, 제안점을 일상 및 가족생활 특성, 학교 및 또래관계 특성, 직장특성, 주택과 지역사회특성, 사회적 지지특성, 신체 및 심리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⁴²⁾.

(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

① 일상 및 가족생활

일상 및 가족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첫째, 금전관리상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시설아동들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2-3만 정도의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하여 취업을 하면서 받게 되는 월급은 그동안 지급받던 용돈의 20-30배에 달한다. 시설퇴소아동들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하여 무절제한 소비로 이어지기 쉬우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여 받은 월급을 2-3일 만에 다 써버리고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월급뿐 아니라 정착금과 후원금의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칫 카드오남용 문제와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는 전반적인 자립생활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퇴소시 겪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응이나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금 문제라든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나 권리 파악조차

42)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당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시설에서의 자립준비지도 또한 부족한 상태여서 일상생활측면이나 사회적응측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는 자립의지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퇴소를 앞두고 청소년들은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중요성, 자립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립프로그램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은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측의 지도에 대해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양육시설의 전문가들은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이 오랜 집단생활로 인한 자립심의 부재와 소유개념 부족, 강한 결단력의 부족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의 자립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위축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쉽게 나태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종종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시기가 일반가정 청소년의 적응시기보다 늦춰지는 경향도 발생한다.

② 학교 및 또래관계

학교 및 또래관계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첫째, 사회성 및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시설생활로 인해 개별적 생활과 그에 따른 다양한 관계형성에 익숙치 않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퇴소 후에도 시설 주변을 떠나지 못하거나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지속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학업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진학이나 학업을 희망하더라도 학비 등의 문제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에서 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제공하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책값이나 원서비 등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해 도중에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발생한다.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이나 대학진학시에도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은 결국 이들 삶의 발전가능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③ 직장

직장 관련 어려움으로 첫째 취업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대부분이 충분한 정보나 직업기술교육을 받기 어려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조금 낮지만, 18-19세에 생활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취업할 곳이 일부 생산직,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보증인이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직업의 지속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 혹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금방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뛰어드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④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첫째, 생활비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이전에 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졌던 모든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 식비 등을 포함한 생활 전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주/부식 마련 및 생활비 조달(공과금 및 병원비, 의료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적절한 임금수준의 안정적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주변의 후원자, 가족 등의 도움이 없는 경우 생활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는 거주지 마련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취업을 하면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기숙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으며 소득이 생겨도 집을 구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제공되는 전세자금만으로도

는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며 전세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청소년은 주/야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에서 살거나 비싼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들은 청소년들이 퇴소 후 일정기간 기숙사 등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오랫동안 단체생활을 한 청소년들은 자립생활시설 등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자립생활시설에 입소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경험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금을 모아 시설 밖에 따로 방을 마련해 놓고 아동복지시설에서 갓 퇴소한 청소년들이 잠시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 상당 명의 청소년들이 퇴소하므로 다음 퇴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숙소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첫째 의지할 대상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달리 시설퇴소청소년은 어려움이 있을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없어 어려운 일에 닥쳤을때 스스로 해결하거나 적응해야만 한다.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퇴소 아동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획된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시 일어서기가 아주 힘들어지며 겨우 수십만원의 돈 때문에 당장 공원 벤치에서 노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둘째, 시설퇴소청소년은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시설의 담당자가 시설퇴소청소년들로 하여금 시설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 당당히 말하도록 지도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체 또는 관공서에 취업이 되더라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변사람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확대와 사

회복지기관 공개 확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왜곡된 시선은 퇴소후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비현실성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퇴소아동관련 정부정책의 개선점 관한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넷째, 퇴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관리체계가 부재하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은 자기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응 준비나 기술습득 과정에서 충분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퇴소한 아동의 경우 거기서 인연이 거의 종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자주 방문 한다 하여도 고민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기댈 곳이 없는 실정이다. 퇴소 후 자립지원을 할 전담인력과 예산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며 시설에 퇴소아동 전담관리자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취업을 위해 외지로 나가거나 갑작스런 직업, 주거지의 변동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⑥ 신체 및 심리

신체 및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첫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특별한 아이들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과 국가주도의 가시성 저예산 프로그램들로는 퇴소청소년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기는 힘들며 좀더 적극적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의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외로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친구, 동생, 형들이 가득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유년시절의 전부를 보낸 아동들에게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무섭고, 외로운 일이다. 거의 대부분의

퇴소아동들이 퇴소 초기에는 보육원 근처에 일자리와 방을 얻고 생활하게 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자기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자기피해의식이나 타성에 젖어 있기 쉬우며 이로 인해 독립적 생활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단체 생활에서 기인한 의존성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자신의 생활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취사를 비롯한 모든 가사일과 직장생활을 함께 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상당수의 아동들이 퇴근 후 무절제한 음주와 불규칙한 취침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지며 자각과 결근이 잦아져 결국은 직장을 구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거공간이 안정(회사기숙사, 선배 집, 연고자 인도)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아동의 경우도 일정기간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직장을 그만두고 무절제한 생활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의료서비스 부족과 의료보험 부담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지역 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며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2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우, 종전에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또는 후원자를 통해 무료로 아니면 저가로 제공받던 의료 서비스(특히 치과진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치료를 꺼리고 몸을 망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치과진료에 많은 비용이 부담되어 아동양육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소득 유지시까지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정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퇴소청소년을 위한 지원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점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직원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퇴소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소아동에 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담당자 퇴사시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들은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피상적인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퇴소후 전국적으로 흩어진 퇴소청소년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과 직접방문, 주기적 만남과 수시로 발생하는 신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 체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재원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들은 하루빨리 국가규모의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퇴소아동이 충분한 자립준비를 한 상태에서 퇴소하고, 퇴소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재원이 없이는 주입식 교육밖에는 할 수 없으며 직접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 실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셋째로 정착금/ 전세지원금 제공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 대부분이 2월 중순경에 졸업을 하고 2월 말을 전후해서 시설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과 전세지원금은 아동들이 자립하고 난 후 1~2개월 뒤에 전달되거나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 지원금의 경우 심사가 까다롭고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택임대인들도 시설아동이라는 점과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최근에는 거의 전세지원금을 받는 아동들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정착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퇴소를 앞두고 실시하는 단기간의 자립프로그램만으로는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퇴소를 위한 준비는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시설 입소 시기부터 퇴소시를 대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퇴소를 앞두고 1-2년간에 이루어지게 되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1-2년, 대학교 졸업후 1-2년간의 공동 가정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기간동안 청소년들은 ‘퇴소’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며 퇴소후에도 충분한 자립기술습득 부족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퇴소 전/후 일시적 지원보다 입소시부터 체계적인 지원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나 도움을 주고 싶어도 퇴소후 청소년과의 연락이 자주 두절되어 지속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

퇴소시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갖는 경우 홈커밍데이나 명절같은때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선후배와 교류를 갖고 정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으나 몇몇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간섭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로 이사를 가거나 타지로 취업하러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인 재정적으로나 주위의 관심 등을 필요로 할 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퇴소청소년 관련업무 담당자들은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없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시설을 퇴소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었으며 퇴소 아동이 갈 곳이 없어도 일반가정의 아동들처럼 아동양육시설이 돌아올 ‘집’의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데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적, 법적 제도가 없어 갈 곳 없는 퇴소청소년을 두고 봐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나 주위의 관심 등

을 필요로 할 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주거나 학업이 확실치 않을 때 이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3) 현재 실시되고 있는 퇴소아동관련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그 개선방향

첫째⁴³⁾, 조기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가출이나 퇴학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퇴소가 아니라 조기에 시설을 떠나는 아동들에게는 자립정착금이나 전세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자립생활관의 입소도 되지 않아 이 같은 아동들을 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장애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동시설이면 다 겪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정상아동에 못 미치는 지능이 낮은 아동들의 사회생활이 암담하다.

넷째, 무연고 아동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능한 부모가 있는 아동을 부모가 없거나 10년 이상 장기간 연락 두절된 아동과 분리하여 가능한 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자립생활관 운영보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현재 지급되는 1인당 월 30,000원 가량의 운영비로는 생활자들의 자립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외부공모사업을 통해 자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준비기간 동안만이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섯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당분간 기술,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금액에 대한 훈련비 지급이 필요하다.

43)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중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1. 퇴소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유형별 분석

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1. 퇴소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1) 진학형 퇴소청소년

(1) 진학형 퇴소청소년 사례 1(A)

연령	29세
성별	남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90년
입소 배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됨. 아버지가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학교, 학원 등을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아버지가 시설 입소를 권하여 시설에 보내지게 되었음.
퇴소 시기	2000년
입소 기간	11년
퇴소 기간	8년
학력	전문대졸
종교	기독교
직업	회사원
현재 동거인	아내, 아들
가족관계	아내, 아들
주거 형태	영구임대아파트
월 소득	월 157만원

A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직접 방문하였다. 아들과 함께 조용한 회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아들이나 직장 동료들과는 적당한 톤과 정확한 발음으로 대화하였으나 면접자와는 아이 컨택도 전혀 되지 않고 목소리도 매우 작고 발음도 부정확했으며 면접에 응하였으며 면접자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A는 현재 신월동에 있는 수산물 유통회사에 재직 중이다. 어머니와 사별한 후 알코홀릭인 아버지와 살다가 부담을 느낀 아버지가 시설에 입소

하게 될 경우 학교, 학원 등을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권유하여 시설에 의뢰 되었다. 시설에 입소하여 퇴소할 때까지 11년간을 큰 문제 없이 지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원래는 퇴소해야 하나 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전문대까지 마치게 되었다.

전문대 졸업 후 교수님의 소개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계약 종료 후 지인의 소개로 현 직장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가정을 빨리 갖고 싶어 직장생활을 시작할 당시 첫 직장에서 현재의 부인을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4살 된 아들이 있다. 본인이 좀 더 기반을 닦은 후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였으나 생각보다 아이를 빨리 갖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현재 부평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내,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 상 자녀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다 교육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부인이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은 힘드나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었던 곳을 후원하는 등 오히려 지금은 시설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직장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세상 경험이 많은 상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내, 회사 동료들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비교적 현실인식이 낮았다. 자라면서 가정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이 되지 않아 올바른 가장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아내와 가끔씩 마찰을 빚기도 한다며 시설에 있을 때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시설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도 A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 바빠서 시설친구들, 선배들과 자주는 못 보나 가끔씩 만나고 있었다.

시설에 있을 때 장래희망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자신이 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를 정하여 한 길로 가지 못한 것 같으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진학형 퇴소청소년 사례 2(B)

연령	22세
성별	남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98년
입소 배경	부모님 이혼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본인(초 6)과 누나(당시 고2)가 함께 시설에 입소하게 됨.
퇴소 시기	2005년
입소 기간	7년
퇴소 기간	2년
학력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졸업
종교	없음
직업	일용직 근로자
현재 동거인	없음
가족관계	엄마, 누나
주거 형태	고시원
월 소득	일일노동으로 매달 고시원비 25만원과 기타 생활비용 10만원 내외의 생활비를 벌고 있음.

현재 B는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에서 선박(조선)을 전공하고 올 2월에 졸업한 상태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누나(고 2)와 함께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다.

퇴소 후 시설과 연결된 자립생활관에서 잠시 지내다가 자립생활관 생활이 답답해서 혼자 고시원으로 나오게 되었고, 현재 일일노동으로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퇴소 전부터 퇴소 후의 생활을 미리 계획하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독서와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꾸준한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을 보여 왔다. 대학 등록금을 자립정착금과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누나의 후원 등으로 해결하며 졸업을 준비하는 경제적인 꼼꼼함과 성실성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미디어 쪽으로 더 공부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등록금이 없어 학비를 벌 때까지는 진학을 미뤄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퇴소 후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 아버지(50대 후반)는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계시고, 어머니(50대 초반)는 장사를

하시며 공무원인 누나(20대 후반)와 함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계시다. 누나는 자신의 힘든 부분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정서적 후원자이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몇 차례 누나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온 시간에 길들여져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다고 했다.

시설에 있을 때에 사회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퇴소하는 당사자가 미리 퇴소를 실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지 만이 사회에 내몰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하며 시설에서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퇴소를 경험할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는 시설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생활은 힘들지만 나름대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며 모의 삶에 대해 희망적이었다.

(3) 진학형 퇴소청소년 사례 3(C)

연령	21세
성별	남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94년
입소 배경	부모님이 친할머니에게 잠시 양육을 부탁하였고, 친할머니의 돌봄을 받다가 친할머니가 시설입소를 의뢰 입소하게 되었음.
퇴소 시기	2006년
입소 기간	13년
퇴소 기간	1년 6개월
학력	수도권 소재 K대학 재학중
종교	없음
직업	대학생
현재 동거인	없음 / 대학기숙사생활 중
가족관계	
주거 형태	기숙사 생활
월 소득	매달 20만원 보조금 + 아르바이트

C는 현재 수도권 소재 K 대학 환경조경디자인과 2학년 학생이다. C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친할머니의 의뢰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시설에 입소하여 퇴소할 때까지 12년을 별 문제없이 시설에 적응하며 청소년기를 순조롭게 보냈다. 환경에 순응하는 성향을 지녀 시설 실무자나 학교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시설과 학교 모두에서 또래친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시설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반에서 3등할 정도로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다. 이로 인해 고3 때 미술학원을 다니는 등 시설의 지원과 학교 선생님의 적극적인 진로지도로 4년제 대학 환경조경디자인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을 입학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 현재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4년 동안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생활비는 시설에서 매달 지원하는 20만원의 보조금과 학교와 선후배가 주선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시설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끼거나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시설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얻고 있어 가족이 부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리움이나 외로움, 부족함 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대학원 학비를 1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력을 쌓고, 사회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후 개인사무실을 여는 것이 장래 희망이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어서 현재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지만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2) 취업형 퇴소청소년

(1) 취업형 퇴소청소년 사례 1(D)

연령	32세
성별	남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83년
입소 배경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누나 2명과 생활하였으나 누나 2명도 입양되게 되고 어머니 혼자 청소년을 부양하는 게 힘들어져 사촌누나의 소개로 시설로 입소하게 되었음.
퇴소 시기	1997년
입소 기간	15년
퇴소 기간	11년
학력	전문대졸
종교	기독교
직업	사회복지사
현재 동거인	없음
가족관계	누나 2명
주거 형태	전세
월 소득	170만원

D는 사회복지사로 현재 아동복지시설 복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였다.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다 막 들어온 모습으로 땀과 물에 흥건히 젖어있었으나 면접자를 반가이 맞아주고 시설 밖 벤치로 안내했다. 첫인상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자유로워 보였으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면접자 또한 편안한 느낌으로 면접에 응할 수 있었다.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아이컨택도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사생활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면접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D는 아버지 사망 후 누나 2명도 입양되게 되고, 혼자 남게 된 청소년을 부양하는 게 힘들어진 어머니께서 청소년을 큰집에 보내게 되었다.

큰집에서는 청소년이 마찰을 일으키자 다시 어머니께 보내는 생활을 반복하다 사촌누나의 소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시설에 입소하여 퇴소할 때까지 15년을 문제없이 지냈으며 큰집에 있었을 때 오히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내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시설의 생활이 편했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할 당시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시설 내 원장님에게도 신임을 얻어 퇴소 후 전자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 시설로 다시 들어와 생활교사 일을 하게 되었다.

시설 내 생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시설 직원들의 권유로 전문대학 야간반에 진학하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였다. 학비는 청소년이 시설에 근무하면서 모은 월급으로 해결하였고, 생활교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다니고 있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시설 내 아이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며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시설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과 학교에서도 본인이 시설 출신임을 공개하였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족관계는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라 어머니를 가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나 2명 중 작은누나와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다. 시설 직원, 후배, 작은누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고민등을 털어놓는다고 하였다.

현재 미혼인지라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 자아상과 성실성, 자기에 또한 갖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 성향이 D의 미래 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취업형 퇴소청소년 사례 2(E)

연령	28
성별	남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91년
입소 배경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다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 양육이 어려워지자 고모할머니의 소개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됨.
퇴소 시기	1997년 가출
입소 기간	7년
퇴소 기간	11년
학력	중졸(고등학교 자퇴)
종교	천주교
직업	지업사 종이 재단
현재 동거인	여자친구, 여자친구 누나
가족관계	어머니, A
주거 형태	전세
월 소득	160만원

종로의 한 카페에서 E를 만나 면접을 실시하였다. 혈령한 나시티, 모자를 쓰고 나왔으며 퇴근 후 곧바로 종로로 나왔다고 하였다. 면접자가 면접에 응해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자 ‘돈 줘서 하는 건데요 뭐’라며 면접 동기를 살짝 내비치었다. 말투나 복장 등에서 첫인상은 불량스러워 보였으나 면접 시에는 면접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어 면접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E는 현재 을지로 소재 지업사의 종이재단사로 일하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여자친구와 함께 천호동에서 동거하고 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청소년의 양육이 힘들어지자 고모할머니

의 소개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입소한 후 시설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지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한 후 주유소에서 생활하다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함께 동거해 왔다.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 이어서 순간 판단력이 떨어져 보였으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보육원 생활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 같았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보육원을 나와 자유롭게 혼자 살며 돈을 벌고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보육원을 나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현재는 보육원을 가출한 일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학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직장생활을 해야 생활이 유지되는 청소년의 형편상 학원을 다니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시설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시설 내 선배, 친구들에게 인생상담, 고민상담 등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혼자 나와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현재 여자친구에게 의지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시설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았다. 지업사에서 일하며 받고 있는 1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또한 차후 지방에 내려가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형편이 나아지면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희망을 비추었다. 자신을 보육원에 보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없어보였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부정적이며 과거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도 있었다고 하였다. 힘든 시기들을 여자 친구들을 만나며 해결하는 듯 보였고, 현재의 여자친구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장래희망에 대해 본인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여 본인의 노래를 담은 음반을 갖고 싶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3) 취업형 퇴소청소년 사례 3 (F)

연령	29세
성별	여성
결혼 여부	기혼
입소 시기	1990년
입소 배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후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할머니와 생활하다 할머니 사망 후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청소년은 동생과 함께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의 의뢰로 시설에 입소하게 됨.
퇴소 시기	1998년
입소 기간	9년
퇴소 기간	10개월
학력	고졸
종교	기독교
직업	없음
현재 동거인	남편, 아들, 딸, 남동생
가족관계	엄마, 남동생, 남편, 아들, 딸
주거 형태	전세+월세
월 소득	월 120만원

F를 만나기 위해 부천에 있는 청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하였다. 지하철 역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면접자가 청소년의 집을 찾는데 한참이나 지체하고 귀찮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자를 반겨주었다. 아들이 아파 병원에 다니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도 면접자에게 직접 음료수까지 가져다주는 상냥한 모습을 보이며 면접에 응하였다.

동생과 함께 입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설에서 지냈다. 성격이 활발하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았으며,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F는 시설을 졸업하고 일 년 뒤인 21살에 현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으며, 그 후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딸, 아들 한명씩을 두고 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직업이 있었으나 남편을 만나 결혼 후 직장은 그만 두고 현재는 전업주부이다.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와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살아오다 할머니 사망 후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이를 알게 된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의 의뢰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관심

을 가져준 양호선생님에 대해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강남성심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후 다단계 판매, 각종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 경력을 갖고 있었다. 매우 자유분방한 듯 보였고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정해진 규율에 따라야 하는 자립생활관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일 년도 지내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다. 자유로운 환경,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다단계에도 뛰어 들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다단계 업체에서 나온 후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했다. 역곡 쪽으로 이사 온 후 그 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남편과 만난 지 한 달 만에 동거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남편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남편이 해달라고 해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남편이 좋고 믿음직스러워진다고 하였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이었으며 친구들, 남편, 시어머니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시설출신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앞에서 어머니와 연락은 하고 있으나 어머니가 재혼하여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통화만 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감정은 별로 없어 자식을 두 명이나 낳고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회한은 비교적 남는다고 하였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보인다가나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이 공부에 대한 소질이 없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싶어 했으며 자식을 검사, 의사로 키우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내비추었다. 구체적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으나 막연히 자식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자식이 좀 더 크면 자신 또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 경제적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자식들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답답해하였으나 자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을 찾아 집을 구하고 차후 교육을 대비하여 교육 보험을 알아보는 등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4) 취업형 퇴소청소년 사례 4 (G)

연령	22세
성별	여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시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입소 배경	어떻게 입소하게 되었는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함. 아주 어린 나이에 기관에 입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퇴소 시기	2005년
입소 기간	12년 이상
퇴소 기간	2년 6개월
학력	고교 졸업 후 취업
종교	기독교
직업	생산직 종사
현재 동거인	자립생활관 식구들
가족관계	없음
주거 형태	자립생활관
월 소득	100만원

G는 유아기때부터 시설에 맡겨져 오랜 시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였기에 시설을 집처럼, 시설 친구들과 관계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지내 온 것으로 느껴졌다.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관에서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지내왔으며, 퇴소하면서 시설에서 안 사람의 소개로 선물 포장하는 생산직 일을 6개월 정도 하였다. 지금은 두 번째 직장에서 칩 조립하는 생산직 일을 하고 있으나 일을 하는 가운데 불량(실수)이 자주 발생하여 1개월 전에 회사 측으로부터 잠시 휴가조치를 받고 쉬고 있는 중에 있다.

G는 경미한 정신지체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직장을 불량으로 쉬게 된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립생활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았다. 심리적인

지지체계로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자립생활관 식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었다. 그 중 시설관계자와 긴밀하고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상의하고 협력하고 있었다.

자립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생활관 퇴소 후 혼자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아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관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후의 직장파 새로운 거쳐 또한 잘 연결될 것으로 생각 된다.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1)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사례 1(H)

연령	27세
성별	남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89년
입소 배경	부모님 이혼 후 아동상담소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음. 청소년이 어릴 적 기억이라 잘 나지 않는다며 간단하게 입소경위를 밝힘.
퇴소 시기	2002년
입소 기간	14년
퇴소 기간	5년
학력	대졸
종교	기독교
직업	회사원
현재 동거인	어머니, 동생
가족관계	어머니, 동생
주거 형태	월세
월 소득	월 150만원

H는 면접 후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며 매우 시간에 쫓기고 있는 인상을 주었다. 가족사, 여자친구 등 개인적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면접자의 질문에 계속 “개인적인 얘기인데..” 하며 면접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면접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H는 현재 D 인터넷 포털회사 기획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 후 동생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14년간을 시설에서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생활을 했다..

시설에서 생활할 당시 시설대표로 일본 아동복지시설을 견학할 기회에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었다. 현재 퇴근시간 후에 일본어 번역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함께 겸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비는 시설에서 나오는 후원금, 장학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3년 동안 휴학을 했다. 2006년 8월 졸업 후 현재 전공을 살리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준비하며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사당 근처에 집을 얻어 생활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같이 지내지 않아 가족 간 친밀감은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아 공부할 곳이 없고 자신만의 공간이 없어 좀 더 큰집으로 옮겼으면 하는 소망도 갖고 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시설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시설출신임을 공개하고 지낸다고 하였다.

H는 고민이나 문제 등을 여자친구와 상담하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여자친구를 통해 얻고 있었다. 자신이 사생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일어일문학을 전공한 것을 살려 차후 일본 관련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 이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회가 닿으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2)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사례 2 (I)

연령	21세
성별	여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98년
입소 배경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오빠와 함께 시설에 입소하게 됨.
퇴소 시기	2006년
입소 기간	8년
퇴소 기간	1년 7개월
학력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
종교	없음
직업	대학생
현재 동거인	엄마
가족관계	엄마, 오빠/ 아빠-이혼 후 함께 살지 않았고 최근 돌아가심.
주거 형태	아파트(어머니소유)
월 소득	아르바이트로 충당, 월 30만 정도

현재 I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시각디자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부모님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두 살 위인 오빠와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시설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엄마가 이혼 후 마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지 1년 정도 되었다.

밝고 신중한 성격이며, 8년간의 시설생활과 퇴소 후 1년 7개월 동안의 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잘 견디어 온 것으로 보였다. 고등학교 때 대학진학을 위해 미술 실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시설생활을 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그 해 1월에 퇴소하여 대학입학 실기시험을 앞두고 함께 시설에서 생활했던 2명의 입소 동기 친구와 함께 시설에서 연결해 준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였다.

퇴소 후 대학입학과 함께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막막함으로 다가오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엄마와 기관에 있을 때부터 연락이 되었었고, 함께 나온 입소 동기 2명과 자신들의 힘든 부분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 시 I는 교보생명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

학하게 되어 현재도 일정한 활동과 학점을 유지하기만 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I가 엄마와 합치기 얼마 전 오빠도 엄마와 잠깐 살았었으나, 직장관계로 현재는 수원에서 따로 살고 있다.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류와 정기적인 식사모임 등을 한 달에 1~2회 정도로 갖고 있으며, 특별히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마음 깊은 부분까지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엄마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본인 생활비는 스스로 알바 등을 통해 벌고 있다.

엄마와 함께 사는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또한 큰 어려움이 없이 해내고 있다. 많은 학교 과제와 알바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경우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졸업 후 광고디자이너의 꿈을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사례 3 (J)

연령	20세
성별	여성
결혼 여부	미혼
입소 시기	1993년
입소 배경	어렸을 때 현 양아버지에게 입양이 됨. 집안의 경제적 능력 약화,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다시 시설에 보내지게 되었음. 어머니 사망 후 양아버지가 청소년을 다시찾게 되어 현재는 가정 내 다시 재통합 상태임
퇴소 시기	2007년
입소 기간	15년
퇴소 기간	9개월
학력	충청권 소재 K대학 재학중
종교	없음
직업	대학생
현재 동거인	없음 / 대학기숙사생활 중
가족관계	양아버지, 양어머니, 동생 2
주거 형태	자가
월 소득	

면접 중 아이컨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말하는 동안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안정되지 않은 정서를 보였다. 또한 시설 관련 얘기가 나오면 지나치게 목소리를 낮추어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시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J는 현재 충청권 소재 K 대학 경영학과 1학년 학생이다. 어렸을 때 현재의 부모님에게 입양되었으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다. 시설에 입소하여 15년을 큰 문제없이 지냈다. 중학교까지는 부모 없이 시설에 맡겨진 아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였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잘하여 S여상에 입학하였다.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많아 본인의 처한 상황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한 후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였고 친구들과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어 고등학교 3학년 말 무렵에 다시 아버지(양아버지)집으로 가 가정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재혼해서 청소년이 알지 못하는 어머니, 동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가족 간의 다소 갈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취업 서열에서도 밀리게 되자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을 살려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적성에도 맞아 만족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해보니 대학 진학 전 고려하지 못했던 보다 많은 경험 향유, 포괄적 인간관계, 사회화 경험 등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대학생활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등록금은 아버지가 모두 지원해 주시고 있고 현재까지도 후원자와 연결 되어 생활비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가 충청도에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인천 집과는 거리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 집에 올라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설출신 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나,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시설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본인을 무시할 것 같아 노출하

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으며 현실 감각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스런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표출하였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어머니와 동생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과 거리감을 갖고 있으나 아버지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본인도 노력하고 있다.

아버지와 현재 대학을 다니며 만나게 된 남자친구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통합하게 됨으로써 외로움, 부족함 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A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일을 보고 싶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이번학기는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2.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유형별 분석

1) 진학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이 연구의 면접대상 이었던 3명의 진학형 퇴소청소년들의 경우, 사례1은(28세) 2년제 전문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거쳐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례2(22세)는 공전 조선(선박)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바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사례3(21세)은 4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 진학형 사례 1

전문대를 졸업한 진학형 사례1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원하던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전공과 연계되어 진학한 2년간의 대학생활에서도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학에

서 배운 것이 현실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등학교에서의 기초실력 부족 역시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준 요인이 되었다.

제일 처음에 원래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도 애시 당초 원래 제가 다니고자 한 과가 아니었어요. 딴 과였는데.. 다른 학교를 넣었는데 떨어지고 있던 찰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 대해서 좀 싫어진거죠. 고등학교 때 기계과 나와가지고 기계설계로 들어갔어요. 특별히 내가 이거를 더 배워서 하겠다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학력이 도움이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2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 학원을 차라리 다녔으면 훨 낫겠다... 제가 기계설계과를 나왔는데 기계설계과를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게 없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실용적인 캐드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는 게 학원에서 배우는 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훨 나아요.

기초학문이 없는데 전혀...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전혀 틀린 학문적인 거랑 안 맞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스테디에도 들고 했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 기계설계 분야로 입사했으나 뜻하지 않게 통신 쪽으로 빠져 전공을 살리지는 못 하게 되었다. 통신관련 계약직 일을 하다 재계약이 안 된 관계로 보세창고 일을 거치면서 현재의 유통업 관련 직장에 들어오게 되었다.

통신 쪽으로 하다가 원리 베 전공분야가 아니어서...재계약이 안 되어서 다른 데 또 알아보다가 전혀 틀린 분야의 여기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보세창고에 입출고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문대 졸업 후 여러 직장을 거쳤고, 현재는 지금의 직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초기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둔다 워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좋고...

사례 1의 경우, 직장을 몇 차례 옮기기는 했지만 본인의 성실한 직장 및 경제관념, 그리고 직장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인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현 부인과의 동거생활은 결혼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팀 부장님이 전셋집을 사셔서 저희가 생활비를 대고 직월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숙식이 해결되니까 저축도 할 수 있게 되고 ..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첫 직장에서 어른들이 적금을 들라고 ... 주택하고 같이 들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같이 들었었는데 돈 쓸데가 없어서 일단 적금을 많이 했는데... 정착금 350만원이 중간에 들어와서 적금 목표치가 맞춰졌어요.

직장 다니면서 와이프를 만나고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하게 되면서 그러고 보니까 크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2) 진학형 사례2

사례2의 경우 대학 입학 후 시설로부터 자립지원금 400만원을 받아 시설에서 나와 고시원에서 월세 25만원 정도를 지불하며 생활했다. 1년 정도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답답해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첫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은 기관에서 연결해 준 곳에서 전액 지원받았다. 그러나 자립지원금을 나머지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활비는 지하철 장사나 인력시장 일당노동일로 번 돈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생활비를 자신이 벌어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시설 등 사회적 지원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400만원을 가지고 나와요. 처음에는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월 25만원 정도인데 기본으로 김치랑, 밥만 나오고. 처음에 시설을 나갈 때 대책없이 나갔어요. 답답해서 그냥...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진학을 한 경우 1년 정도 자립생활관에 있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등록금과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았어요. 400만원은 건드리지 않

고 그것을 등록금으로 쓸려고요.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거랑 주로 인력소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거로 생활비와 고시원비를.

1학년2학기 때는 자립금 해서도 하고 반반 정도 했어요. 150 정도 썼고, 2학년1학기 때는 작은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2학기 때는 시설에서 해 준 복지장학혜택으로 다녔구요.

사례2의 경우도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이 대학 졸업 후 자립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저는 그냥 원래 대학 안 가려고 하다가 누나가 대학이라도 나오라고 해서 접수되는 곳 아무데나 지원해서 간 거예요.

따라서 사례2는 전공을 바꾸어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자신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공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자 새로운 전공을 찾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민 중에 있었다. 이 사례는 본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진로지도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2년간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는 무관하게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일하면서 막연히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진학을 목표로 이제 교육도 받고... 미디어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용직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돈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애들은 가정적인 애들보다 경제적인 교육 같은 거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경제적인 면과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시설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 진로교육, 인간관계교육,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어려워요. 사회에 나가 적응할 때까지 필요한 금액 최소 개인당 1,500만원은 있어야 나가서 집을 얻고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누나랑 연락은 되기는 하는데, 제가 많이 인터넷동호회 모임이나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죠.

사회가 어떤지, 직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체험해 본 다음에나 알 수 있고, 정말 돈 벌기가 힘들구나 ... 그런 거를 경험해 봐야 고등학교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물 안에서 키우니까... 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심리적으로 대개 취약해요. 성격이 아예 소심해지거나, 아예 거칠어지거나 극단적으로 변해요. 애들의 성격이 약간 중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요.

심리상담 같은 거. 애들이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해결 안하고 그냥 커버려요. 상담을 고등학교 끝자락 무렵에 한두 번 하나씩 그때 들어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짧고 그렇게 해도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사례2의 경우, 퇴소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시설에서 처음 나왔던 시기라고 했다.

처음 나와서 막 첫발 내디딜 때 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 진학형 사례3

위의 두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진학형 사례3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고, 전공을 살린 미래의 삶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그 밖의 생활비와 용돈은 시설에서 나오는 지원비(20만원)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해결이 되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졸업 후의 진로와 경제적인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특별한 걱정은 없어요. 학교에서 시설아동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4년 동안 전액 면제해 주는 걸로... 평점이 2.0 그 정도만 계속 넘으면 학교에서는 면제해 주신다구 하였어요.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는 주말에 아르바이트. 학교에서 우리 과 선배님들의 일을 도와드리거나. 또 시설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시거든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요.

조경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졸업한 후에 우선은 대학원까지 생각하구요. 대학원 나와서 어느 정도 실적도 쌓고, 개인사무실을 내고 싶어요. 학교 내에서 4학년 때 대학원을 희망을 하면은 1년을 무료로 해줘요.

(4)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

대학에 진학하는 퇴소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로는 첫째,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과 선택의 문제 둘째, 주거문제 셋째, 학비와 생활비 문제 넷째, 영어 등 기초과목 실력부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긍정적 적응과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을 진학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학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진학지도 없이 주먹구구식이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학과 선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음을 위의 사례들이 밝혀 주고 있다. 진학지도는 조기에 시작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타 시설들과 연계하여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체계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비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퇴소청소년들은 학교기숙사, 고시원, 자립지원관, 월세집 등에서 생활하게 된다. 고시원과 월세집의 경우는 퇴소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비용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전세비용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대학생의 신분에 맞게 그 운영방법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전환해 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퇴소청소년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퇴소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너무 많은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어렵게 선택한 대학진학의 취지를 무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학비와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과 대학교의 장학금제도와 후원자를 통한 장학금 등.

넷째, 국어, 영어, 수학 등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학과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퇴소청소년들의 경우 국어, 영어 등 기초과목 학업능력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이 이 연구의 몇몇 사례에서 밝혀졌다. 특히 시설청소년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학을 위한 조기 지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취업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4명의 취업형 퇴소청소년들의 경우, 사례1은 현재 본인이 있었던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고 있다. 11년 전에 시설에서 퇴소하여 시설에서 잠시 근무하다 중간에 몇 차례 다른 직업을 거쳐 다시 복지관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사례2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설에서 나와 신문배달과 주유소 등의 일을 전전하다 22살부터 지업사에서 일하기 시작해 6년째 근무하고 있다. 사례3은 고3 때 병원에 취업해 1년간 근무한 후 다단계 판매, 호프집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력을 거쳐 22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를 거쳐 현재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사례4는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생활관에서 2년 6개월간 지내 오면서 선물포장을 하는 생산직 노동자로 6개월간 근무한 후 두 번째 직

장에서 칩조립 생산직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실수가 잦아 회사 측으로부터 휴직조치를 받고 있다.

(1) 취업형 사례1

퇴소후 잠시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나 대규모 시설에서의 엄격하게 짜여진 일상생활 규칙에 적응하기 힘들어 시설을 나와 독립하였다. 그러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시설 동료들의 경우, 퇴소후 주거지를 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자들의 경우는 동거를 통해 남자들의 경우는 나이트 등 유흥업소 취업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근데 그 때는 무조건 나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으니까요. 힘들고... 여기에 왜 있냐? 왜냐면 그 때는 지금 이렇게 소속사가 아니었고, 대숙사, 기숙사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단체생활이었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에 다 같이 밥먹고, 다 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청소시간에 청소해야 하고. 그런 생활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았어요. 제 동기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졸업하면 내가 여기를 오나봐라.

그런데 나가면 할 게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와서 철들었지만, 그 때는 저도 몰랐죠. 조금 빨리 철이 들었더라면 좀 더 있었을 켤... 지금도 동기들 보면 직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그 저녁 밤일 하는 애들이고... 직장을 들어가면은 있지를 못해요. 직장에서 야단 한번 맞으면은 이제 화내면서 나오는거죠. 내가 뭐 그거 하나 못하냐? 왜 여기 있냐? 그런 생각...

저희 나갈 때 100만원이라는 돈을 줬어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100만원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 뭘해요?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여기세 생활하면서 큰 아이들을 맡아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모아 둔 돈 가지고 방이라도 얻었는데... 그 당시 개네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숙사밖에 의존할 데가 없었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다 빨리 빨리 동거를 해버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이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하고.

시설에서 퇴소한 후 공고에서의 전공을 살려 중고가전제품수리점에서 일하기도 하고, 테크노마트에서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는 공고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중고 가전제품 그러 고쳐서 파는 거 있죠?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 강변 역세 테크노마트에서 일하고... 한 6개월. 노가다니깐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점심시간 한 시간 빼고는 뭐 계속 일을 하는거죠.

밖에서 집 얻어서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는 쪼개서 써야죠. 근데 월급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때는요.

IMF 여파로 실직 상태가 되자, 시설 원장님이 시설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여 자신이 생활했던 시설의 종사자가 되었다. 시설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기 위해 야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자격증도 났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돌보는 자신의 직업에 대체로 보람과 만족감을 갖고 적응하고 있다.

그 때 IMF라고 해가지고 그 여파를 받았거든요. 그 때는 건축 일을 했었어요. 전기를 하다가 IMF 때문에 그만두고 한 일 년 놀다가 다시 원장님이 또 들어오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사회복지사들인데... 그냥 뭐 배운 게 이거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복과장 아이들한테 잘한다. 아 빠처럼 형처럼 잘 해준다. 저는 그냥 스스럼없이 놀거든요. 그냥 같이 노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것과 경제적인 면에서 미흡함을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예.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보자 그러는데...

일단은 방 한칸에서 옥탑방에서 살거든요. 이 정도 나이 되면 그래

도 방 2칸짜리에서 살고 있고 좀 그려야 될텐데... 방 한 칸짜리에 살고 있으니까 첩피하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 한 60점...

(2) 취업형 사례2

사례2는 고등학교 때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번 가출을 반복하다 결국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시설에서 일찍 나온 것에 대해 많이 후회를 하였다.

생각이 커지는데 단체 생활하니까 하나만 누가 잘못해도 단체로 다 같이 혼나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나 혼자서 나가서도 혼자 내가 돈 벌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니까 어리면서 제 생각에는 컸다고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의지력이 많이 약해가지고. 저지르고 나서 저는 후회하는...

그냥 거기서 책만 들고 나왔어요. 되게 많이 후회해요.

퇴소 직후 주유소, 신문배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학업을 지속하려 노력하다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했다.

주유소와 신문배달을. 맨 처음에는 제가 두 탕을 뛰었었어요. 주유소는 한창 기름 냄새 때문에 싫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신문배달이 두 탕을 뛰니까 너무 일이 힘들더라고... 다행히 주유소가 막상 일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아니더라고요. 신문배달은 그만 두고 주유소에서 숙식하면서 학교 다니고 하다가.

초창기에는 좀 열심히 나갈려고 하다가...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 그게 좀 의지력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주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 많이 게을러져서 학교도 그냥 듣성듣성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올라갈 때 쯤에 자퇴를 했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현재의 지업사 일을 6년째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근무 환경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막연히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생각 중에 있다. 자신에게 맞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좀 끈기가 되게 없어요. 두달 하고 그만 돌려고 한번 얘기했는데... 여자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접고 한 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그래서 해봤더니 나중에는 두 세 달 더 하다 보니까 몸에 맞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요.

월급쟁이가 뭐 만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냥 할라고 열심히 그냥... 항상 일상생활처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긴 하는데 사무실처럼 선풍기나 이런 게 없어요. 종이가 움직이니까. 겨울에는 춥고... 불나면 안되니까.

내년 초췌인가 지방에 내려갈려구요. 여기 그만두고 아버님 친척분이 그 쪽에 계시는데... 자기 장사하는 게 좋을거라 해서. 그래서 생각은 무궁무진해요.

자신의 의지력이 약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교제했거나 동거했던 여자친구들에게 의지하면서 해결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극복하려고 노력하곤 했다. 주거문제는 그 동안 만났었던 여자 친구들과 동거함으로써 공동으로 해결하여 왔다.

제가 좀 의지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고3때 여자친구를 만났잖아요. 여자를 만났는데 많이 의지가 됐거든요.

저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도 받고 여자친구랑 살다가... 먼저 집 구해 놓고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 그런데 그게 점점 더 길어져서 나중에 또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다른 여자를 제가 보게 되가지고...

현재는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여자친구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도 얻고 있다.

여자친구 집에 살아요. 아버님한테는 허락을 받았고요.

퇴소청소년들에게는 퇴소 후에도 시설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도움의 수단이 되고 있었다. 함께 생활했던 동기나 선후배와의 만남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이들이 퇴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가 19살 때인가 오토바이 피자배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애를 한 번 쳤었어요. 거기다 제가 무면허였어요. 벌금이 나오고 했는데 원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 때 원장님이 친구를 시켜서 머리로 돈을 내고...

(3) 취업형 사례3

사례3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했는데 통제가 너무 심한 것이 부담스러워 자립생활관에서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다. 보증금 700만원 짜리 월세집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2-3년간 직장생활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자립생활관에서 한 일 년 있다가 나왔어요. 한 3-4년은 살아야 하는데... 짝짝 막혀있는 게 너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차라리 통금시간도 없고 자유롭게 내버려 뒀으면 아마 거기서 계속 있었을 거예요. 너무 너무 강압적인 게 많았어요.

자립관에 가서 제가 일 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때 내가 19살에 나왔을 때 스무살 딱 되고 나서 바로 그 봉천동에서 처음 자취를 했거든요. 그 때 보증금 700만원 갖다 넣고, 그리고 월세 십 얼마인가 이십 만원인가 주고 살았거든요.

성심병원에 19살 때 취직해 가지고 20살. 거의 1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중간 중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어요. 직장생

활은 병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아르바이트는 뭐 이것 저것. 다만
계나 호프집, 미용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
거가 결혼으로 잘 이어져 현재는 전업주부로서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족
함을 느끼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제 신랑을 21살 때인가 22살 때인가 만났거든요. 연애 한 몇
달 하다가. 아~ 연애라기보다는 한 달 정도 만나다 바로 동거하기 시
작하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 했거든요. 동거하다가 오빠가 그냥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냥 오빠가 하자고 해서, 나랑 살고 싶어 한다는데 그냥 뭐 하지...
내 인생이 달린걸 몰랐다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못할 것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런 생각이 더 컸지. 살다보니까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되게 많이. 결혼하고 생활했을
때는 항상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자식이
받쳐주고, 서방님이 받쳐주고 하니까 생각보다 결혼생활이 단지 애들
때문에 좀 힘들고 스트레스는 있어요 결혼생활은 괜찮아요.

여기 집은 천만원 이에요. 이 집 주인이 이걸 부셔서 원룸을 만든
다 하더라고요. 그 동안에만 저희보고 이삼년을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천만원 주로 월세비가 삼십오만원 정도씩...

돈 문제와 애들 문제 빼놓고는 제 생활은 불만은 없어요.

밝은 성격으로 인해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나 남녀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제가 우리 신랑 만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했어요. 젊은 나이에든. 고
등학교 다닐 때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워낙에 니가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니가 어두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다. 너는 진짜 밝다. 우리 시엄마는 그런 것 때문에 날 다 이빠라 했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딱 잡아놓고서 시작을 해서 이뤄 나가면 그 성취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또한 자신이 생활했던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를 통해 시설과 연계 되어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설이나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연계는 퇴소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보육원에서 저렴하게 해서 저희 도와주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 나랑 같은 학년 친구들. 자주 만나요. 개네 둘 둘 다 애엄마예요.

그러나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함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의 전처를 밟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애... 난 애네들을 막 두드려 패고, 내가 정신없을 때는 애네들 신경도 못써요.

난 솔직히 애를 안 낳을 줄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오빠랑 살다가 무슨 이유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애네들 또 부모 없는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애네들도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하거든요. 흑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애들은 보육원에 보내지 말자. 내가 힘들어도 끼고 살자 이런 생각은 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 했던 경험이 자신이 부모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식으로 발전한 것 같다.

엄마랑 지낸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 엄마란 존재가 가슴 떨리게 아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면 보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지금도 만약에 엄마를 만난다고 하면 지금 통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만난다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나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쭉날쭉을 낳았는데도 엄마가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만약에 아빠랑 살았으면 학교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아빠는 아직까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거든요.

(4) 취업형 사례4

사례4는 경증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자립생활관에서 2년 6개월간 생활하면서 선물 포장과 칩조립을 하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최근 작업과정에서 불량이 많이 나와 직장을 쉬고 있다. 그 동안 직장생활로 번 돈을 기본적인 용돈을 제외하고 자립생활관 선생님들이 관리해 주고 있다.

한달에 100만원씩 받아서 교통비 2만원 쓰고, 2-3만원 관리비 내고, 4만원 정도 생활비 쓰고 90만원 정도 적금 부어요.

6개월 후에는 자립생활관을 나가야 되는 데 현재로서는 주거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원래는 나가면 동네 아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랑 같이 살라고 하는데 그 언니가 연락이 안돼요.

경증 정신지체장애로 직장에서의 작업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대처능력도 일반인보다 떨어져 주위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재한 상태이다. 면접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답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따라서 일반 퇴소청소년과는 달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취업하는 퇴소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로는 첫째, 주거문제 특히 동거를 통한 주거문제의 해결 둘째,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취업 셋째, 경제교육과 성교육 등 일상생활 교육 미흡 넷째, 퇴소 후 시설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부재 다섯째, 경증장애청소년과 같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로 하는 퇴소청소년 지원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퇴소 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자립생활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형 청소년들이 퇴소 후 가장 먼저 당면하는 문제는 경제적 독립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기 취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담당한 지도자를 시설에 한명씩 배치하고 자립지원센터와 정보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취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취업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취업청소년의 경우 안정된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직종을 옮기고 있다. 자립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립지원센터와 시설 그리고 퇴소청소년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형 퇴소청소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주거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거를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교육과 성교육 등 일상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섯째,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퇴소청소년의 경우 사회생활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설이나 시설에서 관계 맺은 동료들이다. 따라서 퇴소청소년들이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례4의 경증장애청소년과 같이 특별지원이 필요한 퇴소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3명의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들의 경우, 사례1은 대학 일본어학과를 7년 만에 졸업하고 현재 D 인터넷 포털회사 기획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퇴근시간 후에 일본어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시설 퇴소 후 어머니를 만나 5년 전부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2는 퇴소하여 6개월간 기관과 연계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현재는 엄마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지 1년 정도 되었다. 교보생명이 4년간 주는 장학금으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시각디자인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사례3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양아버지와 다시 연락이 되어 고3 때 양아버지와 재통합하게 되었다. 현재 충청권 대학 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비는 양아버지가 대주고 있다.

(1)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사례1

사례1은 우연히 접한 보육시설 청소년 대상 수시요강을 보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딱히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뽑는 게 있어서. 보육시설 수시... 우연하게 그런 책자를 보다보니까 발견해서... 대학을 딱히 처음부터 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서. 저도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다들 비슷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동생이 시설에 있기 때문에 2년을 더 시설에 머물다가 동생과 함께 방을 얻어 자립하게 되었다. 이 때 경제적 능력 부족과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자립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명이 전세를 얻을 정도의 주택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소한 두 명이서 전세 얻을 정도는 되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로 하면 자립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월세가 한두푼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나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자금적인 여유도 좀 안되고, 모자른 경우도 있고... 제일 큰 건 혼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적응이 됐긴 한데 처음에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돈 없이 살려고 하니까... 알바도 그냥 이것 저것 다 하고... 학교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연락이 된 어머니와 재결합해 세 식구가 5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헤어져 있어서 가족 간에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는 없지만 서로 맞춰가고 화합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오래 떨어져 살다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저야 뭐 동생이랑 엄마랑 친하려다 보니까. 둘한테 잘 할라고 하다보니까... 서로 생각도 다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산지도 5년은 됐나? 일단 안 맞는 건 많아요.

셋이 살다 보니까 . 방이 두개라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런 게. 공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죠. 너무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사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 세 식구가 생활비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월세는 40만원 정도 나와요. 45만원... 관리비까지 하면 그 정도 나가고... 전기세 이런 거 빼고. 그거는 동생이랑 저랑 같이 하고. 뭐 따

로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은 엄마가 하고. 분배해서 하는...

지금은 서로 분배해서 하다 보니까 딱히 어려운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월세라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돈이 딱히 모이지 않는 것 빼고는 괜찮아요.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통해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였는데도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없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장차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원래는 전공을 살려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 지금은 일본어라는 전공이 딱히 메리트가 없어서 다른 기술을 배워볼까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냥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하는 게 없어요.

퇴소 후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자신이 생활했던 시설이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시설이죠. 대학비를 한 번 주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담 많이 하고... 몇 분만 지금 연락을 계속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삶에 만족하고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해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만 빼면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솔직히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낮다고는 생각지 않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때 그냥 보통 정도로...

(2)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사례2

사례2는 퇴소하여 6개월간 기관과 연계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현재는

엄마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 지 1년 정도 되었다.

저 퇴소하기 3일 전에 퇴소하는 거 들었어요. 밤에 학원 다녀와서 새벽 2시에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구요. 아 그러니깐 퇴소할 거야 알려주시긴 하는데... 저는 최소 제가 입학하고 나서 몇 개월 있거나 입학하기 전에 퇴소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렇게 하니깐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 2006년 7월쯤 가족과 합친거죠. 교회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에 있을 때 힘들고 그래서 엄마랑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갔죠. 제가 나와서 교회 자립관에 살 때 오빠가 먼저 엄마랑 합쳤어요.

교보생명이 4년간 주는 장학금으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생활비는 스스로 알바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보생명에서 장학금 뽑아서 20명씩 주는 거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류 단계 걸쳐서 선발이 되면 그 때부터는 3.0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교보생명이랑 계속 관계를 맺어야...

기관에서 나와서는 지금 엄마랑 사니깐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는 데... 나와서는 40만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었죠. 관리비, 세금, 학교차비, 학교생활비, 재료비, 그 외에 유희비도.

엄마와 함께 사는 현재 생활에 경제적, 정서적 두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학교 과제와 알바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경우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졸업 후 광고디자이너의 꿈을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

엄마하고 사니깐 편하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단체생활 때보다는 선생님 일일이 세밀히 신경써주지 못하셨는데 ... 개인적인 요구는 할 수 없었는데 엄마랑 있으면 편하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나 경제적인 것들도 도움이 되고 좀 안정감이 있죠.

가족통합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다른 청소년들을 위해 장려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생활할 때부터 정규적으로 부모와의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거기 안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랑 진짜 가족이 있으면 나가서도 정착하기 편하잖아요. 가족들이 있어도 같이 못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안 살거나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퇴소하기 전에 정규적으로 만나 이라기 보다는 연락을 한다던지 하는 그런 것이 있음 좋겠어요.

가족과 통합한 경우에도 퇴소청소년들은 시설선생님들과 상담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퇴소준비를 시킬 것을 요구했다.

퇴소하고 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정기적으로라도 가끔이라도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힘들었던 게 거기 살 때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친했었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니깐 되게 남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 다시 가도 내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 시점부터 어른이 되었으니깐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아무 것도 모르는데... 퇴소하기 전에 아이들 모아서 막 교육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이 와 닿지는 않았어요.

저 퇴소하기 3일 전에 퇴소하는 거 들었어요. 밤에 학원 다녀와서 새벽 2시에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구요.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사례3

사례3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양아버지와 다시 연락이 되어 고3 때 양아버지와 재통합하게 되었다. 양아버지와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재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기관이 신중하게 중재하였다.

저는 좀 처음에는 집(시설)에서 너무 자주 만나지 말라고 그러가지고 아빠를 피해다녔거든요. 근데 아빠가 매일 매일 아빠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잘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딸이 성인이 됐으니까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걸 알고 아빠가 채갈려고 했던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부모님이 계셨어요. 안 계신 분들이 조금 밖에 안됐어요.

현재 충청권 K 대학 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비는 양아버지가 대주고 있다. 대학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취업을 할까 대학을 갈까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를 갔지만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무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 또 고등학교가 원래 취업이 성적이잖아요. 그니까 웬만한 회사 못가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난 대학을 가야겠다 해서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야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방면으로 많이 알 수 있고, 고등학교는 좁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반장, 부반장 이게 최고의 그거였잖아요. 지위였는데 대학교 때는 뭐 동아리도 여러 개 있고. 그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양아버지와 재통합으로 주거문제와 학비가 해결할 수 있었으나 새어머니와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집 구하는 데 어려울건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막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다 대주시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가 경영과여서 경상학 계열이어 가지고 저는 그 쪽으로밖에 진학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솔직히 적성에 맞긴 맞아요. 마켓팅 부분보다도 그냥 경리 회계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아모래 퍼시픽 경리 쪽으로 가고 싶어요.

시설에서 나는 왜 나만 이런데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비관을 했는데 커가면서 대학을 지방에 갔지만 그래도 대학을 간 게 자랑스럽고...

또한 양아버지의 부탁으로 가정의 화목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어머니와의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어머니와는 안 좋기도 하고 뭐.. 근데 지금은 그냥 아빠가 쳐주면 안되냐고 그래서 아빠 말 들어야죠. 원래 처음에 쳐주지 싫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빠를 위해서 그냥 쳐주고 있죠.

(4)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 연구의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들의 경우 세 사례 모두 대학 진학이 사회적응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진학형 퇴소청소년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해서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가족통합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가족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통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소청소년들이 퇴소하여 자립할 때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주거와 생활비, 학비 등의 경제적 문제를 부모와 분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퇴소 후 모든 것을 갑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형 퇴소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친밀하게 형성하지 못했을 때의 심리적 부담을 들 수 있다. 둘째, 부모가 적절치 못한 가치관이나 성향을 지니거나 부모역할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 관계자와 부모 간에 입소시부터 퇴소시 가족통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시설에서는 청소년과 해당 부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담 상담사를 배정해 주어야 한다.

셋째, 가족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퇴소 전에 가족통합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퇴소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켜야 한다.

VI. 정책제언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2. 서비스 영역별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VI.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아동복지 관련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파악을 통하여 얻은 함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퇴소청소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크게 하드웨어적 속성의 제도적 차원과 소프트웨어적 속성의 서비스 영역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 방안을 크게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대책 수립,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 체제 마련, 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청소년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체제 마련,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지급 제도 확립, 자립지원시설의 개선, 직업훈련시설의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과 전문인력의 보강, 특별한 퇴소 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 구축,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충과 표준화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 대책 수립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의 핵심 기능을 “보호와 양육”에서 “보호와 양육 그리고 자립”으로 크게 바꾸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⁴⁴⁾은 “보호를 필요로

44)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만 볼 때에는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대부분은 아동양육시설이고 다른 시설은 대체로 아동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대부분의 보호받는 아동은 직업훈련시설이나 자립지원시설을 거치지 않고 양육시설을 퇴소한다. 결국, 대부분의 아동은 적절한 자립지도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퇴소 청소년 중 68.2%는 아동양육시설에 10년 이상 있었으며 전문가의 98.2%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대부분의 보호받는 아동은 직업훈련시설이나 자립지원시설을 거치지 않고 양육시설을 퇴소한다. 결국, 대부분의 아동은 적절한 자립지도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을 아동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자립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동양육기관의 핵심 기능에 ‘자립’을 포함시키지 않은 한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에 근거해서 아동양육시설은 자립지도의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일상생활훈련, 진로지도교육, 직업현장체험, 아르바이트 기회제공, 직업지도 후원자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⁴⁵⁾.

2) 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 체제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 제9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양육시설의 입소를 돕거나 퇴소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45)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4월부터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제도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회균등할당제’를 통해서 대학과 대학교에서 정원의료 11%까지 모집하여 2년 동안 등록금을 지불하고, 3학년 이후에는 B학점 이상을 취득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구상 등은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해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중인 아동이나 귀가조치 한 아동의 ‘사후지도’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도 퇴소 이후에는 사후지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기에 이들의 자립은 방임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체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시설 전문가들이 퇴소 청소년 사후지원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업무의 과다로 인한 전담인력배치의 어려움(32.8%)과 필요한 재정의 부족(27.6%),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의 부족(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49.1%였으며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1:1 상담을 통하거나(12.3%) 정기적인 수업, 강의를 통한(5.3%) 경우 정도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소청소년을 위한 전담인력배치방안이 하루속히 가시화되어야 하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오클라호마 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처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소외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⁶⁾.

46)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 18세가 되어서 양육보호를 떠난 청소년 중 21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국립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의 직통전화 1-800-397-2945로 전화만 하면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청소년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체제 마련

퇴소청소년을 위해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에 그 수가 매우 적고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이후까지 집단생활을 하려는 아동, 청소년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1개소 이상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청소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단체생활보다는 가정집에 유사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해당되는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은 각 시설마다 분원으로서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현재 공동생활가정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즉, 아동양육시설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경우에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뿐 퇴소 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지원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 3월 27일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 것은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에 입소아동에 대한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신설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게 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아동 1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에 지대한 관건이 될 것이다.

4)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지급 제도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가 있다. 적게 주는 자치단체는 100만원이고 가장 많이 주는 곳도 500만원인데, 이는 7평 원룸의 전세보증금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퇴소청소년은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기 쉬운데, 이러한 일자리는 영세규모의 제조업체나 음식숙박업소 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심지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길 요구하는 일자리일 수도 있다. 국가가 퇴소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대도시 일부지역에 있는 “고시원”이나 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보증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을 활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가출청소년과 유흥업소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열악한 주거환경은 퇴소청소년의 건전한 자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반 주택지에 있는 단칸방 혹은 원룸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2은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2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해당지역에서 원룸을 얻을 수 있는 액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에 뭉돈이 들어가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권자가 되어서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정착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기 어려우면 당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주택에 시설 퇴소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⁷⁾.

47) 현재 주요 대도시의 공단지역에 있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경우 월 2만원 내외의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은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자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

이처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2007년 4월 보건복지부가 새로 채택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사업 세부추진 방안⁴⁸⁾’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자립지원시설의 개선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대부분 자립지원 대책이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 13개소의 아동자립관(자립지원시설)에서 2006년 현재 살고 있는 청소년은 235명인데 이는 같은 해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2,946명의 8.0%에 불과하다. 이들이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퇴소청소년의 5%미만만 자립지원시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퇴소청소년의 95%이상은

면 우선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상당수가 당초 입주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주하기에 입주자의 관리를 조금만 철저히 하면 욕구가 강한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도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등을 개정하거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48)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매입임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자가 새로 포함된 것이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임대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이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 및 무주택 가구이다. 지원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에 수도권·광역시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 환금액이다. 지원기간은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만 25세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이고, 만 20세 이후 입주자가 이자(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 2%)를 부담한다. 입주 이후에는 추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의 생활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로서 사후지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시설에 해당하는 일본의 아동양호시설의 경우 자립 지원을 포함한 원조를 하기 위해 입소단계에 관한 입소 보호(admission care), 시설 입소 중의 케어(in care),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리빙케어(leaving care), 시설 퇴소후의 사후케어(after care) 등 각각의 케어에서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자립지원센터의 역할을 정상화시켜 시설 퇴소후의 사후케어(after care)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1인당 월 30,000원 가량의 운영비로는 부족하다. 즉, 생활자들의 자립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관 운영보조금의 증액이 절실하다.

6) 직업훈련시설의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과 전문 인력의 보강

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에서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소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퇴소청소년의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설아동과 빈곤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시설내의 직업교육의 확대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의 활성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직업훈련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직업훈련 교과목을 현대사회의 취업 변화에 맞도록 하고, 직업훈련시설을 이용하는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설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설인력의 전문성과 자격강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직원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특별한 퇴소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 구축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단순히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에는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다.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하는 ‘아동상담소’가 있지만, 서울에 두 개 있는 공립 아동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상담소의 역할은 기아, 미아, 가출아 등을 상담하고 일시 보호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데도 부족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복지관’은 전국에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고, 아동학대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상당기간 보호하며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적어도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그리고 주요 대도시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과 예산은 정원이 점차 줄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시도단위로 1개소 이상씩 줄이고, 대신에 그 시설 혹은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8)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충과 표준화

아동양육시설은 퇴소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시설을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아동이 주체가 되고 책임을 지는 개별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로 정보 수집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시설 내에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복지시설마다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필요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상담, 정서개발 프로그램, 인지 개발 프로그램,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 성교육·상담프로그램, 가족관계 유지·복귀 프로그램, 자립지원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확충과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은 하루빨리 국가규모의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퇴소아동이 충분한 자립준비를 한 상태에서 퇴소하고, 퇴소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들은 재원이 없는 주입식 교육밖에는 할 수 없으며 직접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 실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가차원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살펴본 미국 오클라호마 자립지원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주도적 프로그램이 실제적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구성하는 데에는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결과 나타난 서비스 영역별 필요성과 실제 수행여부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의 경우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 자금관리의 경우 ‘세금, 주거 마련 및 관리의 경우 ‘임차인의 법적권리’,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경우 ‘동호회 활용법’, 성교육 및 결혼·부모교육의 경우 ‘배우자의 책임’, 대인관계의 경우 ‘갈등관리법’, 자아성장 및 사회적 개발의 경우 ‘의사결정과정’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법’이 필요성과 실제 실행여부간에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 영역별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서비스 영역을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일상 및 가족생활영역,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직장영역, 주택 및 지역사회영역, 사회적 지지영역, 신체 및 심리적 발달영역 등으로 나누어 생활 및 욕구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서비스영역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1) 시설차원의 지속적 경제생활 교육 실시

시설아동들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2-3만 정도의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하여 취업을 하면서 받게 되는 월급은 그동안 지급받던 용돈의 20-30배에 달한다. 시설퇴소아동들이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하여 무절제한 소비로 이어지기 쉬우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여 받은 월급을 2-3일 만에 다 써버리고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월급뿐 아니라 정착금과 후원금의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칫 카드오남용 문제와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시설거주시부터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퇴소후에도 자신의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친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의 조사대상 퇴소 청소년의 59.7%는 친부모 중 한 분 이상이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소후 부모와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부모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시설 퇴소 청소년의 대부분은 퇴소후 겪는 어려움을 주로 시설의 관계자나 시설에서 만난 친구, 선후배와 상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부모의 존재가 사실상 퇴소 청소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부모로서의 역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퇴소후 아동이 시설을 떠나 거의 모든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됨을 고려해 볼때 친부모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가족관계를 일정부분 회복할 경우 퇴소 청소년이 사회와 지역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거주시기부터 지속적인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퇴소후 퇴소 청소년이 가족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자립의지 및 자립능력 향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자립의지 및 자립생활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퇴소아동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의 총평균은 2.83점(최소 1점, 최대 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퇴소시 겪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퇴소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의 자립의지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은 오랜 집단생활로 인한 자립심의 부재와 소유개념 부족, 강한 결단력의 부족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우며 스스로의 자립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위축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퇴소관련 교육 등 퇴소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2)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1)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의 함양

학교 및 또래관계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은 사회성 및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을 지적한다. 이들은 오랜 시설생활로 인해 개별적 생활과 그에 따른 다양한 관계형성에 익숙치 않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퇴소 후에도 시설 주변을 떠나지 못하거나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지속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청소년들의 43.8%가 사회적응기술 훈련(43.8%)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성 및 대인관계기술 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학업과 경제적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진학이나 학업을 희망하더라도 학비 등의 문제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에서 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제공하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책값이나 원서비 등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해 도중에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발생한다.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이나 대학진학시에도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은 결국 이들 삶의 발전가능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기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혹은 해당학교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가차원의 좀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3) 직장 영역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청소년들이 직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대부분이 충분한 정보나 직업기술교육을 받기 어려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조금 낮지만, 18-19세에 생활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취업할 곳이 일부 생산직,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보증인이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쉽게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업기술부족(20.0%), 사회적 적응력부족(16.4%), 주거해결문제(12.7%), 사회적 편견(11.5%), 학력부족(9.1%), 적성에 안맞음(0.6%) 순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1) 돌아올 수 있는 ‘집(home)’으로서 공동생활가정의 활용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달리 돌아갈 집이 없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과정들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 자립원 조흥 사업의 반은 홈에서 자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케어이다. 즉, 홈 주변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약간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애인이 생겼거나, 일을 바꾸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홈에 가끔씩 돌아온다. 즉, 자립원조흥이 청소년들이 돌아 올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지원시설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퇴소 청소년들이 오랜기간의 단체생활로 인해 자립지원시설 자체의 입소를 꺼리므로 단기간에 자립지원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퇴소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립지원센터의 입소조건 변화와 운영방식의 현실화를 통해 자립지원센터가 이러한 가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사회적 지지 영역

(1) 후원자 제도의 강화 및 퇴소 후 지속성 확보

일본의 직업지도 위탁부모제도와 프랑스의 대부모제도(le parrainage)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제도가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위탁부모, 후원자 유무를 살펴보면 위탁부모, 후원자가 있는 경우가 32.8%였으며 없는 경우가 67.2%였다.

대부분의 시설거주 청소년의 경우 시설에 있는 동안은 시설의 자원봉사나 후원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직업적 도움을 받지만 퇴소와 더불어 이러한 후원자와의 연락이 대부분 단절된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시설퇴소 청소년들은 이전에 있던 시설관계자나 시설에서 만났던 친구, 선배 등의 도움 외에는 청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부모나 형제, 친척 등의 사회적 지지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퇴소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직업탐색, 다양한 지원망의 끈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퇴소청소년을 위한 지속 지원 네트워크 및 자조집단 형성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현재 상황의 열악한 아동양육시설이나 자립지원센터에만 맡기는 것은 곤란하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 취업지원기능을 가진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등의 민간단체, 지역에서 보호와 지원기능을 가진 민생·아동위원 등이 연계하여 자립생활홈을 중심으로 청소년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⁴⁹⁾. 지원 네트워크와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

49)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지역사회의 직업지도 위탁부모, 변호사, 의사, 가정재판소 조사관, 지역의 경찰, 부동산 중개업자, 아동상담소의 사회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보건부, 직업안정소, 모자시설 등의 많은 기관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립생활홈을 중심으로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는 것은 청소년 자조집단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나고 퇴소한 청소년들끼리 교류하고 일과 인간관계의 고민 등을 이야기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자조 집단을 만드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조시설 구성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퇴소 청소년 관련 부처와 양육가정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아동복지시설 조기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 퇴소한 청소년뿐 아니라 시설에서의 부적응이나 개인적 목표로 인해 조기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자립지원금이나 자립지원시설 입소권이 주어지는 연령 도달 퇴소 청소년에 비해 시설에서 가출이나 퇴학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퇴소가 아니라 조기에 시설을 떠나는 아동들에게는 자립 정착금이나 전세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자립생활관의 입소도 되지 않아 이들이 퇴소후 생활을 영유해 나가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신체 및 심리적 발달영역

(1)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실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청소년들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특별한 아이들로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기 쉽다.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과 국가주도의 가시성 저예산 프로그램들로는 퇴소 청소년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기는 힘들며 좀더 적극적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적응의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의료보험의 무상지급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의료보험 부담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충치 및 잇몸질환(24.1%)을 겪은 청소년이 1/4인 24.1%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위장 및 내과질환(11.8%), 피부질환(9.7%), 각종사고(6.3%), 빈혈(1.3%) 등을 겪은 청소년도 상당하였다. 치료받지 않은 청소년의 28.6%는 치료비가 없어서 14.3%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지역 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며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2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종전에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또는 후원자를 통해 무료로 아니면 저가로 제공받던 의료 서비스(특히 치과진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치료를 꺼리고 몸을 망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치과진료에 많은 비용이 부담되어 아동양육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소득 유지시까지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정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서비스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부는 아동복지퇴소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4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경제(금융)소외 상태 해소 및 자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별 후원금 격차해소와 후원 확대를 위한 후원(결연)활성화하며 기존의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과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속하며 2007년 중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 이 외에도 아동양육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매입임대 사업과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도입키로 하는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진일보한 정책을 내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전체 청소년을 위해 체계적이며, 적절성을 담보해 주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서비스적 정책방안을 근간으로 지속적이고 시급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복정(2002).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0), p33-48.
- 강정선(2003).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준비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철희(200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2001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5회 학술대회 자료집,3-45.
- 교육인적자원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김남식(2004).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프로그램이 퇴소자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퇴소자 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득린(1996). 시설퇴소연장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활성화방안. 아동복지학, 4, 93-105.
- 김명호(200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성빈여자, (내부자료).
-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보건복지포럼, 78-90.
- 김성경(2003).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0(1). 117-137.
- 김순영(2002). 시설아동의 퇴소후 자립성 향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외(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순(2001). 가정환경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응석(2001).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통원 외 (200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 김향초 (2005).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김경준 외.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룡 외(1997). 현대사회와 아동, 서울: 소화.

- 노충래(2002).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기술훈련. 한국아동복지학회, 3(2), 31-48.
- 류자립(2005).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아동의 자립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윤(1999). 육아시설 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관한 연구-한국SOS어린이마을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2005).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민(2005). 사회복지시설 아동의 퇴소 후 사회적응 방안. 한영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미희(1999). 육아시설 퇴소아동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미희(2001). 육아시설 퇴소자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1), 19-39.
- 보건복지부(2002). 자립준비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6). 아동복지시설 현황 통계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서정아(2007). 학교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4). 아동복지시설의 쟁점과 과제. 2004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신혜령 연구팀(2002).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면접자료(내부자료), 서울: 국립보건원.
- 신혜령 연구팀(2002).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면접자료. 서울: 국립보건원.
-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 김성경 · 안혜영(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2.
- 신혜령 · 김성경 · 안혜영 · 문성윤(200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신혜령·김성경·안혜영·문성윤·백미진·김수정(2002). 자립준비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6호].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9호].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특성과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영(2006). 협력교수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사회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호(2001).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안집(2004). 자립지원시설의 지원프로그램과 욕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수 외(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 집.
-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이강훈(2003).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겸구(1999). 육아시설아동의 퇴소 후 자립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필(200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일 (1998). 미국의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소영(1999).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1999). 단기 아동보호시설 연구-아동상담소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단기 아동보호시설연구 I, 163-177.
-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서울: 양서원.
-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서울: 은평천사원 출판부.
- 이용교(2001). 복지는 생활이다.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교(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교(2007). 디지털 사회복지 개론. 서울: 인간과복지.
- 이용환(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5, 115-136.

- 이윤경(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수(200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실제와 방향정립 -미국과의 비교.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001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5 회 학술대회.
- 장운정(1996).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종희(2005).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퇴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순·송연경 (2002).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진입을 위한 학교세팅에서의 직업교육강화방안: 한국과 미국 비교. 정영순·강철희·김미혜 편. 고용과 사회복지. 이화여대출판부.
- 정진영(1996). 사회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사회적응 문제. 아동복지학. 4호. 9-28.
- 조임국(2004).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정도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권지성(2002). 시설 청소년의 학대후유증 연구: 학대결과가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9(2), 211-231.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동식(2001). 수용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실태에 관한 연구-대전지역 육아복지시설의 퇴소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자(2000). 육아시설 퇴소 예정 아동의 취업 및 자립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 외(1999). 요보호청소년의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아동복지학회(200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강화방안. 2001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5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청소년개발원(2002).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 현은민·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황실리(2000). 육아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sell, D., Morse, J. & Nollan, K.(2001). Description of ACLSA and Life Skills Guidebook, Casey Family Programs. NY: Sage Publications.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5).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Allowance Guidelines.
- Barth R. P.(1986). Emancipation services for adolescents in foster care. *Social Workers*, 165-171.
- Berrick, J. D., Barth, R. P., Needell, B., & Jonson-Reid, M.(1997). Group care and young children. *Social Services Review*, 71, 257-274.
- Boots, S. W., & Geen, R.(1999). Family care or foster care? How state policies effect kinship caregiver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Braziel, D. J. (1996). Family-focused practice in out-of-home care. Washington, DC: CWLA Press.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2005). CWLA's Position on Residential Care.
- Cook, R. J. (1994). Are We Helping Foster Care Youth Prepare for Their Futur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16, 213-239.
- Craig, C., & Herbert, D. (1997). The state of the children: An examination of government-run foster care. Dallas, TX: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 Curry, J. (1991). Outcome research on residential treatment: Implications and suggested directio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3), 348-358.
- Dicker, S., Gordon, E., & Knitzer, J. (2001). Improving the odd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foster care. New York: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 Drais-Parillo, A. (2002). 2001 salary study. Washington, DC: CWLA Press.
- Fanshel, D.(1990). Foster children in life course perspectives: Casey Famil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arruggia, S., Grrenberger, D., Chen, C., and Heckhausen(2005). Perceived social environment and adolescents's well-being and adjustment: Comparising a foster care sample with a matched sam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35(3), 349-358.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2002).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2002. [Online]. Available: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pdf/ac2002/ac_02.pdf
- Hobbs, N. (1982). The troubled and troubling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Huefner, J. C., Oats, R. G., & Thompson, R. W. (2004). Adult outcomes of Girls and Boys Town youth. *Rapport*, 8(2), 8-9.
- Iglehart, A. P.(1994). "Adolescents in foster care: Predicting readiness for independent perspectiv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Kadushin, A. (1974). *Child Welfare Service* (2nd ed.). New York: MacMillan.
- Larzelere, R. E., Daly, D. L., Davis, J. L., Chmelka, M. B., & Handwerk, M. L. (2004). Outcome evaluation of Girls and Boys Town's Family Home Program.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7(2), 130-149.
- Maluccio, A., Krieger, R., & Pine, B.(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An overview, 5-17.
- Mech, E. V.(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 *Child Welfare*, 67, 487-495.
- Mech, E. V.(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41-145.
- Pecora, P. J (2005).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ogram. In J. M. Jenson & M. W. Fraser, *Social policy for children and families: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pp.19-6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 Plotnick, R. D.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yan, P.,Mcfadden, E.J.,Rice, D., and Warren, B.L.(1989), The role of parents in helping young people develop emancipation skills. *Child Welfare*, 68(6), pp.563-573.
- Stern. D. (1995). *School-to-Work: Research 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Falmer Press.
- The NYS 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 Work Group Safety and Well-Being in Residential Care Steering Committe(2006). *Residential Care in New York State: 2006 and Beyond*.
- U.S. DHHS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02a). *Address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 Care*. Fact Sheet. [Online]. Available: <http://www.ahrq.gov/research/disparit.htm>
- U.S. DHHS Office of Minority Health. (2002b). *Teaching Cultural Competencies in Health Care: A Review of Current Concepts, Polici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U.S. DHHS.

Whittaker, J. K. (2000). The future of residential group care. *Child Welfare*, 79(1), 59-74.

Wulczyn, F. H., Brunner, K., & Goerge, R. M. (1999). An update from the multistate foster care data archive: Foster care dynamics(1983-1997). Chicago, IL: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University of Chicago. <http://www.cwla.org>

Zimet, G. D., Dahlem, N. W., Zimet, S.G., & Farley,(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東京都児童福祉施設等子どもの権利擁護検討委員会(1999), 「児童福祉施設サービス評価基準Ⅱ-2-11 就労自立・退所」.

東京都児童福祉審議会(2005), 「社会的養護の下に育つ子どもたちへの自立支援のあり方-少子社会の進展と子どもたちの自立支援(中間のまとめ) 2005年 8月 31日.

鈴木 力(2005), 児童養護実践の新たな地平, 川島書店.

望月彰(2004), 自立支援の児童養護論-施設でくらす子どもの生活と権利-, ミネルヴァ書房.

北川清一(2000), “子ども家の福祉と ソーシャルワーカー 児童養護施設における自立支援計画の策定 をめぐって” ソーシャルワーカー研究.

山田勝美,(2002), 児童養護施設における虐待を受けた子どもへの自立支援 `村井美紀・小林英義編著, 虐待を受けた子どもへの自立支援-福祉実践 r からの提言, 中央法規.出版.

山田勝美,(2003), 施設養護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ク, 鈴木 力編 , 児童養護実践の新たな地平, 川島書店.

山縣文治(2005). 児童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 .

林浩康(2006). 児童養護施策の動向と自立支援・家族支援, 中央法規.

浅倉恵一外(2004). 新・子どもの福祉と施設養護. ミネルヴァ書房.

長谷川真人編著(2007), 児童養護施設における自立支援の検証, 三學出版.

全国保育士養成協議会現代保育研究所(2001), 「児童福祉施設・サービスの第三者評価基準」.

全国児童養護問題研究会(1999), 「自立に向けた養護の取り組み」, 第28回 全国大会 第4分科會.

全国社会福祉協議会(2000), 「児童福祉施設サービス自主評価基準」

田澤あけみ外(2002). 新児童福祉論. 法律文化社.

竹中哲夫外(2005). 新・子どもの世界と福祉. ミネルヴァ書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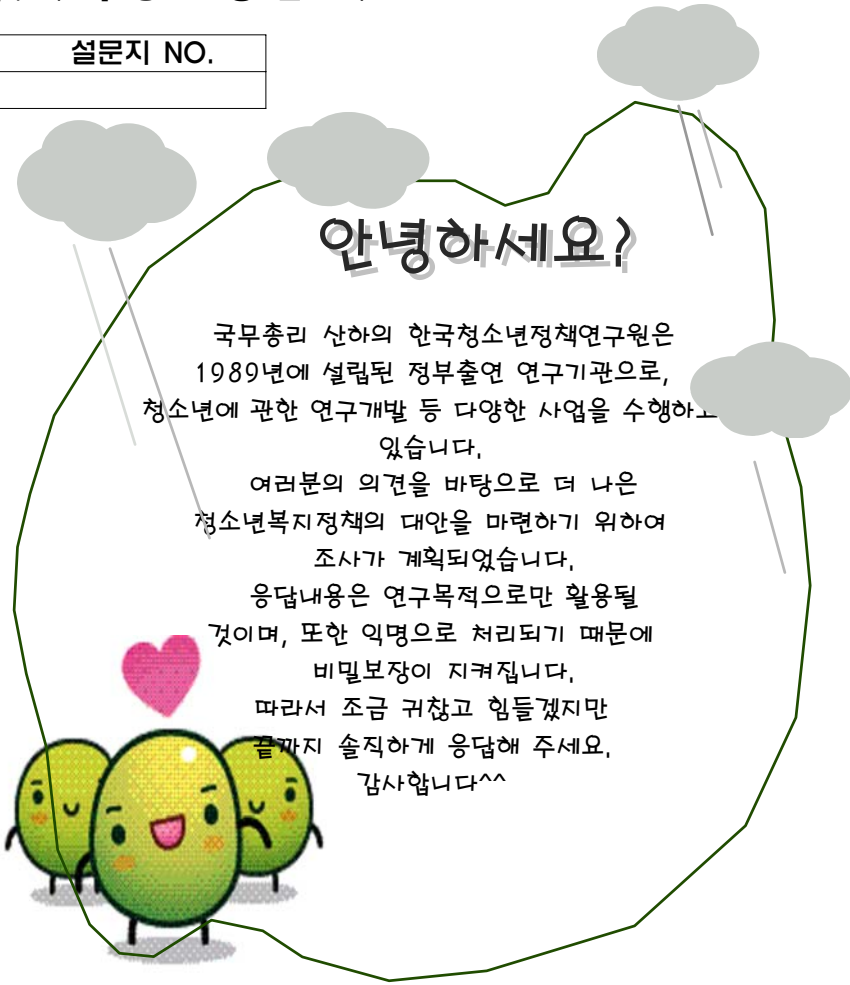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2006년 5월 8일자 보도자료: 시설 퇴소아동 희망(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Online]. [2007. 1. 1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07년 1월 26일자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부여, 학자금 지원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등 자립지원대책 수립·추진'. [Online]. [2007. 4. 16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06년 아동복지관련 통계. [Online]. [2007. 8.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복지사업계획. [Online]. [2007. 8.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ohw.go.kr/>>.
- 오클라호마 주정부. [Online]. [2007. 8.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okdhs.org/>>.
- Children's Aid Society-Nextgeneration Center. [Online]. [2007. 8. 1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childrensaidsociety.org/nextgen.>>.

부 록

- [부록 1] 청소년용 설문지
-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 [부록 3] 심층면접지

[부록 1] 청소년용 설문지

설문지 NO.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이해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
(TEL: 02.2188.8828)

2007. 8.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 본 설문은 이등양육시설에서 최소 2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한 청소년 중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은?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 나이는? 만으로 _____ 세
3. 학력은? ___ ①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___ ②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___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퇴 혹은 졸업
 ___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___ ① 대도시(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___ ② 중소도시
 ___ ③ 농어촌(읍·면·리)
5. 종교는? ___ ① 없음 ___ ① 개신교 ___ ② 불교
 ___ ③ 천주교 ___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결혼여부는? ___ ① 미혼 ___ ② 기혼 ___ ③ 이혼 혹은 사별
 ___ ④ 재혼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아본 경험은?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___ ③ 모름
8.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시기는?
 ___ ① 고등학교졸업전 ___ ② 고등학교 졸업후
 ___ ③ 대학교 졸업후 ___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9.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할 당시 나이는? 만으로 _____ 세
10.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주된 이유는?
 ___ ①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서
 ___ ② 위탁부모 혹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___ ③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답답해서
 ___ ④ 잦은 무단가출로 퇴소신고처리 되어서
 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상 및 가족생활

16.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_____ ① 혼자 _____ ② 형제 혹은 자매와 함께
_____ ③ 동성친구와 함께 _____ ④ 이성친구와 함께
_____ ⑤ 부모님과 함께 _____ ⑥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척과 함께
_____ ⑦ 배우자와 함께 _____ ⑧ 공동생활(기숙사, 자립생활관, 그룹홈 등)
_____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7. 현재 위탁부모나 후원자가 있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18. 현재 친부모가 있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_____ ③ 모름

18-1. 친부모가 있는 경우, 다음 중 누가 계십니까?

- _____ ① 친부만 계심 _____ ② 친모만 계심 _____ ③ 두분 다 계심

18-2. 친부모가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연락(만나는 것 포함)하십니까?

- _____ ① 거의 하지 않음 _____ ① 1년에 1번이하 _____ ② 6개월에 1-2번
_____ ③ 3개월에 1-2번 _____ ④ 1개월에 1-2번 _____ ⑤ 거의 매주
_____ ⑥ 거의 매일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8-3.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_____ ② 만족하지 않음 _____ ③ 보통
_____ ④ 만족함 _____ ⑤ 매우 만족함

19. 아동복지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누구와 상담하고 해결하십니까?

- _____ ① 혼자 _____ ② 형제 혹은 자매와 함께
_____ ③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_____ ④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_____ ⑤ 부모님 _____ ⑥ 친척과 함께
_____ ⑦ 배우자와 함께 _____ ⑧ 기숙사, 자립생활관, 그룹홈 등의 선생님
_____ ⑨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 _____ ⑩ 시설에 오는 자원봉사자
_____ ⑪ 위탁부모 또는 후원자 _____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0. 아래에서 자신이 지난 세 달 동안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을 3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 _____ ① 경제적 영역(생활비, 집세, 학비, 학원비, 병원비, 의료비, 주택마련비용마련 등)
- _____ ② 인간관계 영역(친구, 선배, 선생님, 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친구, 교수, 이웃, 동료와의 관계 등)
- _____ ③ 신체적 영역(나의 건강, 성문제, 만성적인 피로, 신체적인 불편함 등)
- _____ ④ 심리적 영역(외로움, 우울, 불안 등)
- _____ ⑤ 가사생활 영역(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
- _____ ⑥ 일관련 영역(일에 대한 불만족,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의 불안정성)
- _____ ⑦ 진로관련 영역(학업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어려움,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_____)

21. 다음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안다.	1	2	3	4
2) 부엌기구와 장비의 사용법을 안다.	1	2	3	4
3) 전기코드나 플러그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다.	1	2	3	4
4) 잔병과 간단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안다.	1	2	3	4
5) 스트레스를 줄여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	1	2	3	4
6)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안다.	1	2	3	4
7) 저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하는 방법을 안다.	1	2	3	4
8) 세금의 종류와 일반적인 수준의 금액을 안다.	1	2	3	4
9) 개인신용의 중요성과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다.	1	2	3	4
10) 아파트나 다른집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다.	1	2	3	4
11) 임대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12) 집계약 이후의 행정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13)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1	2	3	4
14) 지역사회내의 정보를 알기 위해 인터넷 사용하는 법을 안다.	1	2	3	4
15)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다.	1	2	3	4
16) 임신예방과 임신의 중후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17)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18) 부모의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19) 효과적인 대인관계기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20) 결정을 내려야 할때 신중하게 결정할 줄 안다.	1	2	3	4
21) 시설동료, 학교친구, 직장동료 등과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1	2	3	4
22) 내 성격과 나의 장점, 욕구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	1	2	3	4
23) 건강한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여가시간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24) 나는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알고 있다.	1	2	3	4

학교 및 또래관계

22.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____ ① 예 (휴학 중인 경우도 포함) _____ ② 아니오(23번으로)

22-1. 다니고 있다면 다니는 학교의 종류는?(하나만 고르세요)

- | | |
|----------------------|-------------------------|
| _____ ① 실업계 고등학교 | _____ ② 인문계 고등학교 |
| _____ ③ 노동부인가 직업전문학교 | _____ ④ 방송통신고등학교 |
| _____ ⑤ 전문대학교 | _____ ⑥ 4년제대학교 |
| _____ ⑦ 대학원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2-2.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현재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 | | | |
|--------------------|-----------------|------------|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_____ ② 만족하지 않음 | _____ ③ 보통 |
| _____ ④ 만족함 | _____ ⑤ 매우 만족함 | |

22-3.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 | | | |
|-------------------------|----------------------|----------------|
| _____ ① 어려움이 없음 | _____ ① 학비 | _____ ② 일과의 병행 |
| _____ ③ 원거리 통학 | _____ ④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 _____ ⑤ 생활비 |
| _____ ⑥ 수업내용의 어려움 | _____ ⑦ 가사부담 | |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

23.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24번으로)

23-1.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 | | |
|------------------------------|------------------------------|
| _____ ① 꿈을 이루기 위해 | _____ ② 더 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 |
| _____ ③ 졸업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 _____ ④ 높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
| _____ ⑤ 진학시 필요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3-2. 상급학교에 진학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은?

- | | | |
|-------------------------|---------------------|------------------------------|
| _____ ① 없음 | _____ ① 대학수업료 | _____ ② 생활비 |
| _____ ③ 주거문제 | _____ ④ 학습능력에 대한 부담 | _____ ⑤ 자원이 부족한 사람인 것에 대한 부담 |
|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

24. 현재 친구(선후배포함)들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 | | | |
|--------------------|-----------------|------------|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_____ ② 만족하지 않음 | _____ ③ 보통 |
| _____ ④ 만족함 | _____ ⑤ 매우 만족함 | |

직장

25.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26번으로)

25-1. 취업한 경험이 있다면, 이직경험이 몇 번 있습니까?

_____ ① 한번도 없음 _____ ① 1번 _____ ② 2번 _____ ③ 3번 _____ ④ 4번 이상

25-2. 이직할 경험이 있다면 이직할 이유는?

_____ ①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_____ ② 일이 적성 및 흥미와 맞지 않아서
_____ ③ 업무량이 과다해서 _____ ④ 회사측의 차별·편견 때문에
_____ ⑤ 회사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_____ 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_____ ⑦ 회사의 명령이나 강압으로 _____ ⑧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_____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5-3. 취업준비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_____ ①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_____ ② 직업기술부족
_____ ③ 주거해결문제 _____ ④ 학력부족
_____ ⑤ 사회적응력부족 _____ ⑥ 사회적 편견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6.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27번으로)

26-1.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26-2.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사무직 _____ ② 생산직 _____ ③ 판매직 _____ ④ 서비스직
_____ ⑤ 기술직 _____ ⑥ 사회복지 및 건강관련직 _____ ⑦ 농업·수산업·광업
_____ ⑧ 예술직 _____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6-3. 현재의 고용형태는 어떠한가요?

_____ ① 정규직 _____ ② 임시직·계약직
_____ ③ 일용직 _____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6-4. 현재,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 ① 100만원 미만 _____ ②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_____ ③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_____ ④ 300만원이상

26-5.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_____ ② 만족하지 않음 _____ ③ 보통
_____ ④ 만족함 _____ ⑤ 매우 만족함

26-6.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유는?

- _____ ① 월급이 적어서 _____ ② 나의 적성·흥미와 맞지 않아서
_____ ③ 업무량이 과다해서 _____ ④ 미래발전가능성이 적어서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6-7.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불안정함 _____ ② 불안정한 편임 _____ ③ 보통
_____ ④ 안정적인 편임 _____ ⑤ 매우 안정적인 편임

주택과 지역사회

27.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자기소유의 집 _____ ② 자립지원시설 _____ ③ 전·월세
_____ ④ 그룹홈 _____ ⑤ 회사기숙사 _____ ⑥ 학교기숙사
_____ ⑦ 친구집(아는 사람의 집) _____ ⑧ 친척집
_____ ⑨ 부모님이 사시는 집 _____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8.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_____ ② 만족하지 않음 _____ ③ 보통
_____ ④ 만족함 _____ ⑤ 매우 만족함

29. 아동복지시설퇴소 이후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_____ 번

30. 시설퇴소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_____ ① 없다 _____ ② 있다 _____ ③ 잘 모르겠음

31. 주거와 관련하여 한 달 평균 소요되는 금액(월세, 전기세, 수도세, 세금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32.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만족하십니까?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_____ ② 만족하지 않음 _____ ③ 보통
_____ ④ 만족함 _____ ⑤ 매우 만족함

사회적 지지

33. 다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나요?

1)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다.	안 계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럼 꽤이다	매우 그렇다
① 부모님	0	1	2	3	4
② 형제·자매	0	1	2	3	4
③ 친척	0	1	2	3	4
④ 학교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⑤ 시설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⑥ 학교 선생님	0	1	2	3	4
⑦ 시설 관계자(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등)	0	1	2	3	4
⑧ 위탁부모, 후원자	0	1	2	3	4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0	1	2	3	4
2)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안 계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럼 꽤이다	매우 그렇다
① 부모님	0	1	2	3	4
② 형제·자매	0	1	2	3	4
③ 친척	0	1	2	3	4
④ 학교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⑤ 시설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⑥ 학교 선생님	0	1	2	3	4
⑦ 시설 관계자(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등)	0	1	2	3	4
⑧ 위탁부모, 후원자	0	1	2	3	4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0	1	2	3	4
3)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 움이 된다.	안 계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럼 꽤이다	매우 그렇다
① 부모님	0	1	2	3	4
② 형제·자매	0	1	2	3	4
③ 친척	0	1	2	3	4
④ 학교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⑤ 시설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⑥ 학교 선생님	0	1	2	3	4
⑦ 시설 관계자(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등)	0	1	2	3	4
⑧ 위탁부모, 후원자	0	1	2	3	4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0	1	2	3	4

4)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물건, 장소 등)을 주거나 빌려준다.	안 계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부모님	0	1	2	3	4
② 형제·자매	0	1	2	3	4
③ 친척	0	1	2	3	4
④ 학교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⑤ 시설 친구, 선·후배	0	1	2	3	4
⑥ 학교 선생님	0	1	2	3	4
⑦ 시설 관계자(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등)	0	1	2	3	4
⑧ 위탁부모, 후원자	0	1	2	3	4
⑨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 전문가	0	1	2	3	4

신체 및 심리

34. 지난 1년 내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은? (모두 고르세요)

- | | |
|-------------------------|----------------------------------|
| _____ ① 없음(36번으로) | _____ ① 각종사고(교통사고, 부주의사고)로 인한 질병 |
| _____ ② 중치 및 잇몸질환 | _____ ③ 위장 및 내과질환 |
| _____ ④ 성 관련 문제나 질병 | _____ ⑤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
| _____ ⑥ 백혈병, 암 | _____ ⑦ 피부질환 |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35.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았나요?

- _____ ① 예(36번으로) _____ ② 아니오



35-1.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만 고르세요)

- | | |
|-------------------------|-------------------|
| _____ ① 중세가 가벼워서 | _____ ② 치료비가 없어서 |
| _____ ③ 거리가 멀어서 | _____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
| _____ ⑤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 _____ ⑥ 무서워서 |
| _____ ⑦ 귀찮아서 | _____ ⑧ 몸이 불편해서 |
| _____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36.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보고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맞서서 때린다.	1	2	3	4
2) 나는 화가 났을 때 심한 말을 한다.	1	2	3	4
3) 나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폭력을 쓴다.	1	2	3	4
4) 나는 종종 내 자신이 폭발하려는 화약과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1	2	3	4
5) 나는 가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6)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7) 나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1	2	3	4
8) 가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1	2	3	4
9)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	1	2	3	4
1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11) 나는 어떤 일이든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잘 할 수 있다.	1	2	3	4
12) 나는 좋은 점이 많다.	1	2	3	4

♣ 수고하셨습니다~!! ♣

설문결과를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설문지 NO.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 개선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舊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조사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이 퇴소 후에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과 정부정책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 정책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입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이해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TEL: 02.2188.8828 E-mail: jaseo@nypi.re.kr)

2007.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 전문가 의견조사는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아동 혹은 퇴소예정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업무경력 3년 이상의 실무담당자(교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한 해 평균 귀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의 수는 약 몇 명입니까(최근 3년 평균)?
 - 1) 법적퇴소연령 도달로 인한 퇴소 인원 _____ 명
 - 2) 기타 사유로 인한 퇴소 인원 _____ 명

2.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전혀 필요 없음 _____ ② 필요 없음 _____ ③ 필요한 편임 _____ ④ 매우 필요함

3. 귀 기관은 퇴소전 청소년에 대한 시설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4. 귀 기관의 시설 퇴소전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있는 대로)

_____ ① 거의 실시하지 않음

_____ ① 직업소개나 주거마련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 주력

_____ ② 수업이나 강의형식의 교육을 통해

_____ ③ 토론식의 조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_____ ④ 1:1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_____ 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설거지, 은행가기, 용돈관리, 청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5. 퇴소청소년 지원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업무의 과다로 인한 전담인력배치의 어려움 _____ ②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의 부족

_____ ③ 체계적인 교재나 지침의 부족 _____ ④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정부정책

_____ ⑤ 필요한 재정적 부족 _____ ⑥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6. 귀 기관의 경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주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 ① 생활지도원 _____ ② 상담사 _____ ③ 보육사

_____ ④ 원장 _____ ⑤ 외부초빙강사 _____ ⑥ 자원봉사자

_____ ⑦ 후원자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귀 기관의 경우,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_____ 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_____ ① 아동(청소년)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_____ ② 정기적인 수업이나 강의형식의 교육을 통해

_____ ③ 홈커밍데이나 선후배간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_____ ④ 정기적인 1:1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8. 시설을 이미 퇴소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_____ 명

9.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되는 지역사회자원은?(있는대로)

- _____ ① 거의 없음
- _____ ① 인근 중,고등학교 _____ ② 직업전문학교 _____ ③ 읍,면,동사무소
- _____ ④ 인근지역 기업 _____ ⑤ 자원봉사자 _____ ⑥ 지역사회복지관
- _____ ⑦ 청소년수련관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0. 다음은 대표적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각자의 세부프로그램 별로 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와 이 프로그램이 자립지원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여부를 표시해주세요.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시여부	필요성 여부
1) 건강관리	(1) 간단한 응급처치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2) 병원이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3)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4) 술담배약물의 위험성 지각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5) 건강유지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2) 자금관리	(1) 저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2) 세금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3) 금융기관서비스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4) 이자계산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5) 개인신용관리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6) 신용카드사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3) 주거대련 및 관리	(1) 짐구하는 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2) 임대계약서 이해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4) 독립생활물품목록작성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5) 주거관련 행정절차(전입신고 등)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6) 도둑방지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7) 화재예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4) 지역사회 자원활용	(1) 동사무소이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2) 등초본발급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3) 지역도서관 및 지역사회자원활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4) 동호회활용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5) 성 인 관 련 문 제 해 결 방 안	(1) 남성과 여성의 변화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2) 성병의 예방발견치료법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3) 임신예방과 임신의 중후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4) 결혼과 사랑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5) 배우자의 책임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6) 부모의 책임과 역할	①예 ②아니오	①필요 ②불필요

6) 대인관계	(1) 대인관계기술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2) 의사소통방법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3) 자기의견주장법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4) 갈등관리법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5) 분노관리기술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7) 자아성장성 및 사회성 개발	(1) 자아존중감의 개념인식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2) 성격적 장점 및 욕구파악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3) 의사결정과정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4) 여가활용방법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5)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법	①예 — ②아니오	①필요 — ②불필요

※ 다음은 퇴소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란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퇴소청소년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용지가 부족하신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11.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퇴소청소년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점은?

13. 기 실시한 프로그램중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에 관한 간략한 소개,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지, 필요한 추가지원사항 등)

14. 현재 실시되고 있는 퇴소아동관련 정부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그 개선방향은?

15. 퇴소아동정책의 실태 및 방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심층 면접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I. 심층면접 O.T

1. 인사말

자신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한다.

기관소개와 기관에서 하는 일, 본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전공지사항

연구를 위해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름과 얼굴, 소속 등은 절대로 외부로 노출하지 않으며, 연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반드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3. 참여방식 설명

참여자들이 이번 연구에서 인터뷰 하는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준다.

2차에 걸쳐서 인터뷰를 할 것이며, 그리고 한번 만날 때 몇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설명해준다.

4. 질의응답 후 면접개시

연구나 면접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시간을 주고 더 이상 없으면 완전히 동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면접을 실시한다.

II . 심층면접 내용

1. 공통 사항

구분	질문내용
1) 기초조사	① 성별
	② 연령
	③ 입소기간
	④ 입소사유
	⑤ 퇴소시기/기간
	⑥ 가족사항/가족과의 연락여부
	⑦ 직업경력(아르바이트 등)
	⑧ 학력
	⑨ 종교
	⑩ 결혼여부
2) 일상 및 가족생활	① 현재 생활에의 만족도? 가장 어려운 점은?
	② 퇴소 후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어떻게 극복하였나?
	③ 자립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기회는 무엇인가?
	④ 퇴소 전에 받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ex: ㉠교육과정-자동차 정비 기술 자격취득(SK(주)), 운전, 이.미용 자격취득(공동모금회), 컴퓨터관련자격 취득(워드, 컴퓨터활용능력, 포토샵) 등 ㉡프로그램-금연&약물, 성폭력예방교육, 미용, 요리, 대인관계향상, 경제력향상(저축, 금전관리, 부동산 정보) 등)
	⑤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교육?
	⑥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퇴소한 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⑦ 퇴소 전 자립에 대한 충분한 준비(상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3) 주택 및 지역사회	① 현재 거주지역?
	② 주거형태 및 동거인? (기숙사, 자가, 월세, 전세 등)
	③ 주택 마련 과정 및 한 달 주거비용 ?
	④ 자립생활관에서의 경험?
	⑤ 문제점 및 바램?

구분		질문내용
4) 사회적 지지망		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주된 의논상대? (과거와 현재)
		② 부모님과의 관계
		③ 배우자와의 관계
		④ 형제와의 관계
		⑤ 친척과의 관계
		⑥ 친구와의 관계
		⑦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친구, 퇴소기관 직원, 기타 등)(과거와 현재)
		⑧ 퇴소 후 퇴소기관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지?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⑨ 시설퇴소 후 퇴소자들과의 교류모임이 있는지? 참석여부? 퇴소자들과의 모임이 자립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5) 신체 및 심리적 발달	건강	① 건강상태? 건강검진 경험(과거와 현재)
		② 문제점 및 바램?
	자아개념(과거와 현재)	① 자신감: 내가 자랑스럽다. 사회적 위축감을 느낀다.
		② 자아존중감: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
		③ 자기효능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④ 긍정적사고: 낙천적이다. 우울하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
		⑤ 개방성: 시설출신이라는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인식	① 지금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지?
		②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지?
		③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2. 적용유형별 중점 면접내용

적용유형	질문내용
1) 진학으로 이어지는 유형	① 학교와 전공은?
	② 생활비와 학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③ 진학 동기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
	④ 문제점과 미래 설계?
2) 직업을 통해 정착한 유형	① 현재의 직업?(기술직, 단순노동, 서비스직 등)
	② 직업의 안정성: 고용의 형태?(ex.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③ 해당분야의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④ 한 달 평균 소득(급여)은 어느 정도인가?
	⑤ 현재의 직종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
	⑥ 문제점과 미래 설계?
3) 가족과 잘 통합된 유형	① 가족들과 언제 어떤 계기로 재결합했는가?
	② 가족과 재결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③ 재결합 후 좋은 점, 문제점, 미래 설계?
4) 부적응형	①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② 가장 큰 어려움과 이렇게 된 계기?
	③ 문제점과 하고 싶은 것?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가나다. 순)

이용교 광주대학교·교수
이은주 파리제9대학·박사과정
정일교 가톨릭상지대학·교수

◆ 자문진 ◆

(가나다. 순)

김경희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김광빈 동명아동복지센터·원장
이명묵 은평천사원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 김기현 · 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 · 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 · 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 · 김신영 · 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 · 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 · 최우영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 · 김영호 · 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 · 박창남 · 이종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 · 김희균 · 조아미 · 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 · 권일남 · 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 · 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이창호 · 오성배 · 정의철 · 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 김경준 · 최인재 · 설인자 · 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 · 서정아 · 조흥식 · 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배지혜 · 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 · Gudrun Quenzel · Michaela Janotta ·

Janina Herrmann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 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삼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이나 (자체번호 07-R13-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
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익순·미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
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조혜영·이창호
- 07-R39 학교폭력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
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
진·임지연·갈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고유과제)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31일

발 행 2007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00-0